2022년 Typhoid fever Mumps brio vulnificus sepsis HIV/AIDS Tetanus 관리지침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안내문

- 이 책자는 HIV/AIDS 예방·관리 및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작하였음
- HIV/AIDS 감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 교육·홍보·협력 및 민간지원시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행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
- 이 지침에 대한 오류 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로 연락 요망

○ 관련 부서 및 기관 연락처

기관명	부 서	업 무	연락처
질병 관리청	에이즈 관리과	에이즈 예산, 법령, 사업기획 총괄 에이즈 역학 및 연구 총괄 에이즈 예산 및 사업 기획 에이즈 법령 및 감시체계 관리 에이즈 관련 민간지원·인력교육 에이즈 신고 및 진료비 지원 에이즈 역학조사 관리 및 운영 에이즈 시스템 기획 및 관리 에이즈 교육·홍보	043-719-7343 043-719-7318 043-719-7917 043-719-7331 043-719-7919 043-719-7335 043-719-7333 043-719-7323 043-719-7347
	바이러스 분석과	• HIV 감염 진단 시험의뢰 및 정도관리	043-719-8195, 8213
대한에이즈예방협회			02-861-5446
에이즈상담센터			1599-810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02-792-0083
부산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			02-753-2037~8

목 차 CONTENTS —

١.	HIV/AIDS 관리 기본 방침	1
	1. 비 전	. 3
	2. 기본방향	. 3
	3. 2022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	. 5
	4. 사업 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6
Π.	HIV/AIDS 현황————	9
	1. 세계 현황	11
	2. 국내 현황	12
III .	HIV/AIDS 교육·홍보	15
	1. 목 적	17
	2. 근 거	17
	3. 추진 계획	17
	4. 보건소 HIV/AIDS 예방·홍보사업 추진	21
IV.	HIV 검진 및 신고·보고	25
	1. 목 적	27
	2. 근 거	27
	3. HIV 검진 계획 수립	
	4. 익명검사 안내	
	5. HIV 검진 실시	
	6. HIV 감염인/AIDS 환자 발견 신고·보고	36
٧.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37
	1. 목 적	39
	2. 근 거	39
	3. 지원 주체	39
	4. 상담 및 지원	39

5. 역학조사	44
6. 대상별 조치 사항	47
7. 상황별 조치 사항	
8. 진료비 지원	
9. 건강상태 진단 및 관리	57
VI. 기타 사업 관리	59
1. 기록물 관리	61
2. 검체 관리	63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63
WI.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 안니	H 65
1. 민간보조사업 안내	67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73
3. 사업운영 관련 법규 및 예산 관련 사항	88
4. 예산 항목별 설명	91
5. 사업 인력 관련 사항	116
Ⅷ.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	<u> </u>
1. 목 적	119
2. 시스템 명칭 및 주소	
3. 기관별 기능	
4. 사용자 매뉴얼	121
IX. 부록 I	— 123
1. 별표 서식(1-1~9)	·· 125~152
2. 참고 서식	
- 청렴서약서 ···································	
-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실적보고서	
- 서약서 ······	
성과물 활용 신청서 ···································	160
3. 붙임 서식(1~8)	·· 161~172

목 차 CONTENTS —

Х. 부 록 Ⅱ ── 173
1. HIV/AIDS 관리정책 주요 변천과정 175
2. HIV/AIDS 개요 ······ 178
3. HIV/AIDS 진단 및 치료 190
4. HIV 항체 양성자에게 주는 조언 ······· 194
5.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197
6. 관련 기관 222
7. 관련 법령 225
표 목차
표 국사
〈표 1〉신규 HIV/AIDS 신고 현황(2020년) ······· 12
(표 2) HIV/AIDS 내국인 감염경로별, 검사동기, CD4+ T
세포 수 분포(2020년)13
〈표 3〉 현재 HIV/AIDS 내국인 성별, 연령별 현황(2020년) 14
〈표 4〉 연도별 HIV/AIDS 익명 신고 건수(2011~2020년) 14
〈표 5〉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29
〈표 6〉미국 CDC의 HIV 감염 분류체계 181
〈표 7〉에이즈 정의질환
〈표 8〉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 184
〈표 9〉HⅣ 감염 후 급성 감염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임상양상 ·· 188
그림 목차
〈그림 1〉HIV/AIDS 관리사업 체계도
〈그림 2〉익명검사 가이드라인
〈그림 3〉HⅣ 확인진단검사 체계도 ···································
(그림 4) HIV의 구조 ···································
(그림 5) HIV의 증식과정
(그림 6) 연도별 신규 HIV 감염인 수, 1985—2020 198
\ 0

HIV/AIDS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1	II. HIV/AIDS 현황	II. HIV/AIDS 현황
-14		- <u>최신 통계로 업데이트</u>
18	2)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이 참고해야 할 의과학적 지식, 의료인의 책무뿐 아니라 법적, 인권적, 윤리적 측면의 교육 실시 간염인에 대한 의료현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적 낙인을 없애고,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이 참고해야 할 의과학적 지식, 의료인의 책무뿐 아니라 법적, 인권적, 윤리적 측면의 교육 실시
18	3) 청소년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제작 활용 <mark>에이즈 예방 뮤지컬을 통한 비제도권</mark> 청소년 집중 교육 강화	3) 청소년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제작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집중 교육 강화
	○ 유명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활용하여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예 방법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 전달	○ <u>HIV/AIDS에</u>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예방법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 전달
20	마. 정부와 민간협력 행사를 통한 에이즈 관심유도 1) 세계 에이즈의 날 전·후 중「에이즈 예방주간(12.1.~12.7.)」 운영 2) 에이즈 예방 광고공모전 ○ 매년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편견·차 별해소에 대한 참여와 관심유도 ○ 공모전을 통한 에이즈 홍보전략 개발 및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마. 정부와 민간협력 행사를 통한 에이즈 관심유도 1) 세계 에이즈의 날 전·후 중「에이즈 예방주간(12.1.~12.7.)」운영 2) 삭제
21	○ 참고자료 - HIV/AIDS 신고제도 및 검사 가이드라인 - 책받침, 에이즈 관련 포스터·리플릿	○ 참고자료 - 에이즈 관련 포스터·리플릿
22	 ○ 참고자료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u>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u> (개정판) HIV/AIDS 신고제도 및 검사가이드라인(기배포) 	 ○ 참고자료 -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 삭제 - HIV/AIDS 신고제도 및 검사가이드라인(기배포)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28	○ 정기검진 - 대상:「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정기검진 - 대상:「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29	< 표 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구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생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생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대독검 사 기업병명 사 기업병명 사 기업병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기업	<표 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건강진단 형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대독검 사 HIV검 서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건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 개월 1회/6 개월 1회/6 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 개월 1회/6 개월 1회/3 개월 1회/6 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1회/3 개월 1회/6 개월 1회/3 개월 1회/3 개월 4.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시하는 사람 1회/3 개월 1회/6 1회/3 개월 1회/3 개월
32	나. 확인검사 ○ 확인검사 기관 -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확인검사 의뢰 -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18개월 미만의 <그림 3> HIV 확인진단검사 체계도	나. 확인검사 ○ 확인검사 기관 - 질병관보청, 전국 17개 사·도, 18개 보건환경연구원 ○ 확인검사 의뢰 -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하의 <그림 3> HIV 확인진단검사 체계도
33	*- HIV p24항원만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초기감염 의심검체인 경우 - 잔약체 부족으로 질병관 청 의라가 불기능한 경우 아 HIV 검사 질 관리(정도관리/정도평가)	*- HIV p24항원검사 및 p24항원중화검사에서 미결정인경우 - 잔이검체 부족으로 질병관리청 의로가 불기능한 경우 다. HIV 검사 정도관리 ○ HIV 검사 외부정도평가
35	- 확인검사기관과 선별검사기관은 HIV 검사의 정도보증을 위해 검사 수행 시 정도관리물질을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	- 확인검사기관과 선별검사기관은 HIV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u>하고, 연 1회 이상 질병관리청의 HIV</u>	수행 시 정도관리물질을 포함하여 검사를
	검사 외부정도평가(숙련도 시험)에 참여	수행하고, 연 1회 이상 질병관리청의 HIV
	지버고기원/비스크 4 보세기/ 오 취이고 1	검사 외부정도평가(숙련도 시험)에 참여
	- 질병관리청(바이러스분석과)은 확인검사 기관으로 내부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고	○ HIV 검사실 정도관리 - 질병관리청(바이러스분석과)은 확인검사
	<u> </u>	기관으로 내부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고
	시행한 후 결과 값을 질병보건통합	확인검사기관은 월 2회 이상 질관리검사를
	관리시스템 내 정도보증 > HIV > 정도관리	시행한 후 결과 값을 질병보건통합
	- - - - - - - - - - - - - - - - - - -	
		> 결과입력" 메뉴에 입력하도록 함
	- 확인검사기관은 관할 보건소 검사요원에	- 확인검사기관은 관할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하여 실험실 인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대하여 실험실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다. 신고 받은 보건소 조치 사항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다. 신고 받은 보건소 조치 사항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HASNet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36	으로 보고하고, 실명 신고인 경우 인	보고하고, 실명 신고인 경우 인적정보는
	적정보는 유선 보고	유선 보고
	※ 보고 절차는 HASNet 자료실의 '매뉴얼' 참고	※ 보고 절차는 Ⅷ. 에이즈지원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별지수록) 참고
	○ 주소지 외의 타 시·도에서 거주할 경우	<u> </u>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삭제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삭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	삭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39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 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	삭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 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 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삭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4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8조(역학조사)
4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나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8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8조(역학조사)
4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사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8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42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동일 생활권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하고 보 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나제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 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가.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8조(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역학조사의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경로의 파악 ○ 감염병 발생 유행 우려 있는 경우 지역 확산 방지 ※ 「추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제27조(발착에 근거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함 다. 대상 ○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라. 역학조사 주관 ○ 시ㆍ도의 지휘하에 시ㆍ군ㆍ구에서 실시 ※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하거나 위촉함(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 보건의사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관련 근거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훈령제4호) 제4조) 1.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1. 역학조사서 서식(성인용, 소아용)* 선택하여내용기재 * 〈별표 6-1〉 성인용 역학조사서, 〈별표 6-2〉 소아용 역학조사서 - (성인용) 만 16세 이상 성인(외국인 포함) 혹은 감염경로가 성접촉 혹은 미약 사용자인경우 - (소아용) 만 16세 미만
46	○ 조치사항 - 관리보건소는 전파 우려되는 감염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일 경우,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보고	 바. 역학조사서 작성 요령 ○ 조치사항 - 관리보건소는 전파 우려되는 감염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일 경우,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질병관리청은 관련 기관(경찰청, 외국인일 경우 법무부 등)에 해당 감염인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위치정보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에 통보 <신설> - 관리보건소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감염인 신병 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역학조사, 치료 기관 연계 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련 기관(경찰청 등 <u>경찰관서</u>)에 해당 감염인 위치 정보를 요청 <u>할 수 있음</u>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법무부 등)에 해당 감염인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요청 할 수 있음 - 관리보건소는 <u>회신받은</u> 정보를 기반으로 감염인 신병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 (역학조사, 치료기관 연계 등)
47	나. 성접촉 파트너(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포함)가 있는 경우 ○ 감염인 본인이 성접촉 파트너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파트너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 본인이 알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장이 감염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성접촉 파트너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서면동의 없이 통보 가능함 ○ 보건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성접촉 파트너에 대한 검진을 실시 할 수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파트너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48	있음 다. 임신부 ○ 소아감염인(18개월 미만의 신생아 감염 포함) 진료비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 급여 등재 약품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진료비 지원함 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감염인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명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와 'HIV 감염 확인서<별표 7>'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수 있음 다. 임신부 ○ 소아감염인(18개월 이하의 신생아 감염 포함) 진료비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급여 등재 약품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진료비 지원함 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감염인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 108호 서식)'를 작성하여 'HIV 감염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제출함	확인서<별표 7>'를 관리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함을 안내
50	자. 외국인 ※ 역학조사와 지원, 전파방지 교육 등에 보다 원활한 언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외국인 지원 사업부 (02-927-4322, 031-495-0550)를 통해 무료 통역 지원받을 수 있음(기능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등)	자. 외국인 ※ 역학조사와 지원, 전파방지 교육 등에 보다 원활한 언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외국인 HIV 감염 예방지원센터(02-927-4322)를 통해 무료 통역 지원받을 수 있음(가능언어: 영어)
62	[예시] 비밀 기록물 발송접수 방법(「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참고) · 비밀의 접수·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함 ·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 · 이중 봉투로 포장(「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 사용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자르는 선 상단의 비밀송증은 발송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 선 하단의 비밀접수증을 발송 -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 -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생산기관에 반송 - 접수증을 반송 받은 발송기관은 그 접수증을 비밀 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	[예시] 비밀 기록물 발송접수 방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참고) · 비밀의 접수·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II급 이 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함 ·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 · 이중 봉투로 포장(「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하여 '접수증' 사용 (「보안업무규정」 제17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최기 위하여 '접수증' 사용 (「보안업무규정」 제17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접수증의 자르는 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간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직접 교부 -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
67 -72	1. 민간보조사업 안내 가.∼하. ○ (연락처)	1. 민간보조사업 안내 가.~하. ○ 삭제
73	○ (수행기관) 갸. 의료기관감염인 상담사업	<u> </u>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수행기관 및 연락처) no. 지역 주소지 의료기관명 상당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1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1242 02-2258-1254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 삭제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74	 가. 사업수행기관 및 선정방법 ○ 사업기관의 교체 - 다음과 같은 사유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은 사업기관을 교체 할 수 있음 <신설> 	 가. 사업수행기관 및 선정방법 ○ 사업기관의 교체 또는 지정 제외 - 다음과 같은 사유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는 사업기관을 교체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수 있음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제출함
75 -76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다. 사업의 운영 O (사업계획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시업 안 시업내역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사업인력 변동시에는 별도로 승인절차 필요 없이 월보고시 보고 하며, 책임연구원급 변동인 경우에는 승인 필요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다. 사업의 운영 ○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사업내역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변경
70	 보조비목 보조세목 간의 예산 조정을 의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중 사업계획서상 없는 항목 신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 보조사업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시) 일반수용비와 복리후생비 간의 조정(단, 일반수용비 내 비품수선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세항목간에는 변경 대상 아님)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 보조사업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보조세목 간의 예산 조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병관리 청과 협의 후 '사업계획변경 요청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변경 집행함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 보조 사업을 다른 시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사업인력 변동시에는 별도로 승인 절차 필요 없이 월보고시 보고하며, 책임 연구원급 변동인 경우에는 승인 필요 					
	<u>o</u>	증가 대여 ⁶ 경우 (예산 관리: 보조사 할 : 질병전	턴 중 하거니 한목 청과 시업자 경우어 관리청	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정 절차) 사전에 질병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함 가 사업 및 예산변경을 하고지 비는 '변경승인 요청서'를 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함	-	증 대 경 삭전	가된 여하 우 <u> </u>	· 중요 거나	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 행화)	•	별 설명(표 수정)		4. 예	산 힝	목별	설명(표 수정)			
	비목	세목		 산정기준	7	비목	세목		산정기준			
		<u>{\text{\te}\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i}</u>					보수 (01)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시업을 수행하는 정규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상용 임금 (03)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 무기계약직, 계약직, 비정규직 인력에게 지급하	- 1		기타직 보수 (02)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계약적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00)	<u> </u>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상용 임금 (03)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시업을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인 건 비		간병수당	· 간병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인 건 비 (110)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91	(110)	일용	재기복지 수당	· 재가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일용	간병 수당	· 간병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04)	검진수당	· 검진상담소 등 검진관련 인력에 대한 수당			임금 (04)	검진 수당	· 검진상담소 등 검진관련 인력에 대한 수당			
			캠페인 및 교육요원 등 수당	1. 선배성: 파호, 중의, 신성인님 등 미성/1억 시압:	- 11			캠페인 (교육) 요원 등 스닷	·캠페인(교육) 관련, 전산입력 등 비정기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집행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

·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

· 속기원고측량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cdot 교육자료제작 \cdot 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고서·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회의참석 비 및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수당

및 사례금

侳

일반수용

(01)

운 영 비

(210)

자료제작

및 인쇄비

세금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교육자료(소책자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참석비, 단순인건비

소요되는 비용

사무용품 물품구입의 비용 등

수당

기타

인건비

용품

구입비

인쇄비

유인비

기타 인건비

(05)

일반

수용비

(01)

운 명 비

(210)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목	세목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산정기준	
			강사료	· 정기·비정기 교육 및 특강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의반수용 지도비 투임된 의료인력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비용 함 이 이 의수품,의 로소모품 및 의료가구 구입비 관사성단소 운영 시 사용된 의로소모품 등 폐가물 의 관사성단소 운영 시 사용된 의로소모품 등 폐가물 관사성단소 운영 시 사용된 의로소모품 등 폐가물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명패, 감사패 등의 제작비					
			료소모품	의약품,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사용된 의료소모품 등 폐기물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해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품 구입비	
	운	<u>&</u>					- 간행물 등	· 도서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영 비 (210)	<u>관리</u> 용역비 (15)	관리 용역비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외부에 의뢰하는 정도관리 비 및 검사비 · 전산운영 위탁 및 장비유지관리 용역비 등 외부			구입비 비품 수선비	· 가전제품수리비, 정수기필터교체,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품 비품의 수선비	
			주거 지원비	에 대행시키는 비용 ·노숙 감염인 중 적정 대상자를 선정(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선정기준 참조)하여 주거지 확보 자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집행, 정산내용 등에 대한 전문회계범인의 위탁정산수수료 등	
		기타운영 비 (16)	감염인 지원비	· 재기복지서비스대상자 물품지원비, 외국인환자 자원비, 장기요양 입원 관련 간병비 및 감염관리비 등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	· 속가원고측량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47	개발비	(위치. 9분) 연구				공고료 및 광고료	· TV·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0-01)	개발비	사업 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모든 비용			행사 지원비	· 체류자의 아유회, 영화관람 등 문화여가활동비와 심리상담, 자활지원 등 감염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 설문 인센티브 등	
							국내 교육비	· 학회 및 워크샵 등 참석에 따른 등록비(참석비)	
						공공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화선 사용료 · 전기, 기스, 상·하수도 비용	
						요금 및 제세 (02)	제세	· 법령에 의해 지불 부담하는 제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피복비 (03)	피복비	· 의료기관감염인상담 및 검진, 간병시 착용하는 가운 등에 대한 구입비	
						급량비 (04)	급량비	·체류자 주식 및 부식 등 식재료 구입비 및 식생활 관련 잡비 일체	
						특근 매식비 (05)	특근 매식비	· 검진상담소 검진시 특근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매식비	
						임차료 (07)	임차료	· 교육 및 행사 등 시압추진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사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유류비 (08)	유류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 장비 유지비 (09)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차량비 (10)	차량비	·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량의 유류비 및 정비비, 차량 소모품구입비	
						복리 후생비 (12)	복리 후생비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목	세목		산정기준	
			일반 용역비 (14)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시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약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외부에 의뢰하는 정도관리비 및 검사비	
			관리 용역비 (15)	관리 용역비	· 전산운영 위탁 및 장비유지관리 용역비 등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주거 지원비	· 노숙 감염인 중 적정 대상자를 선정(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선정기준 참조)하여 주거지 확보 지원	
			기타 운영비	감염인 지원비	·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물품지원비, 외국인환자 지원비, 장기요양 입원 관련 간형비 및 감염관리비 등	
			(16)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	· 사업수행 상 필요하거나 수혜자에게 자원되는 의약품,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사용된 의료소모품 등 폐기물 처리비 등	
		여비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220)	국외 여비 (02)	국외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사업 추진비	·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연구 개발비 (260)	연구 개발비 (01)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비용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자산 취득비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하며, 사무용 책상, 컴퓨터, 핸드폰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집기비품비 일체	
	Ⅷ.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VIII. O	비이즈	지원시	I스템(HASNet)	
121	<신설>	<u>4.</u> 사	용자	매뉴일	<u> </u>	
		<u>※ 별</u>	지 부	복 참	<u>고</u>	
	<별표 1-2> 공문작성요령	<별표	1-2>	공문?	작성요령	
	1. 시험의뢰서의 기재내용	1. 시	험의	뢰서의	기재내용	
	⑤ 검사 동기:일반진료(산부인과 일반	⑤ 검	사	동기 :	일반진료(산부인과 일반	
	검사 외), 산전검사(임신관련), 입원·수술	검사	외),	산전김	검사(임신관련), 입원·수술	
	전 검사, 헌혈,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전 검	네사,	헌혈,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126	입영신체검사), 건강검진(종합검진, 직장	입영신체검사), 건강검진(종합검진, 직장				
120	검진, 채용신체검사), 자발적검사(검사희망),	검진, 채용신체검사), 자발적검사(검사희망),				
	익명검사, 외국인 체류심사(비자, 난민				인 체류심사(비자, 난민	
	신청 등), 교정시설 입소자 검사, 성매개				시설 입소자 검사, <u>성매개</u>	
	감염병 정기검진 (특수업태부, 유흥, 다방,				성면역결핍증 정기검진(특수	
	안마), 양성자 접촉검사(감염인가족, 배우자 등), 기타				가방, 안마), 양성자 접촉 , 배우자 등), 기타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2-1> 질병관리청 성적서(예시)	<별표 2-1> 질병관리청 성적서(예시)					
127	Tel: 043-719- <u>8212</u>	Tel: 043-719- <u>8213</u>					
	<별표 2-2> HIV 확인검사 양성판정 기준 (양식변경)	<별표 2-2> HIV 확인검사 양성판정 기준					
128	 < 얼표 2->> HIV 원인검사 양성판정 기준 1 강함: 선명기속 학생각에서 알살보를 보여면 세요선문문(TR) 경사에서 알살답을 보일 데 이 교신문문 등에게 보일 데 (최소연 5가게 구요 센트가 보일 데) (2) 1상에 전도를 모하기고 그 이 상에 센트가 보일 데 (3) 1성의 하는 로 환하고 그 이 상에 센트가 보일 데 (4) 1성의 센트로 포하기고 이 상에 센트가 보일 데 (5) 1성의 센트로 포하기고 이 상에 센트가 보일 데 (6) 1성의 센트로 포하기고 이 상에 센트가 보일 데 (7) 1성로 1성을 보하고 그 이 상에 센트로 보이가 그 1성에 센트로 보이를 보여 다시되었다. (8) 1성을 가는 그 IRT 2017(10) 1성의 1성의 1성을 보일 데 (9) 1번가 취재가입을 (사업문학자) 표현에서 알살을 보일 데 (1) 1번가 취재가입을 (사업문학자) 표현에서 알살을 보일 데 (2) 1번가 한경임사업무학자가 표현에서 알살을 보일 데 (3) 1성일사용 항체임사에서 알살보증이지만 항신장사에서 운상받은데고, 레스턴론무검사에서 센트가 점을 데 (4) 1성일사용 항체임사에서 완성분들이지만 항신장사에서 운상받은데고, 레스턴론무검사에서 센트가 점을 데 (1) 1성명기사를 항심을 사용하여 보안되는데 보안 보안 등을 데 (2) 1성명기사를 항심하여서 운상받은데 한경임사에서 양성반은일 데 (3) 1성명기사를 항심하여서 운상받은데 한경임사에서 양성반은일 데 (4) 1성명기사를 항심하여서 운상받은데 한경임사에서 양성반은일 데 (4) 1성명기사를 함시됩사에서 운상받은데 한경임사에서 양성반은일 데 (4) 1성명기사를 함시됩사에서 운상받은데 한경임사에서 양성반은 데 (4) 1성명기사를 함시됩사에서 운상받은데 이전에 양성함에서 양성하는데 제공에서 양성함에서 보안되지 되었다면 대로 기업을 다 하게 있는데 대로 기업을 대로 기업을 다 하게 있는데 대로 기업을 대로	 ★비교 2-2> HIV 확인검사 양성판정 기준 1. 양상 체스턴블롯감사 또는 요설형원 중화감사 또는 요결자감을감사에서 양상일 때 2. 음성 (1) 선멸감사용 항체감사에서 양상반응이지만 (2)택원감사에서 음생반응이고, 웨스턴블롯감사에서 밴드가 없음 때 (2) 선멸감사용 항체검사, 024학원감사에서 모두 음생반응인 때 선멸감사용 합체검사, 024학원감사에서 모두 음생반응인 때 선멸감사용 합체검사 024학원감사에서 모두 음생반응인 때 선멸감사용 교육병원 등 보석 등 등 생기준에 무합되지 않을 때 경사법 경사업 전사 전기 관생 의소단상동감사 보석 회사 전기 관생 회소단상동감사 양상 또는 음생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전사법 전사 전기 관생 (생명단리장으로 의회) 					
130	<별표 3-2> HIV 확인진단검사 결과양식	<별표 3-2> HIV 확인진단검사 결과양식 (양식변경)					
132	< 병표 4-2>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4.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관리 나. 검체는 EDTA 항응고제 처리된 전혈 10㎡을 <별표 8> 앙식과 함께 질병관리청으로 직접 또는 수탁기관 통해 즉시 질병관리청 검체접수실 (043-719-0301)로 송부(필요시, 바이러스분석과로 문의: 043-719-8212)	< 병표 4-2>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4.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관리 나. 검체는 EDTA 항응고제 처리된 전혈 10㎡을 < 병표 8> 양식과 함께 질병관리청으로 직접 또는 수탁기관 통해 즉시 질병관리청 검체접수실 (043-719-8173)로 송부(필요시, 바이러스분석과로 문의: 043-719-8213)					
133	<별표 5-1>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에 대한 추적검사 안내 3.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의 추적검사 나. HIV 감염확진을 위하여 출생 직후, 생후 4주, 4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상 주기로 신생아/유아 검체를 송부 (채혈하기 어려운 경우: 4주, 6개월 이상,	<별표 5-1>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에 대한 추적검사 안내 3.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의 추적검사 나. HIV 감염확진을 위하여 출생 직후, 생후 4주, 4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로 신생아/유아 검체를 송부(채혈하기 어려운 경우: 4주, 6개월 이상, 18개월(총 3회)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141.1		
	18개월(총 3회) 간격으로 채혈)	간격으로 채혈)
153	<u><신설></u>	참고. 청렴서약서
154	<u><신설></u>	참고.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156		
157	<u><신설></u>	참고. 2022년 ○월 AIDS 민간경상보조사업
-158		<u>실적보고서</u>
159	참고.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참고.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139	<u>(양식변경)</u>	(양식참고)
100	참고. 성과물 활용 신청서	참고. 성과물 활용 신청서
160	<u>(양식변경)</u>	<u>(양식참고)</u>
160	참고. 성과물 활용 신청서 확인서 ###	<u>삭제</u>
177	IX. 부록 1. HIV/AIDS 관리 정책 주요 변천과정 2020년 12월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보급 <신설>	IX. 부록 1. HIV/AIDS 관리 정책 주요 변천과정 2020년 12월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갈라잡이' 보급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제6기 구성 - 의학, 보건, 홍보, 법학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제6기 구성 - 의학, 보건, 홍보, 법학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자문단 제2기 구성 - 예방 및 역학, 자단 및 진료, 인권 및 홍보, 연구개발 HIV/AIDS 법인 종합감사 실시 - 「잘병관보험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21년 법인 종합감사 실시 - 총 4개 법인한국에이즈토라면, 대한에이즈에본협회, 한국 에이즈에반지단, 한국가를릭레드라본) 성에개감염병 및 후찬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 - 「청소년보호법 시행권, 제3조제(항제)호에 따른 양업소의 여성종업원을 종업원으로 확대 - 「안마시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확대

Ι

HIV/AIDS 관리 기본 방침

- 1. 비 전
- 2. 기본방향
- 3. 2022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
- 4. 사업 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2022 HIV/AIDS 관리지침

1 \ 비 전

- 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
- 감염 취약군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2 기본방향

가. 대국민 예방홍보활동 강화

- ◎ 감염 취약군별 특성에 따른 홍보물 개발 및 홍보 강화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나.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 에이즈 관련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양성교육 실시
- 감염 취약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강화
- ◎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다. 감염인 발견

- ◎ 감염 취약군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 ◎ 검진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자발적 검진 활성화
-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주기를 준수하여 감염인 발견 및 전파예방
- ◎ 익명검사제도 활성화
- ◎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라. 감염인 보호·지원

-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 환자로 전환 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 감염인 취약집단(노숙인, 구금시설 감염인) 지원
- ◎ 감염인 지원센터, 감염인 쉼터 운영 연계
-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 감염내과가 있는 의료기관과 감염인을 연계

마. 지역 관리체계 확립

- 에이즈 상담소 운영·지원
- ◎ 지역별 공공·민간 전문 의료기관 활용 권장
-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

바. 실험실 등 안전관리 강화

- ◎ HIV 감염인 채혈검사 시 주사침 등에 의한 보건요원 사고 예방 강화
- ◎ 실험연구자 등의 실험·검사 시 발생되는 오염사고 예방

사.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교육

- ◎ 지역사회 HIV/AIDS 예방 활동 및 감염인 지원·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 교육 실시
- ◎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제공

3 \ 2022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

가. HIV 감염인 조기 발견 및 조기진단 강화

- ◎ 감염인지율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검사 활성화 방안 마련
- ◎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권고시기 및 재검사에 대한 안내·홍보 활성화
- 감염 취약군 대상 검진·상담 활성화
- 성매개감염병 유관 학회를 통한 검진·상담 활성화
- ◎ 확인진단 체계 개선을 통한 HIV 진단·감시 강화
- ◎ 감염 취약군 대상 콘돔사용 및 HIV 검진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나. HIV/AIDS 관련 치료 및 지원 확대

- ◎ 감염인 이용도와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 운영
- ◎ 외국인 등 상담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지원 확대
- ◎ HIV/AIDS 관련 진료비 지원방식 개선 검토
- ◎ 상담사업 및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인 접촉자 검진·치료 활성화
- ◎ 생존 감염인의 요양·돌봄 요구 증가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다. HIV/AIDS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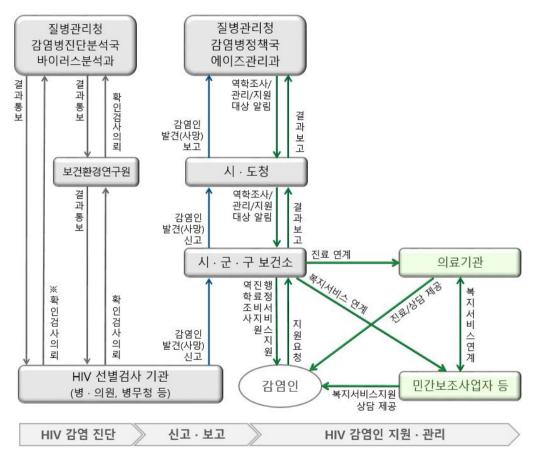
-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일~7일) 유영
- ◎ 미디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 홍보 강화
- 대상별 눈높이 맞춤 홍보 실시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편견·차별해소
- ◎ 지역사회기반 HIV/AIDS 예방 교육·홍보 활성화
- ◎ 감염 취약군,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강화
- ◎ 에이즈 예방 교육 프로그램·교육자료 개발 활성화
- ◎ 의료인 대상 감염인 차별예방 교육 및 편견·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라. 효율적인 HIV/AIDS 신고보고 및 감염인 통합관리 체계 확립

- ◎ 'HIV/AIDS 통계 연보' 발간을 통해 신고·보고 결과 환류
- ◎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사용자 항목 개선 등 신고보고 질 관리 강화

4 \ 사업 수행 체계 및 기관별 역할

가. HIV/AIDS 관리사업 체계도



- ※ HIV 선별검사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에 확인검사 의뢰 가능한 경우
 - 1. HIV 감염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 2. 미결정 통보된 경우의 추적검사

〈그림 1〉HIV/AIDS 관리사업 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1) 중앙행정기관

- ◎ 질병관리청
 - 에이즈관리과
 - 국가 에이즈 관리 정책 총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에이즈 관련 법인 등 관리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정책 개발 및 대책 수립과 시행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가 에이즈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관리, 평가
 - 전국 단위 HIV 감염인 신고 현황, 역학적 특성 분석 및 정보 환류
 - 국가 에이즈 관련 교육·홍보 기획 및 추진
 - 바이러스분석과
 - HIV 검사 기준 제시 및 실험실 정도관리
 - HIV 확인진단검사 실시
 - HIV 병원체 감시 및 분석

2)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시·도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시·군·구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 국가 에이즈 관리 시스템을 통한 HIV/AIDS 발견 등 보고
- ◎ 보건환경연구원
 - HIV 확인진단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HIV 실험실 정도관리
- ◎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지역사회 HIV 감염 예방 및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 HIV 선별검사 수행
- 관할 지역 내 HIV/AIDS 발견(사망) 신고 접수보고
- HIV 감염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진료기관 연계 등)

3) 선별검사기관 및 민간기관 등

- HIV 선별검사 기관
 - HIV 선별검사 실시 및 확인검사 의뢰
 - HIV 감염인 발견(사망) 신고
 - HIV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HIV 감염인과 배우자(또는 성 접촉자) 대상 전파 방지 관련 사항 안내
- ◎ 의료기관
 - HIV 감염인 진료 제공
 - HIV 감염인 상담 및 복약 지도
 - 민간 보조사업자 및 커뮤니티에 복지서비스 연계
- ◎ 민간보조사업자 등
 - HIV 감염인 간병 및 간병인 지원
 - HIV 감염인 재가복지 및 쉼터 지원
 - HIV 감염 외국인 통역 지원
 - HIV 감염 취약군 대상 검진 지원 및 예방 홍보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교육 지원

I

HIV/AIDS 현황

- 1. 세계 현황
- 2. 국내 현황

2022 HIV/AIDS 관리지침

1 세계 현황

가. 신규 HIV 감염인

- 2020년 신규 HIV 감염인 수는 150만 명(100만 명~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 210만 명(150만 명~290만 명)에 비해 31% 감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HIV 감염인은 24만 명(17만 명~31만 명)

나. AIDS 관련 사망 감염인

- 2020년 AIDS로 인하여 사망한 감염인은 68만 명(48만 명~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2004년에 비해 64% 감소, 2010년에 비해 47% 감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DS로 인한 사망 감염인은 13만 명(8.7만 명~20만 명)

다. 생존 HIV 감염인

- ◎ 2020년 기준 3,770만 명(3,020만 명~4,510만 명)으로 추정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존 HIV 감염인은 580만 명(430만 명~700만 명)

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중인 감염인

- 2020년 기준 2,750만 명(2,650만 명~2,770만 명)의 생존 HIV 감염인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존 HIV 감염인은 370만 명(350만 명~360만 명)

2 국내 현황

가. 신규 HIV 감염인 보고 현황

- 2020년 한 해 1,016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으며, 이 중 내국인은 818명이며 외국인은 198명 신고됨
 - (성별) 남자 935명, 여자 81명으로 남자 92.0% 차지
 - (연령) 20대가 33.8%(34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9.8%(303명)로 20~30대가 전체의 63.6%를 차지
 - (검사기관) 병·의원 71.9%(731명), 보건소 16.3%(166명), 기타 11.7%(119명)

〈표 1〉 신규 HIV/AIDS 신고 현황(2020년)

구 분		전	체	내크	구인	외국인		
		명이	(%)	큠이	(%)	명이	(%)	
계		1,016	(100.0)	818	(100.0)	198	(100.0)	
14 H4	남 자	935	(92.0)	790	(96.6)	145	(73.2)	
성 별	여 자	81	(8.0)	28	(3.4)	53	(26.8)	
	0-9세	0	(0.0)	0	(0.0)	0	(0.0)	
	10-19세	17	(1.7)	17	(2.1)	0	(0.0)	
	20-29세	343	(33.8)	295	(36.1)	48	(24.2)	
Od 2d	30-39세	303	(29.8)	219	(26.8)	84	(42.4)	
연 령	40-49세	152	(15.0)	111	(13.6)	41	(20.7)	
	50-59세	122	(12.0)	104	(12.7)	18	(9.1)	
	60-69세	62	(6.1)	55	(6.7)	7	(3.5)	
	70세 이상	17	(1.7)	17	(2.1)	0	(0.0)	
	병·의원	731	(71.9)	569	(69.6)	162	(81.8)	
신고기관	보건소	166	(16.3)	144	(17.6)	22	(11.1)	
	기 타	119	(11.7)	105	(12.8)	14	(7.1)	

- (감염경로) 감염경로에 응답한 사람은 586명이며, 99.7%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
 - ※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부터 보고 사례 없음
- (검사동기)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35.9%(332명), 자발적으로 검사한 경우 29.5%(273명)
- (면역수치) CD4+ T 세포 수가 200/4l 미만인 경우 41.7%(100명)

〈표 2〉HIV/AIDS 내국인 감염경로별, 검사동기, CD4+ T 세포 수 분포(2020년)

	구 분	전	체	L	<u> </u>		여
1 4		西	(%)	연	(%)	명	(%)
	계	818	(100.0)	790	(100.0)	28	(100.0)
	성 접촉	584	(99.7)	563	(99.6)	21	(100.0)
	- 이성간 성 접촉	256	(43.7)	235	(41.6)	21	(100.0)
감염경로	- 동성간 성 접촉	328	(56.0)	328	(58.1)	0	(0.0)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2	(0.3)	2	(0.4)	0	(0.0)
	무응답	232	_	225	-	7	-
	질병원인확인	218	(28.0)	211	(28.1)	7	(25.0)
	수술입원시 검사	201	(25.8)	196	(26.1)	5	(17.9)
거니도기	건강검진	122	(15.7)	115	(15.3)	7	(25.0)
검사동기	자발적 검사	167	(21.4)	162	(21.6)	5	(17.9)
	기타	71	(9.1)	67	(8.9)	4	(14.3)
	무응답	39	_	39	-	0	-
	< 200/μθ	93	(49.2)	89	(48.6)	4	(66.7)
	200~349/μl	40	(21.2)	39	(21.3)	1	(16.7)
CD4+ T 세포 수	350~499/µl	30	(15.9)	30	(16.4)	0	(0.0)
- 11	≥ 500/µl	26	(13.8)	25	(13.7)	1	(16.7)
	조사 미실시	629	_	607	_	22	_

[※] 항목별 구성비(%)는 무응답 및 조사 미실시 건 제외하여 산출

나. 생존 HIV 감염인 현황

◎ 2020년 현재 HIV/AIDS 내국인은 14,538명으로, 남자 93.5%(13,589명), 여자 6.5%(949명)

전체 남 구 분 명 (%) 명 (%) 명 (%) 14,538 (100.0)13,589 (100.0)949 (100.0)0-9세 (0.0)(0.0)(0.0)29 34 (0.2)(0.2)5 (0.5)10-19세 20-29세 2,135 (14.7)2,087 48 (15.4)(5.1)(15.6)30-39세 3,403 (23.4)3,255 (24.0)148 연 령 40-49세 3,475 (23.9)3,255 (24.0)220 (23.2)50-59세 3,112 (21.4)2,902 (21.4)210 (22.1)60-69세 1,705 (11.7)1,487 (10.9)218 (23.0)

(표 3) 현재 HIV/AIDS 내국인 성별, 연령별 현황(2020년)

다. 익명 신고 건수

70세 이상

◎ 2020년 539건 중 14.3%가 보건소, 그 외 기관(병·의원, 병무청 등)이 85.7% 차지

(4.6)

(4.2)

100

573

673

(표 4) 연도별 HIV/AIDS 익명 신고 건수(2011~2020년)

단위: 건(%)

(10.5)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212	308	328	386	410	389	485	511	544	539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	98	145	145	181	156	137	144	131	127	77
검사 기관	건 소	(46.2)	(47.1)	(44.2)	(46.9)	(38.1)	(35.2)	(29.7)	(25.6)	(23.3)	(14.3)
'-	보	114	163	183	205	254	252	341	380	417	462
	건 소 외*	(53.8)	(52.9)	(55.8)	(53.1)	(62.0)	(64.8)	(70.3)	(74.4)	(76.7)	(85.7)

^{*} 병·의원, 병무청 등 포함



HIV/AIDS 교육·홍보

- 1. 목 적
- 2. 근 거
- 3. 추진 계획
- 4. 보건소 HIV/AIDS 예방·홍보사업 추진

2022 HIV/AIDS 관리지침

1 \ 목 적

 전 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부적절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2 \ 근 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3조제1항

3 \ 추진 계획

가. HIV/AIDS 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추진

- 1)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 개선
- ◎ 주요 감염경로, 노출 유형에 따른 감염위험, 노출 전 예방법 등의 정보 지속 제공
- ◎ 외국의 HIV/AIDS 정보 및 예방 홍보 콘텐츠 정보 제공
- ◎ HIV/AIDS 검색절차 및 기능 개선

나. 감염위험 집단별 교육·홍보 실시

-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 ◎ 동영상, 리플릿 등을 통한 에이즈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예방홍보 및 보건교육
 - → 민원인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 및 홍보영상 상영
- ◎ 시·도 및 보건소와 민간단체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교육·홍보 실시

2) 동성애자 등 감염 취약군

- ◎ 오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 ◎ 리플릿, 소책자, 만화책자 등을 통한 홍보
- ◎ 사전조사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콘돔, 윤활젤, 기타 홍보물 등
- ◎ 민간단체를 통한 현황파악 및 해당집단의 접근방법 모색
- ◎ 안전한 성관계 및 콘돔사용에 대한 필요성 강조

다. 대상별 교육·홍보 실시

1) 일반 국민

-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대중매체(TV, 케이블, 옥외광고, 지하철 등)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 안전한 성관계 및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실시
- 거리캠페인 등 이벤트를 통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에이즈에 대한 관심 유도
- 대한민국정책포털, KTV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 ◎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에이즈 바로알기 및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
- ◎ 각 시·도의 전광판 활용을 통한 영상 송출 실시

2)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이 참고해야 할 의과학적 지식, 의료인의 책무뿐 아니라 법적, 인권적, 윤리적 측면의 교육 실시

3) 청소년

- ◎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제작 활용
- ◎ 학교 밖 청소년 집중 교육 강화
- 시·도 및 보건소에서 민간단체 에이즈 예방강사를 연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
- ◎ 해당 부처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 ◎ 사전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예방법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 전달

4) 노 인

- ◎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 활용
-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예방극 등을 통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5) 군 인

- ◎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 활용
- ◎ 해당 부처 연계를 통한 교육

6) 외국인

- ◎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이즈 홍보·교육
 - 인터넷 광고, 거리축제 캠페인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
- ◎ 외국어판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 보급
-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검사 및 상담 내용 홍보

7) 언론인

◎ 언론 및 미디어에서 에이즈 보도 취재 시 참고할 사항에 관한 사항 지원

라. 교육·훈련 강화

1)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 강화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과정 지속실시
- ◎ 보직변경자 우선 교육 실시

2)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

◎ 의사, 간호사, 예비의료인, 검사요원 등에 대한 에이즈 교육

3) 상담원 및 예방강사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상담소 상담원,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민간단체 예방강사에 대한 전문 교육

4) 에이즈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 에이즈 관련 기본과정(보건소 담당자, 의료기관 의료인 등 대상)

5)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

- 질병관리청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및 검역소 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정도관리
-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정도관리

마. 정부와 민간협력 행사를 통한 에이즈 관심유도

- 1) 세계 에이즈의 날 전·후 중「에이즈예방주간(12.1.~12.7.)」 운영
-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참여
- ◎ 기관별·지역별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범국민·범지역적인 참여 유도 및 분위기 조성
- ◎ 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마련
- ◎ 유공자 포상 실시
- ◎ 방송 및 언론의 취재보도 및 방송뉴스 송출 협조

4

보건소 HIV/AIDS 예방·홍보사업 추진

가. 목 적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를 통해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홍보사업을 안내하여 에이즈 예방 홍보효과 제고

나. 중점 예방홍보사업

1) 보건소 내부홍보

- ◎ 중요성
 - 보건소는 여타 질병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임
 - 보건소 내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보건소에 내방한 국민에게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조치사항
 -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건소 자체 홍보를 실시해야 함
 - 보건소 입구 또는 게시판(전광판)에 「에이즈 익명검사 검사안내문」설치 (타인에게 묻지 않고 HIV익명검사 담당자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함)
 - * 신속검사에 대한 검사 제한점 반드시 안내
 - ☞ HIV 신속검사 제한점
 - 기본 선별검사(ELISA, CLIA, FEIA 등)에 비해 감도가 낮아 양성반응을 위하여 높은 항체가가 요구됨
 - HIV 초기감염 의심환자(항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서 위음성으로 검사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음

(※ 위음성: 본래 양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음성으로 나온 경우)

- 보건소 입구 또는 진료실 부근에 「에이즈 예방 리플릿」 배치
- 보건소 입구, 게시판에 「에이즈 검사 포스터」 부착
- ◎ 참고자료
 - 에이즈 관련 포스터·리플릿

2)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 중요성
 -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다양한 질병 및 건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보건소 홈페이지는 검증된 건강정보를 얻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소통채널 중 하나임

조치사항

-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건소 내부 홍보를 실시해야함
 - 우리나라의 「HIV/AIDS관련 현황(통계)」게재
 - 「HIV 전파경로 및 예방수칙」 게재
 - 「HIV 검사필요성 및 검사방법」 게재
 - 보건소의 「HIV익명검사 절차 및 담당부서(담당자)」 게재
 - HIV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및 합병증」 게재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와 의의」게재
 - HIV/AIDS 관련 편견·차별 해소 메시지 게재
 - 보건소 홈페이지의 Q&A 게시판 또는 에이즈 Q&A에 글 작성시 로그인(실명인증) 없이 글 작성 가능하도록 함

◎ 참고자료

-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 HIV/AIDS 신고제도 및 검사가이드라인(기배포)
- 에이즈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및 인쇄 콘텐츠

3)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

- ◎ 중요성
 - 해당 보건소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매체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보다 더욱 세부 목표화하여 저예산 고효율 측면이 있음
 - 보건소 내 소극적 홍보를 넘어 지역 거주자들이 활동하는 곳에서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

◎ 조치사항

- 다음의 매체를 참고하여 지역매체 홍보 실시
 -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광고
 - 지역신문을 통한 기사 및 홍보

4) 현장 캠페인 홍보

- ◎ 중요성
 -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에서 일반국민 및 감염 취약군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여 언론홍보 및 관심환기 유도
 -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지역별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범국민·범지역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 보다 목표된 대상에게 실질적인 집중홍보 가능
- 조치사항
 -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캠페인 진행
 - 현장 캠페인 전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여 그 해 컨셉 및 슬로건 확인(전년도 「에이즈예방주간」 관련 공문참조)
 -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인력 및 홍보물 보강
 - 현장 캠페인 진행 시 홍보물(리플릿, 콘돔, 기타 홍보물품) 등을 지참

IV

HIV 검진 및 신고·보고

- 1. 목 적
- 2. 근 거
- 3. HIV 검진 계획 수립
- 4. 익명검사 안내
- 5. HIV 검진 실시
- 6. HIV 감염인/AIDS 환자 발견 신고·보고

2022 HIV/AIDS 관리지침

1 \ 목 적

● 자발적 검사 및 익명 검사 활성화로 HIV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하는 행위 방지

2 \ 근 거

가. 검진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검진), 제9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제8조(혈액· 장기·조직등의 검사), 제9조(확인검사)

나. 신고·보고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다. 검진 결과 통보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비밀누설금지) 및 제8조의2(검진결과의 통보)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본인 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없음

3 \ HIV 검진 계획 수립

가. 대상별 검진 주기

- ◎ 정기검진
 - 대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검진 주기: 1회/6개월

◎ 수시검진

- 대상:시·군·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HIV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 임신부의 산전검사 시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시
-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규 입소 시
- 성매개감염병 검사 시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검진주기:수시

〈표 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개정 2021.7.19.⟩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앤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앤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 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나. 검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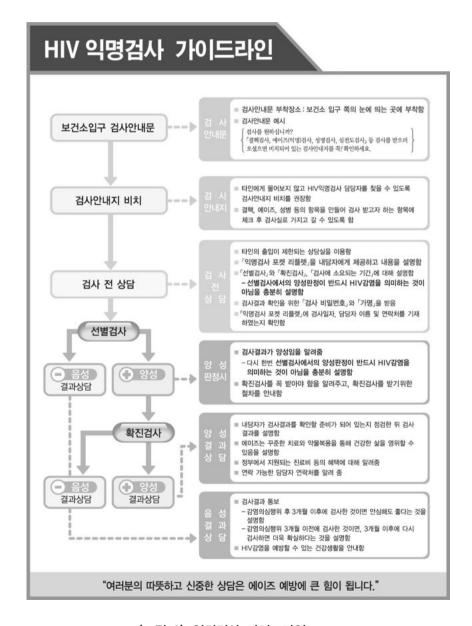
- ◎ 계획 수립
 - 정기검진: 관할 지역 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검진
 - 수시검진: 관할 지역 내 검사 희망자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 ◎ 과도하게 중복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

다. 시약 수급

- ◎ 시약 구매에 따른 예산은 질병관리청에서 지원
- ◎ 시·도는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
- ◎ 시·도별 자체 계획 또는 특별 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시약은 자체 구입 사용

4 \ 익명검사 안내

- ◎ 보건소 내 눈에 띄는 곳에 HIV 익명검사 실시 안내문을 부착
 -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HIV 익명검사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지 비치를 권장



〈그림 2〉 익명검사 가이드라인

5 \ HIV 검진 실시

HIV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는 선별검사와 확인검사 두 단계를 거치며,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 검체는 확인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

가. 선별검사

- 선별검사는 HIV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최초의 검사를 말하며, 선별 검사 결과 양성반응 검체는 HIV 감염 최종 진단을 위해 확인검사를 받음
- ◎ 선별검사 기관
 - 보건소, 병·의원, 지방병무청, 임상검사센터, 혈액검사센터 등
- ◎ 선별검사 실시
 - 접수: HIV 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피검사자에게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사 실시
 - 실명검사 : 인적정보를 밝히고 실시하는 검사
 - 익명검사: 인적정보를 밝히지 않고 피검진자가 정하는 임시정보(가명, 비밀 번호 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검사
 - 검사 전 안내: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담실에서 안내를 권장하며, 검사 절차, 항체형성기간, 감염 위험행위, 검사 결과의 비밀보장, 검사 소요기간 등을 안내
 - 결과 통보
 - 선별검사 음성반응 시 HIV 항체 미형성으로 인한 위음성 가능성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파 위험 행위에 대해 안내
 - 선별검사 양성반응 시 확인검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안내
- ◎ 선별검사 방법
 - EIA(효소면역시험법), CLIA(화학발광면역시험법), FEIA(형광효소면역시험법) 등을 기본검사로 하며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간이검사 (Rapid test(신속검사), 손가락 천자, 구강점막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

- 최근 노출일로부터 4주경에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일 때 효소면역 시험법(EIA, CLIA 등)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6주 이후, 간이검사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최근 노출일로부터 12주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검진자에게 검사의 제한점을 반드시 설명하고,감염 의심행동 12주 이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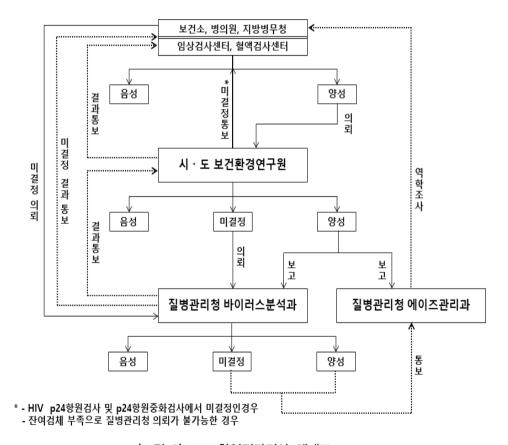
☞ HIV 간이검사 제한점

- 기본 선별검사(ELISA, CLIA, FEIA 등)에 비해 감도가 낮아 양성반응을 위하여 높은 항체가가 요구
- HIV 초기감염 의심환자(항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서 위음성으로 검사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음
- (※ 위음성: 본래 양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음성으로 나온 경우)

나 확인검사

- 확인검사는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에 대해 HIV 감염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를 말함
- ◎ 확인검사 기관
 -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 18개 보건환경연구원 ※ 근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
- ◎ 확인검사 의뢰
 -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 검사를 의뢰하며, 아래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함
 -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으로 통보된 검체(별표 4-2)
 - HIV 감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하의 신생아/유아의 검체(별표 5-1)
 -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검체
 - ※ 확인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인이 HIV 감염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검사를 의뢰함
 - 의뢰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병원체확인) 사용 시: 확인검사 및 미결정 판정자의 최종확인검사의뢰는 〈별표 8〉 양식과 함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병원체 확인)에 직접 의뢰
 -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결정으로 판정한 검체의 잔량이 2mQ 이상인 경우: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에서 '이관'기능을 사용하여 최종확인검사의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병원체확인) 미사용 시: 〈별표 1-1〉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별표 1-2〉작성 요령 참고') 하고 미결정 판정자 검체의 최종확인검사 의뢰는 〈별표 4-1〉의뢰서와 미결정 검사 결과〈별표 3-2〉양식을 붙임으로 발송
- 검사 의뢰 시 검체명은 검체번호로 코드화하고, 피검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피검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안체계 확보
 - ※ 비고란에 임상소견이나 특이사항을 필히 기재할 것



〈그림 3〉 HIV 확인진단검사 체계도

- 검체의 채취 및 수송
- 혈청 또는 혈장은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용기(고무링이 있는 outer screw cryogenic tube, 2ml)를 사용하며, 선별검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검체용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않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결정통보를 받고, 잔여 검체 부족으로 추가 검체 채취가 필요한 경우, 항응고제(헤파린 제외) 처리된 전혈 10㎖을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로 직접의뢰 또는 수탁기관 통해 의뢰
- 수송용기는 국제규격에 맞는 병원체안전수송용기(UN3373) 사용 ※ 혈액검사센터는 미결정 추구검사 제외
- ◎ 확인검사 실시
 - 확인검사기관은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HIV 확인검사를 수행하고 〈별표 2-2〉에 제시된 판정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
- ◎ 확인검사 결과 통보
 - 확인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의뢰한 기관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병원체확인) (〈별표 2-1〉 양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 검사의뢰기관에 '양성' 결과 통보 시 "실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익명은 같은 법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기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 검사의뢰기관에 '미결정' 결과 통보 시 "반드시 재 채혈하여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부석과로 검사 의뢰 요망"을 명시
 - 바이러스분석과는 미결정 검체에 대하여 HIV 최종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고, 양성인 경우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신고·보고
 - ※ HIV 확인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를 원할 시 관리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확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재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신고·보고하고, '음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양성' 판정을 내린 확인검사기관에 이를 보고함. '양성'으로 판정했던 확인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불일치 경위를 조사하여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으로 보고함

● 실험실 환경

- 실험공간: 실험실은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내·외부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분리된 공간을 확보
- 실험장비: HIV 확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며, 장비는 최적의 상태로 작동 되도록 정기적으로 보정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함

- ◎ 전문인력 확보
 - 확인검사기관은 검사의 고도의 정확성과 결과 판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워 1인을 포함한 최소 2인 이상이 HIV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확인검사기관은 HIV 확인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생물학, 미생물학, 임상병리학 등) 전공자를 HIV 확인검사 전문인력으로 확보 하도록 함
 - 확인검사기관은 HIV 확인검사 요원의 교체 및 충원 시 신규직원 발생을 질병 관리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HIV 확인진단교육을 이수 후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다. HIV 검사 정도관리

- HIV 검사 외부정도평가
 - 확인검사기관과 선별검사기관은 HIV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 수행 시 정도관리물질을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연 1회 이상 질병관리청의 HIV 검사 외부정도평가(숙련도 시험)에 참여
- HIV 검사실 정도관리
 -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는 확인검사기관으로 내부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고 확인검사기관은 월 2회 이상 질관리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 값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도보증 〉 HIV 〉 정도관리 〉 결과입력"메뉴에 입력하도록 함
 - 확인검사기관은 관할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하여 실험실 안전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

HIV 감염인/AIDS 환자 발견 신고·보고

가 신고 기준 및 의무자

- ◎ 신고기준
 - HIV 감염인: HIV 확인검사기관으로부터 HIV 감염이 확인된 사람
 - AIDS 환자: AIDS 정의질환이 나타나거나 CD+4 T 세포 수가 200/ℓ 미만인 HIV 감염인
- ◎ 신고 의무자
 -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HIV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학술연구 또는 혈액원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나 신고 시기 및 절차

-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 ◎ 신고 절차
 - 해당 선별검사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서식
 - 실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1호의2서식
 - 익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관련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제8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제7조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ASNet) 또는 FAX 신고

다. 신고 받은 보건소 조치 사항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하고, 실명 신고인 경우 인적정보는 유선 보고
 - ※ 보고 절차는 Ⅷ. 에이즈지원시스템의 '4. 사용자 매뉴얼(별지수록)' 참고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1. 목 적
- 2. 근 거
- 3. 지원 주체
- 4. 상담 및 지원
- 5. 역학조사
- 6. 대상별 조치 사항
- 7. 상황별 조치 사항
- 8. 진료비 지원
- 9. 건강상태 진단 및 관리

2022 HIV/AIDS 관리지침

1 \ 목 적

● HASNet 또는 공문으로 감염인 지원 및 역학조사 실시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감염경로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진료기관에 즉시 연계하고, 감염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 근 거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4조(치료권고)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국방부훈령)

3 \ 지원 주체

- ◎ 감염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관리
- ◎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지 보건소에서 지원
-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확정된 후에는 수감되는 교도소(구치소)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상담 및 지원

가. 감염인과의 면담 약속

- 관내 HIV 항체 양성 발견 통보를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담을 약속
- ◎ 면담 시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전파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전파를 최소화

- 면담장소는 가능한 한 보건소내의 상담실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면담
- 감염인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며 본인에게도 비밀보장에 대해 확약(「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역학조사 결과(〈별표 6-1〉, 〈별표6-2〉)를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 ◎ 연계 병원과 담당의사를 확보하여 협조관계를 유지

나, 상담기법

1) 감염인의 감정상태 수용

- 상담자는 감염인이 처음 감염사실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알고, 격렬한 울음이나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함 때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함
- 자신이 항체양성자라는 것을 통보 받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과 함께 사회적 낙인과 냉대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담은 건강문제와 더불어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2) 감염인에게 희망을 주도록

- 상담자는 HIV 항체 양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염인에게 충분히 설명
- 상담자는 가능한 건강관리방법이나 예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항체양성자 들이 자신의 건강과 향후 이 병의 진전을 막아줄 과학의 발전(약제개발 등)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3) 감염인의 관심사에 대한 상담

- 누구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알려야 하는 지와 더불어 가족관계, 질병시의 대책, 향후 성생활,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제한 여부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열거해 줌
- ◎ 감염인이 부모나 배우자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응해 줌

다. 감염전파방지 교육

- 감염인에게 자신이 남에게 HIV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향후 성생활에 대한 조언과 전파행위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함
- 임신할 경우 감염인인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HIV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
- ◎ 가족 예방 교육
 - HIV 감염원은 혈액, 정액, 질 분비물에 있으므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주의를 하면 감염위험은 없으나, 다음 사항을 유념하도록 가족구성원에게 교육
 - 사용 시 자칫 상처를 낼수 있는 물품들, 즉 면도기, 칫솔, 손톱깍이 등은 가급적 개인용품을 사용하도록 함
 - 감염인 또는 돌보는 사람이 피부에 자상 또는 염증이 생긴 경우 폭로된 피부는 상처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함
 -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된 팔이나 다른 부분들은 즉시 물로 씻어야 하며 혈액에 얼룩져 있는 부위는 적절하게 소독
 - 의료용 목적으로 비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경우는 전문가의 자무을 구함
 - ※ 교육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AIDS 질환에 대한 일반적 소개
 - HIV 항체 양성의 의미
 - HIV 전파방지 방법
 - 항체양성자로서의 주의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대한 소개 및 양성자로서의 관리의무
 - 건강관리, 취업, 결혼, 사회생활 등
 - 보건소 지원내용 및 연락방법 등
 - 질병발현 시, 병원방문 시, 임신 시 조치 등

라. 감염인 상담에 관한 사항

- 보건소 담당자는 감염인에게 HIV 항체 양성의 의미, 전파 방지방법, 국가지원 사항(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산정특례 등), 역학조사, 에이즈 관련 보건교육, 의료기관 연계 등 기본적인 내용의 상담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감염인에게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안내하여 감염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전파매개행위 우려 등과 같이 수시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상담
 -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과 연계되어 상담을 받고 있는 감염인의 경우 상담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환자추적관리가 안되는 감염인에게는 지속적인 상담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인을 독려
- ◎ 상담 시 유의사항
 - 결혼 및 동거상태, 주거변동사항, 임신여부를 파악하고, HIV/AIDS에 대한 지식과 전파방지 교육을 실시
 - 상담 시 특이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 시 즉각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

마. 질병(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 연계
 - 신규감염인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
 - 감염인이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에서 병원과 협의하여 후납할수 있도록 적극 요청
- 감염인이 에이즈로 발병하였을 경우 진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신고(「후천성면역결핍증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 2서식])하고 보건소는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 으로 보고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HIV 감염인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와 선택의료기관제 적용에서 제외됨을 안내함
 - ※ 관련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바.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항

- 임신 시 진료기관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할 병원과 담당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도록 안내
- 항체양성자가 출산했을 경우 산모의 감염인 번호와 출산내용 및 출산방법, 출산 병원, 영아의 건강상태 등을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하고 신생아 감염의 최종확인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로 추적검사 의뢰하여 판정
- 신생아의 추적검사비용은 산모의 감염인 번호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직 또는 소아감염인의 경우 치료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 급여 등재약품의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진료비 지워
- 남편이 감염인일지라도 산모가 비감염인일 경우 그 신생아는 비감염 상태이므로 혈액을 채취할 필요는 없음

사. 감염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 이상의 역학조사와 상담, 교육, 검사, 검진 등이 끝나면 향후계획(직업, 결혼, 임신 등)에 대해 협의하고, 주소의 변경이나 질병의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을 고려※ 이때 감염인 인적사항 비밀 보호에 유의(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참고,
 - ※ 이때 감염인 인적사항 비밀 보호에 유의(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점」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
- 감염인과 연락 시 주변사람이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감염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연락하는 방법을 택함

5 역학조사

가. 근거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나. 목적

-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 ◎ 감염병 발생 유행 우려 있는 경우 지역 확산 방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7조(벌칙)에 근거,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대상

◎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라. 역학조사 주관

◎ 시·도의 지휘하에 시·군·구에서 실시

- ※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함(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관련 근거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훈령 제34호) 제4조)
-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마. 역학조사 방법

- 역학조사서 서식(성인용, 소아용) 선택하여 내용 기재※〈별표 6-1〉성인용 역학조사서.〈별표 6-2〉소아용 역학조사서
 - (성인용) 만 16세 이상 성인(외국인 포함) 혹은 감염경로가 성 접촉 또는 마약사용자인 경우
 - (소아용) 만 16세 미만

바. 역학조사서 작성 요령

- 역학조사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종판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함
- '발견당시 상태'는 판정 후 가장 가까운 시일(치료 시작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값을 확인하여 기재함
-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감염인과의 성 접촉자,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자
 등 감염경로에 노출된 사람을 파악하여 HIV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검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기재함

- '감염경로에 대한 사항'은 HIV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로에 노출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임
 - '본인이 추정하는 감염경로'는 감염인이 진술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 재면담을 통해 보완하여 기재함
 - '수혈'이나 '혈액제제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라 진술한 경우, 우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진위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만 기재함
 - ※ HIV 전파 우려되는 소재불명 감염인 역학조사
 - 대상
 - HIV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신규 감염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규 감염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 주체: 감염인 관리 보건소
 - ◎ 조치사항
 - 관리 보건소는 전파 우려되는 감염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일 경우,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련 기관(경찰청 등 경찰관서)에 해당 감염인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법무부 등)에 해당 감염인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리 보건소는 회신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감염인 신병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역학조사, 치료 기관 연계 등)
 - ※ 관련 법령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0조(역학조사), 제14조(치료권고),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사. 역학조사 내용 보고

●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 으로 보고함

6 대상별 조치 사항

가. 공통사항

- HIV 감염인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함
- 상담, 지원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한 경우, 상담 및 교육 내용을 HASNet의 '상담관리대장'에 기록함
 - 연락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 신규 HIV 감염인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HIV 감염인의 건강상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HIV 감염인과 연락을 취할 시 주변 사람에게 감염사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워할 경우 감염인이 연락하는 방법을 택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을 고려하고, 이때 감염인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나. 성 접촉 파트너(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포함)가 있는 경우

- 감염인 본인이 성 접촉 파트너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 하고 파트너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 접촉 파트너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감염되지 않은 성 접촉 파트너에 대하여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 시 위 사항에 준함

다. 임신부

- 감염인 부부가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를 통해 배우자 전파 및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임신 시 진료기관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할 병원과 담당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도록 안내함

- 임신부의 감염인 번호와 출산 예정일, 병원, 건강상태, 수직감염 예방약제 투약 등을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HASNet을 통해 보고함
- 출산 후 산모의 감염인 번호와 출산 방법 및 내용, 병원, 영아의 건강상태 등을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에 HASNet을 통해 보고함
 - 신생아 감염의 최종 확인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로 추적 검사 의뢰하여 판정함
 - 신생아 추적검사에 드는 비용은 산모의 감염인 번호로 지원함
- 소아감염인(18개월 이하의 신생아 감염 포함) 진료비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 급여 등재 약품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진료비 지원함
- HIV 감염 임산부의 모유에는 전파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모유수유를 금함
- 수직감염 의심 신생아의 예방접종은 사백신만을 접종하며, 추적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생백신(MMR, 수두) 예방접종을 실시함

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HIV 감염인은 신체등위 6급(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으로 판정되어 병역이 면제됨
- 감염인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 서식)'를 작성하여 'HIV 감염 확인서 〈별표 7〉'를 관리보건소에서 발급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함을 안내
 - 관련법령:「병역법」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4조
 - ※ 실명등록자만 해당되며, 익명등록자의 경우 실명전환 후 'HIV 감염 확인서' 발급 가능함
 - ※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http://mma.go.kr

마. 교정시설 수용자

- ◎ 교정시설에 수용된 감염인은 요청 시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
 - 상담 시 감염인에게 '교정시설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동 사업을 통한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 이 지침 'Ⅷ.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 안내, 1. 민간보조사업 안내'참고

바. 근로자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없음
 - ※ 관련법령:「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3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사 선 원

-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 감염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함
 - ※ 관련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아. 미성년자

- ◎ 「민법」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그 법정대리인 에게 통보하여야 함
- 혈우병,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감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통보를 유보하고 감염인의 부모에게 통보한 후 부모를 통하여 지도받도록 함
 - 다만, 보건소장은 감염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타인에게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본인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고 전파 예방 교육을 실시함

자. 외국인

- ◎ 외국인 익명등록자는 내국인 익명등록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외국인 실명등록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서 HASNet을 통해 '감염인번호'를 부여하고 역학조사를 지시하며, 발견 통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음
- 시·군·구 담당자는 '감염인번호' 부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함
 - 역학조사서 선정(성인용, 소아용) 및 실시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함
 - 불법체류자 등으로 인해 즉시 출국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어려운 경우 HASNet 상담관리대장에 미실시 사유를 기록함

-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감염인 번호'가 부여된 자만 해당됨
 - 지원 시점: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가능
- ◎ '감염인 번호' 부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진료비 지원 가능함
 - 영주비자(F-5) 소지 감염인 중 내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거주비자(F-2) 소지 감염인 중 내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 인정자
 - 일반/간이 귀화신청을 한 감염인
 - 기타 국내 체류 허가자로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감염인
- ◎ 모든 문서는 인적사항 기재 없이 '감염인 번호'만을 사용하여 보고함
- ◎ 외국인 역학조사 시 영어(〈별표 6-4, 6-5, 6-6〉) 서식을 활용
 - 기타언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의 '역학조사서 번역본'을 활용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 ※ 역학조사와 지원, 전파방지 교육 등에 보다 원활한 언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이즈퇴치 연맹의 외국인 HIV 감염예방지원센터(02-927-4322)를 통해 무료 통역 지원받을 수 있음 (가능언어: 영어)
 - ※ 종교단체, 외국인보호소 및 사업주 등과 협의하여 자율 검진 유도, 검진 시 인권 문제 등에 유의하여야 함

차.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HIV 감염인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와 선택의료기관제 적용에서 제외됨을 안내함
 - ※ 관련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 ◎ 기초수급대상자는 HIV/AIDS 관련 진료비 면제됨

7 상황별 조치 사항

가. 실명전환

- HIV 확인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후 익명으로 보고되었던 자가 진료비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익명으로 보고했던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실명전환을 신청함
-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을 통해 신청하고, 인적사항은 유선으로 보고함
- ◎ 진료비 지원: '실명전환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원함
 - ※ 실명보고와 지원 가능 시점이 다름에 유의 바람
 - ※ 진료비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이 지침 'V. HIV 감염인지원 및 관리 8. 진료비 지원' 참고

나. 전출입

- 관내 거주하던 감염인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타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용이한 경우, 해당 보건소로 그 권한을 이관시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감염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전출지 보건소는 전입지 보건소에 유선 으로 전출 사항을 협의 후 HASNet에서 전출 처리함
- ◎ 전출입 시점
 - 관리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출지 보건소에서 소관사항을 전입지 보건소로 이관한 시점으로 함(실제 주소지 이전 시점과 다를 수 있음)
- 관리 문서 전송
 - 관리 중인 해당 감염인의 문서 일체를 전입지 보건소로 발송
 - ※ 사본을 생성하지 않음에 유의
 - ※ 이 지침 'VI. 기타 사업 관리 1. 기록물 관리'참고

다. 감염인 사망

- HIV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관리 중인 감염인의 사망을 확인한 시·군·구 담당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 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사망 시 확인 사항: 사망일, 사망원인, AIDS와 관련성 여부 등
- HASNet 사망 보고
 - 관리 중인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고관리'에 보고함
 -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사망 신고 받은 경우: '의료기관 사망관리'에 보고함
 - 사망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함
- ◎ 관리 문서 처리
 - 대외비로 관리중인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 보관 중인 관련 대외비 문서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최소 5년간 보존 후 파기
 - ※ 이 지침 'VI. 기타 사업 관리 1. 기록물 관리'참고

라. 기타 특이사항

● HIV 감염인의 임신, 출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 '감염인 상담관리'에 보고함

8 \ 진료비 지원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며, 감염인 선 납부 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 협조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에 후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가 지원 대상

- 대상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함
 - → 입원기간 중 최종판정 받은 경우 입원일로 소급하여 지원함(산정특례 적용 필수)
 (예 1. 입원기간 2021.2.1.~2.5., 최종판정일 2021.2.4. → 2021.2.1.부터 지급)
 (예 2. 입원기간 2021.2.1.~2.5., 최종판정일 2021.2.10. → 2021.2.10.부터 지급)
- ◎ 대상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 실명전화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함
 - → 입원기간 중 실명 전환한 경우 입원일로 소급하여 지원함
- 대상 3.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 '다. 진료비 청구'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 검토 후 지급함
- ◎ 대상 4.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 예방약제 및 추적검사 비용 지원함 (산모 감염인 번호로 지원)
- ◉ 대상 5.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 중 확진을 받기 전 미결정판정일로부터 발생한 HIV 관련 진료비를 소급하여 지원함(2017년 1월부터 적용함)

나. 지급 가능 기간

-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진료일 2021.1.1. 부터 지급 가능)
 - ※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되지 않은 2020년 청구 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 가능

		-		-	
구 분	최초신고	지급대상	진료비 지급기준	입원기간 진료비 소급 적용	비고
1	실명등록	내·외국인	최종판정일부터 지원	적용	
_ '	2004	미결정에서 확진	미결정판정일부터 지원	적용	2017년 1월부터 적용
2	익명등록	실명전환신청자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적용	
2	7151	보건의료인 중 노출사고	진료비 청구 절차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지급	미적용	관리번호 따로 부여 후 지원
3 기타 	/년 	기타 감염인 산모의	예방약제 및 추적검사 비용 지급	미적용	산모 감염인 번호로 지원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

다. 진료비 청구

- 감염인이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영수증 원본 (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임
 -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감염인이 진료비 선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 시·도(혹은 시·군·구) 진료비 지원 담당자는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를 적극 요청함
 - 진료비 후불이 협조된 경우 감염인의 진료비 청구 계좌에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를 기입하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 보건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
 요청 공문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함
-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산정특례 적용 여부 확인 및 '미결정판정자이지만, 초기 HIV 감염으로 의심 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라. 진료비 심사

- ◎ 지원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함

◎ 지원금액

-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10%)이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별표3의 제2호나목1)나)의 본인부담상한액 이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현행과 같음)
- 선별급여가 발생한 경우(현행과 같음)
-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함
 - 조건1.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2. 감염내과 또는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
 소견서 첨부
 - ※ 지속적·동일한 타과 진료 시 소견서는 반기별로 첨부
 - ※ 소견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단,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
 -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전액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 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관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9-89호, 2009.5.21) 개정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24)의 입원·외래 진료 본인일부 부담금이 10%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 ※ 본인부담금이 10%를 초과하나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함
 - 선별급여가 발생한 경우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2017년 7월부터 적용함)
 - ※ 선별급여: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지정하여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 보건의료인이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대상 3' 해당)
 - 관련 문서를 제출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감염인 지급절차에 따라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함

●●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 대상 아님
 - 비급여로 청구된 치료제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되도록 함(현재 ART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됨)

마.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지급액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담

바. 진료비 지급 현황 보고

- ◎ 관할 시·도(혹은 시·군·구)에서는 진료비 지급 발생 시 HASNet으로 보고함
- 진료비 지급 현황은 반기별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 하여야 함
 - 상반기: 7월 15일까지
 - 하반기: 익년 1월 15일까지

사. 진료비 환수 관리

- ◎ 과·오 지급된 진료비는 지원 보건소에서 환수
 -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후불 지원인 경우는 의료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
 - → 그 내역을 기존에 HASNet으로 입력했던 진료비에서 수정 후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로 보고

9 \ 건강상태 진단 및 관리

가. 면역검사

- ◎ 면역검사의 개요
 - 면역검사의 목적: 면역검사는 HIV 감염인의 CD4+ T 세포 및 CD8+ T 세포 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HIV 감염인의 질병진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면역검사의 의의: 면역검사는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질병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감염인에 대한 치료제 투여시기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됨

나. HIV-1 RNA 정량검사

- HIV-1 RNA 정량검사의 개요
 - HIV-1 RNA 정량검사는 HIV 감염인/AIDS 환자의 치료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AIDS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약제내성검사 및
 환자의 치료제 선택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
 - 2009년 7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해당검사 이관되어, 병원 직접 수행 또는 임상검사센터로 수탁 의뢰되어 검사 실시



기타 사업 관리

- 1. 기록물 관리
- 2. 검체 관리
-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2022 HIV/AIDS 관리지침

1 기록물 관리

- HIV 검사 기록물
 - 확인검사기관은 HIV 검사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소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기관 내부 규정이 있을 시 그 규정에 따름
 - ※ HIV 선별검사 및 확인검사 의뢰 시 검체번호 부여체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피검자의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음
 - ※ 2018년 5월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병원체확인)을 통한 HIV 확인검사의뢰 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 가급적 문서 생산보다는 시스템을 활용
- HIV 감염인 지원·관리 기록물
 - 기록물 생산 시 감염인 번호 이외의 정보는 담지 않으며, 추가로 성별·생년 월일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붙임파일(암호화)에 작성하고 기록물은 비공개 6호로 관리(예: 진료비 후불 협조 관련 등)
 - 감염인 이사 등 관리 보건소 변경 사유 발생 시 보관중인 대외비 처리방안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개정으로 2017.2.22. 이후 생산한 대외비(비공개 대상 정보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는 각급 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2017.2.21.이전 까지 생산된 대외비는 개정 전과 같이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따라서, 'HIV 양성자 통보 및 관리'는 2014년까지 생산된 대외비 문서이므로,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출지 보건소는 보관중인 대외비 기록물을 전입지 보건소로 발송함
 - 대외비 기록물 수·발신 사항은 '대외비 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유출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 대외비 기록물 발송·접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자치법규에 따름. 또는 아래 예시 참고함

[예시] 비밀 기록물 발송:접수 방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참고)

- 비밀의 접수·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함
-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
- 이중 봉투로 포장(「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 사용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접수증의 자르는 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직접 교부
-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
-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
- 대외비로 관리중인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 보관 중인 관련 대외비 문서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최소 5년간 보존 후 파기
 - ※ 기존에 생산된 대외비는 지속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되어야하고, 2015.1.1. 이후로 HIV 관련 문서에 대한 대외비는 생산하지 않음

2 \ 검체 관리

- 확인검사기관(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검사가 끝난 검체의 경우 시험결과 통보 후
 - 음성검체는「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제7조에 따라 처리(2020.9.12. 시행)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 양성 및 미결정 잔여 검체는 확인검사기관에서 영하 70℃ 이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검사실적 월별보고와 함께 질병관리청으로 일괄 송부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 ◎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분기별 교부금을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
- ◎ 부정수급 대상자의 화수
 -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HIV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 지원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HIV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HIV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VII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 안내

- 1. 민간보조사업 안내
-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 3. 사업운영 관련 법규 및 예산 관련 사항
- 4. 예산 항목별 설명
- 5. 사업 인력 관련 사항

2022 HIV/AIDS 관리지침

민간보조사업 안내

가, 에이즈 예방교육

- (목적) 에이즈 예방교육의 주요 대상인 10~30대의 올바른 에이즈 예방 지식 습득 및 인식 개선
-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군인, 의경, 중고대학생, 보호관찰 성인 및 기타 일반인 등
- ◎ (일시) 연중
- ◎ (교육방법) 강사교육(PPT 활용), 온라인 교육 / 50분(기관 사정에 따라 조절가능)
- (교육내용) HIV와 에이즈의 정의, 국내 감염현황, 감염 경로 및 감염 조건, 예방과 치료법, 검사 및 상담안내, 편견차별 해소, 성매개감염병 예방 등

나. 노인 대상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 (목적) 노인 성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매개감염병으로부터 개인 보호 및 타인으로 감염 방지, 안전한 노인 성생활로 노인 삶의 질 향상
- ◎ (대상)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건강교실, 지방축제 등의 65세 이상 어르신
- ◎ (일시) 연중
- ◎ (교육방법) 강사교육, 온라인 교육, 예방극 활용 / 50분(기관 사정에 따라 조절가능)
- ◎ (교육내용) 노년의 성, 성매개감염병(성병), 건강한 노년의 성

다.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

-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를 변화시키며, 사회적 지원 분위기 확산 및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캠페인 활동
- (대상) 전국민
- ◎ (일시) 연중
- ◎ (행사장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교 축제, 전국 유흥업소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전국 축제 현장 등
- ◎ (내용) 에이즈 바로알기 O/X 퀴즈 등

라. 청소년 에이즈 예방 뮤지컬 공연

- (목적) 취약계층의 청소년 관련 학교와 학교 밖(특성화고등학교, 소년원, 쉼터,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통해 청소년 에이즈 감염 확산을 줄이고자 함
- ◎ (대상) 전국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 ◎ (일시) 연중
- ◎ (행사장소) 공연을 할 수 있는 학교 강당 및 공연장
- ◎ (내용)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뮤지컬'

마. 취약계층 홍보물 지원사업(무료 콘돔 및 윤활 젤 보급)

- (목적) 콘돔 및 윤활 젤을 동성애자와 시·도 보건소에 보급하여 배포된 콘돔 사용률을 높이고,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 ◎ (대상) 동성애자 관련 업소, 시·도 256개 보건소
- ◎ (일시) 연중
- (지원내용) 보건소용 콘돔은 전국 유흥업소 중심 관할 보건소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대상자 관할 거점보건소 중심으로 우선 배포되며, 동성애자 콘돔 및 윤활젤은 패키지 제품으로 구성, 현장 및 비치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함

바. 급성기 간병지원사업

- (목적) 건강 악화로 입원·치료중인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지원하여 입원중인 감염인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
- ◉ (대상)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 (내용)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교육을 수료한 간병인을 파견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기 서비스 제공

사. 간병비 지원사업

- (목적)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에이즈 환자의 간병비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전문 요양보호사 및 요양 전문기관의 홍보 실시로 에이즈에 대한 이해와 지지 촉구
- ◎ (대상)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장기요양환자
- (내용)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에이즈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비 지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비 지원

아. 재가복지사업

- (목적)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HIV 감염인의 사회통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대상) 취약계층 재가 HIV 감염인 가정
- ◎ (장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 (내용) 반찬 및 생필품 지원, 청소 및 위생관리 지원, 병원동행, 행정지원, 안부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응급지원

자. 지원센터운영사업

- (목적)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HIV 감염인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대상) HIV 감염인
-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 (장소) 감염인 지원센터
- ◎ (내용) 내방상담, 프로그램·행정 지원

차. HIV 감염인 쉼터 운영사업

〈부산〉

- (목적) 감염인 쉼터는 소외받는 HIV 감염인에게 숙식 및 편안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료 지원서비스 및 정서 지지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체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대상) HIV 감염인
- (내용) 감염인 쉼터는 건강상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립하려고 하는 HIV 감염인에게 숙식 및 편안한 휴식 장소를 제공
 - 자립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주거, 식사, 가족과의 관계 회복 등의 분야에서 퇴소 후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함
 -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리정서 상담프로그램,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입소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 및 회복

〈대구〉

- (목적) 입원 치료 후 갓 퇴원한 환자 및 단기 주거가 필요한 HIV 감염인에게 숙식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활 유도
- ◎ (대상) 단기 주거시설이 필요한 HIV 감염인
- ◎ (내용) 빅핸즈 사회적 기업 참여로 수입을 창출하여 주거 안정 도움
 - 퇴원 후 건강 회복 기능, 거소 지원 및 심리 안정 치료 프로그램, 가족 관계 형성 프로그램 실시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HIV 감염인 보호 및 전문 프로그램 실시

카, 에이즈상담센터 운영사업

- (목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에이즈 예방 역량 강화
 -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AIDS 환자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에이즈 예방 및 HIV 감염인 보호·지원에 기여
- ◎ (대상) 전국민
- ◎ (상담시간) 월 ~ 금 09:00 ~ 18:00
- (내용) 내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해 전문 심리 상담사가 에이즈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및 상담 제공
- ◎ (상담방법)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개인상담, 카카오톡상담, 네이버지식인상담
- ◎ (전화상담) 1599-8105

타. 동성애자 에이즈상담센터 운영사업

- (목적) 감염 취약군인 남성 동성애자(MSM)와 성 전환자(MtoF)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 상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에 기여함
- ◎ (대상) 남성 동성애자(MSM) 및 성 전환자(MtoF)
- ◎ (일시) 연중
- ◎ (장소) 서울(종로/이태원)·부산 iSHAP 센터 및 전국 게이바 밀집 지역
- ◎ (내용)
 - 에이즈 상담(전화·인터넷·방문)
 - 전국 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콘돔·윤활 젤 등) 배포
 - 에이즈 예방 동료 교육 실시
 - 에이즈(신속 진단·자가 진단) 및 종합 성병 검진

파. 외국인 HIV 예방지원센터 운영사업

-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상담·검진 제공 및 취약 감염 외국인들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 상담 제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며, 예방행동으로 감염예방 확산을 억제함
- ◎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 ◎ (일시) 연중
- ◎ (장소) 서울(길음/이태원), 경기(안산), 부산(범일)
- ◎ (내용)
 - 전국 캠페인, 커뮤니티 및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실시
 - 에이즈(신속 진단·자가 진단) 및 성병검사 제공: 일요일 또는 토요일 실시되며,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무료 및 익명 검사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국내에서 발견된 감염인(OECD 비가입국 출신 및 건강 보험 혜택받지 못하는 자) 대상 치료비 지워 및 상담 지원

하. 취약계층 감염인 지원사업

- (목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감염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 (대상) 취약계층 감염인(노숙 및 무연고, 임산부, 외국인 등) 및 교정시설 입· 출소 감염인
- ◎ (일시) 연중
- ◎ (내용)
 - 취약계층 감염인 지원, 교정시설 입소자 지원, 감염인 심리상담 지원, 외부 자원 연계 등

가.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 (목적) 감염인에게 복약 및 심리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유지·증진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행동변화를 통해 전파 예방
- ◎ (대상)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감염인 및 그 가족, 입원 감염인
- ◎ (내용)
 - HIV 감염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를 배치하여 대면, 전화, 온라인 상담을 제공
 - HIV 감염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감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병상담,
 복약상담, 생활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
 - 개인별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에이즈 유관기관 및 각 지역 사회자원 등을 연계
- ◎ (상담시간) 의료기관 근무시간에 따름

2 사업 수행 관련 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및 선정방법

- ◎ 사업수행기관
 - 민간단체 중「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으로서 에이즈 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법인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동 연구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의 경우 감염내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산학협력단)
- 사업기관의 선정
 - (보조사업자 공모) 질병관리청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공고문 게시하되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부여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상기 규정 이외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아래 참조)
- 경쟁적 수행기관(단체)이 없는 단일 사업기관인 경우
- 매년 공모·평가를 진행하기보다 장기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단순 행사성 사업이거나 해당기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용이 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력 등 특이사항을 고려할 때 공모가 적절치 않은 경우 ※ 종교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혜자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를 주목적으로 할 수 없음
- ◎ 사업기관의 교체 또는 지정 제외
 - 다음과 같은 사유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는 사업기관을 교체 또는 지정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이 지침을 현저히 위배하여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 사업성과 평가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기관의 사업 중단의지 표명 및 사업수행의 적극성이 결여될 경우
 - 질병관리청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질병 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제출함

나.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 ◎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는 좌철 본드로 제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서술형을 피하고 개조 식으로 작성(임, 음으로 끝나도록)하되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함(그림이나 도표 이용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 ※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질병관리청및 보건복지부의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 ※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보조사업자는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사업기관은 공동수행단체(지회, 지부 등)와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사업의 운영

- 사업 운영매뉴얼의 작성·적용
 - 사업자는 해당 사업별 운영매뉴얼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유영매뉴얼'에 따름
 -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공동수행단체(지회, 지부 등) 사업인력에게 교육시키고 이를 적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 운영매뉴얼의 보완 등
 -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새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 논의하여 결정하며, 사업기관은 필요 시 그 내용을 운영매뉴얼에 반영·보완하여야 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사업내역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 보조사업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보조세목 간의 예산조정
 - ※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 후 '사업계획변경 요청서'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 집행함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 단, 사업인력 변동시에는 별도로 승인절차 필요 없이 월보고시 보고하며, 책임연구원급 변동인 경우에는 승인 필요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라.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서면점검〉

- 월별 실적점검
 -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적 및 계획과 예산사용내역을 월별 양식에 따라 질병
 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함
 - 보고 시기: 매달 5일까지
 - 주요 보고 내용: 사업별 월별 실적 및 익월계획, 예산집행, 사업인력 교체 등 ※ 민원발생, 감사나 국회관련 사항, 업무추진 상 중요한 문제발생 시에는 즉시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에 보고함
- ◎ 반기별 실적 및 집행 점검
 - 기관별 자가점검(Self-check)

- 사업운영 실태 및 예산사용 내역의 적절성 점검
- 상반기 점검결과는 6월 10일까지, 하반기 점검결과는 11월 10일까지 제출
- ◎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 부정징후 보조사업 점검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는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점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조치결과(소명자료·증빙서류 등)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

〈현장점검〉

- ◎ 점검기간: 5~6월, 10~11월, 필요 시 수시
- 점검내용: 사업운영 실태, 예산사용 내역 점검, 물품 구비현황 및 기록물 보관 상태 등
- 기타: 사업운영 및 보조금 집행 점검 시 관련 서류(사업 추진 관련 자료 일체, 예산 집행 및 관리 대장 등)를 준비하여 현장점검에 응하여야 함

〈기타 모니터링·평가·감사〉

- 상기 외 사업운영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등의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선정, 중간, 최종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실적 및 성과평가〉
- 중간평가: 7~8월 경 실시
- 최종평가: 11~12월 경 실시
 - 사업평가는 보고서 검토를 통한 서면점검 혹은 대면점검(실적보고회)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 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음 〈결과 환류〉
- 보조사업자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검토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
- 질병관리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의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마. 정보 보호

- ◎ 사업관련 정보 보호
 - 사업기관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외에 타기관의 정보요구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염인 개인정보 등 대외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장(열쇠는 분리하여 보관)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의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서 비밀의 유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관리
 - (원칙) 사업기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을 금지함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시 법령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예] 금융실명거래,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등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 감염인 정보 보호
 - 사업기관은 질병명, 인적사항 등이 기록된 문서(입소 관련서류 등)를 취급하는
 등 감염인 관련 정보를 다루거나 감염인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업인력에
 대하여 감염인 정보보호 및 비밀누설금지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지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서약서를 매년 받아 해당 기관에서 보관
 - ※ 단, 비영어권 국가 감염인의 언어 통역을 위해 유관기관 또는 통역사의 협조로 유선 통역을 하는 경우 서약서를 받지 않아도 됨

비밀누설 관련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및 제26조

- 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바. 결과 및 산출물 관련사항

- 사업기관은 사업내용의 이용 및 이를 적용한 국내·외 학회발표 등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의 산출물(보고서, 책자, 리플릿,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은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의 감수를 거쳐야 하며, 발행기관을 기재할 시는 질병관리청과 사업기관명을 동시에 기재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제작된 것임을 명시함

예: 본 책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 ※ 타 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산출물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공동기금으로 처리하되, 주관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후원실적 및 사용계획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에 보고하도록 함
- ◉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질병관리청과 사업기관에 있음

사. 연구용역사업

-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기관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 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연구용역 발주계획이 있을 경우 동 연구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내에 명시 하여야 함

- 용역 업체는 일반경쟁(공모)을 통한 선정을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참조)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내용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방향을 대폭 수정하여 그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전문가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자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 당위성이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논의 되어야 함
- 연구용역사업 완료 시 민간보조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수행자로부터 최종보고서,
 연구수행 집행실적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에 해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관은 차기년도 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를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함
-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국회 요구 자료제출 및 대응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그 내용을 보고하여 대응방향 및 제출범위에 대하여 협의함
 - ※ 유선으로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함

자. 언론보도 및 대응

1) 언론보도

- ◎ 보도계획 및 보도자료 생산
 - 각종 연구결과보고서, 통계, 행사 등과 관련하여 사업기관에서 생산되어 언론에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내용을 전달·보고함

- 보도계획 작성예시

보 도 자 료 명	배포일	엠바고	단체명	언론매체
 세계 에이즈의 날 종합행사 개최 보도 일시·장소: 2022.00.00. 10:00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실(20층) 참석: ○○○○○○ 관계자 등 보도내용: 제0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11.29()	12.1() 조간	00	00신문사 / 00방송사

-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배포 여부 및 보도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후 배포함

2) 언론대응

- ◎ 언론 등 인터뷰 대응 시 관련 사항 보고
 - 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 발표, 주요사업의 보도 자료 배포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배포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 혐의함

| 언론대응사항 보고 작성 예시 |

- 인터뷰 대응:000
- 대응방법
 - ※ 실제 업무내용과 혼선이 없도록 용어 및 표현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 및 검토한 후 실시
- 보고대성
- 언론과의 인터뷰(기자로부터 업무관련 전화 응대한 내용도 포함) 등
- 언론으로부터 사실 확인 내용 등
- 보고 기한
 - 인터뷰 시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보고한 후 실시
 - 인터뷰 실시 후 결과 보고
-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뷰 선 조치 후 보고(즉시보고)
- 보고내용

구분	일시	대 응 자		내 용	언론기관	언론배포	사후조치	
		소속	직급	성명	(결 과)	(매체)	일정	필요사항
인터뷰								

※ 내용 란의 결과는 인터뷰 실시 후 그 내용을 작성

차. 사업별 관리사항

1) 교육사업관리

가) 국내 교육사업

- 사전협의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국내 교육사업 계획 수립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 교육 강사 선정 및 관리
 - 교육 강사는 교육의 대상 및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 섭외를 우선 하여야 함
 - 강의안 및 관련 자료를 보관·활용하여야 함
- ◎ 평가
 - 교육 실시 후에는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교육 대상자의 업무활용도 등에 대해 사후평가 실시를 권고함
- ◎ 보고사항
 -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등 교육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예시〉

일자	교육명	대상자	주요내용	주관단체	비고
		○ 인원수 ○ 소속	교육강사목적교육내용		

※ 첨부서류: 교육 진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 교육자료라 함은 집합교육에 사용되었던 자료(책자형태) 및 특정 대상자(보건소 담당자, 간호사, 일반인 등)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USB, CD, DVD, 책자 등)를 말함
- ◎ 사전협의
 - 국내 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고, 연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완성물을 제출하여야 함

- ◎ 자료 제작
 -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최종안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감수를 받아 제작될 수 있도록 함
- ◎ 자료 배포
 - 교육자료 사용, 배포 등에 대한 자료(관련 문서 등)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홍보사업관리

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 사전협의
 - 홍보콘텐츠 제작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이 되는 콘텐츠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며 최종안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감수를 받아 제작하도록 함
- ◎ 협조사항
 - 시·도 및 보건소 등에서 홍보물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작된 홍보자료는 중간, 최종보고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제출토록 함
- ◎ 홍보자료의 배포
 - 배포된 홍보물에 대한 인수증 등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홍보물 배포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와 사전 혐의하도록 함
 - 최종 원고는 최소 발행 5일전까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검토를 받아야 함

나) 콘돔 무료보급

- ◎ 배포대상
 - 콘돔구매예산, 요구량 등의 변화에 따른 여건을 고려하여 감염인 및 감염 취약군(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우선적으로 배포함
- 배포계획 수립
 - 콘돔배포 사업수행 단체는 필요한 콘돔요구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함

●●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 ◎ 추가배포 요구
 - 교육 및 행사 시 필요한 콘돔은 콘돔 무료보급사업을 주관하는 해당단체 및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문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함

다) 미디어 홍보

- ◎ 사전협의
 - 미디어 홍보(지상파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광고, 인터넷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협의 후 관련단체, 감염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홍보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에이즈 관련 단체 및 타 기관 등에서 광고소스 활용 시 반드시 정부로고및 질병관리청 명칭 활용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라) 관련 행사 및 주요 캠페인

- ◎ 사전협의
 -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관련 국내·외 행사, 기업연계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자할 경우, 행사의 목적 등이 명확하고 정책방향과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하여 연초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보고함
- ◎ 보고사항
 - 행사일정, 행사내용, 참석대상(인원수 등) 등을 보고하여야 함

〈예시〉

일 자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주 관 단 체	비고
		○ 목적 ○ 참석대상(주요 참석인사) ○ 주요 논제		

※ 첨부서류: 행사 진행에 대한 세부계획서, 결과보고서

3)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관리

가) 상담실의 설치

- 본 사업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은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상담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함
 - 상담실이 미확보된 의료기관은 문서를 통해 상담실 설치완료시점을 확약하여야 함
- ◎ 상담실 설치의 기본 조건
 - 감염인의 비밀보장 및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 탁자의 배치 시 내담자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함
 - 상담실의 출입문 개폐 시 내담자의 노출이 우려될 때는 파티션, 커튼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지함
 -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를 위하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상담자 보호 및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상담자 측에 반드시 응급벨 (Emergency call)을 설치함
- ◎ 상담실 기본 집기비품 목록(각 1대)

│ 예시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집기비품목록 │

[기본 집기비품 목록]

이동전화기, 이동디스크, 컴퓨터^{**} 상담테이블, 의자 및 책꽂이,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 보관함 문서세단기, 복합기(팩스, 프린터기 등), 소형냉장고, 전기주전자 또는 커피 메이커 * 필요시 구입가능: 기습기, 공기청정기, 혈압계 및 체온계, 파티션커튼

※ 인력 1인당 1대 구입가능

나) 직무내용

- 상담(전화, 대면, 입원, 온라인 등) 및 교육수행, 상담자료의 기록 및 분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시, 현장의 문제파악 및 해결점 모색 등
 - ※ 교육 또한 직무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임하도록 함
- ◎ 'HASNet-의료기관상담관리' 등록 및 활용
 - 필수 입력 값: 병원등록번호, 환자구분, 성별, 생년월일, 상담여부, 의료보장 종류, 내외국인, 검사결과 관리

4) 회의 및 출장 관리

가) 회의 관리

- ◎ 계획 보고
 - 회의 추진계획(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안건 등 포함)을 수립, 사업 수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긴급한 회의(혹은 교육)의 경우 계획보고 생략 가능
- ◎ 결과 보고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결과, 향후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출장 관리

- ◎ 계획 보고
 - (국내) 출장 전 출장계획(출장명, 일시, 장소, 출장자, 목적, 주요 확인사항 등 포함)을 수립,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긴급한 국내 출장의 경우 계획보고 생략 가능
 - (국외) 출장 전 출장계획(출장명, 일시, 장소, 출장자, 목적, 일시별 계획, 소요 예산, 출장자별 업무분장 등 포함)을 수립, 사업수행기관장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결과 보고
 - (국내)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결과, 향후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외)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질병 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 관리범위: 2016.10.5. 이후 공무출장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출장은 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와 국외를 포함
- ◎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 ◎ 활용방법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함

◎ 보고사항

- (출장 계획 시)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를 작성, 출장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귀국 14일 이내) 보조사업자는 출장자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공 마일리지 신고서'에 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질병관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매반기)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인력의 개인별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유 현황'을 매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 사업운영 관련 법규 및 예산 관련 사항

가. 사업운영관련 법규

- ◎ 이 시업은 그 수행과 예산의 집행·정산에 대한 시항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기획재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질병관리청훈령)
 -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질병관리청훈령)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6호)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5호)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4호)

나. 예산의 집행 및 정산

1) 보조금 집행의 원칙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지도에 따름
-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확장 등을 위하여 재투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익액과 용도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이즈 관리과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함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 시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뿐만 아니라 교부금에 대한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3) 보조금의 교부신청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요청 시 통보받은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예산교부서류
 - 교부신청 문서
 - ○○○ 년 ○분기 국민건강기금 ㅇㅇㅇㅇ비(사업명) 교부신청서
 - 입금은행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해당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 입금은행 계좌번호, 해당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은 매 회계연도 최초 교부 시 1회만 제출 (단,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서류 제출)
- 산출내역서 작성은 사업계획에 근거하되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고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
-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산(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함

4) 보조금 교부방법

- ◎ 보조사업 통장에 직접교부하지 않고,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는 형태로 교부
-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2회부터의 교부는 전 회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

5) 보조금의 집행·이월·정산·중요재산 관리·정보공시·회계감사·예산변경

● 사업운영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실시함

다. 영수증 및 증빙서류

1) 영수증 관리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1만원 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함

2) 증빙서류

-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출요청서에 결재자란이 포함되어야 함
 - ※ 예시: 입금내역, 해당 문서,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4 예산 항목별 설명

비목	세목		산정기준
	보수 (01)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규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기타직보수 (02)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계약직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인	상용임금 (03)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건 비		보수, 수당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110)	일용임금	간병수당	· 간병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04)	검진수당	· 검진상담소 등 검진관련 인력에 대한 수당
		캠페인(교육) 요원 등 수당	· 캠페인(교육) 관련, 전산입력 등 비정기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집행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기타인건비 (05)	기타인건비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일반 수용비 (21)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물품구입의 비용 등
		인쇄비 및 유인비	· 교육자료(소책자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안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명패, 감사패 등의 제작비
전 명 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해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품 구입비
(210)	(01)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비품수선비	· 가전제품수리비, 정수기필터교체,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품 비품의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집행, 정산내용 등에 대한 전문회계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등

비목	세목		산정기준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속가원고측량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공고료 및 광고료	· TV·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행사지원비	· 체류자의 야유회, 영화관람 등 문화여가활동비와 심리상담, 자활지원 등 감염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 설문 인센티브 등
		국내교육비	· 학회 및 워크샵 등 참석에 따른 등록비(참석비)
	공공요금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비용
	및 제세 (02)	제세	· 법령에 의해 지불 부담하는 제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피복비 (03)	피복비	· 의료기관감염인상담 및 검진, 간병시 착용하는 가운 등에 대한 구입비
	급량비 (04)	급량비	· 체류자 주식 및 부식 등 식재료 구입비 및 식생활 관련 잡비 일체
	특근매식비 (05)	특근매식비	· 검진상담소 검진시 특근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매식비
	임차료 (07)	임차료	· 교육 및 행사 등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유류비 (08)	유류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차량비 (10)	차량비	·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비 및 정비비, 차량 소모품구입비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4)	일반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외부에 의뢰하는 정도관리비 및 검사비

비목	세목		산정기준		
	관리용역비 (15)	관리용역비	· 전산운영 위탁 및 장비유지관리 용역비 등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주거지원비	· 노숙 감염인 중 적정 대상자를 선정(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선정기준 참조)하여 주거지 확보 지원		
	기타운영비 (16)	감염인지원비	·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물품지원비, 외국인환자 지원비, 장기요양 입원 관련 간병비 및 감염관리비 등		
	(10)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 사업수행 상 필요하거나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의약품,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사용된 의료소모품 등 폐기물 처리비 등		
여비	국내여비 (01)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220)	국외여비 (02)	국외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추진비	·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연구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비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하며, 사무용 책상, 컴퓨터, 핸드폰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집기비품비 일체		

1 인건비 (110)

가. 적용범위

- 1) 보수 (110-01)
- ◎ 사업수행 정규인력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 2) 기타직보수 (110-02)
- ◎ 사업수행 전문 계약직 인력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 3) 상용임금 (110-03)
- ◎ 사업수행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 4) 일용임금 (110-04)
- ◎ 사업수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 ◎ 간병수당간병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 ◎ 검진수당: 검진상담소 검진관련 인력(의사, 검진인력 등)에 대한 수당
- 캠페인(교육)요원 등 수당: 캠페인(교육) 관련, 전산입력 등 비정기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집행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5) 기타인건비 (110-05)
-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나. 지급기준

- ◎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 자료〉정책게시판)에 의함
 -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기준은 위의 관계법령 및 지급근거에 의하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수당포함)
- 인건비는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를 거쳐 결정함(단, 초과분을 사업기관 자체 예 산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캠페인(교육) 관련 요원 수당 지급 기준: 1시간 25,000원
 - ※ 1시간 초과 시 5,000원 추가 지급, 5시간에 한함(최대 45,000원)
 - ※ 진행요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과도한 업무추진비(식비, 간식비) 집행을 최대한 자제함
- ◎ (기타인건비) 교육, 특강 강사 및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H 卫 •대학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1시간 400.000원 특별강의 기관장이 인정한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이에 (||)초과1시간 200.000원 준하는 인사로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자 (매시간) 원고료.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200.000원 1시간 여비 등 일반강의 인사 부대경비 초과1시간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100,000원 포함 (매시간)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1시간 120.000원 일반강의 • 일반강의(1) 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60,000원 (매시간)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

- 상향조정하여 지급 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하여 집행하고, 사업수행책임자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의 강의시간에 미포함)
- 대학 및 의료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비기금 인력에 대해 강사료 지급 가능함

●●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 질병관리청 직원 및 사업 수행기관의 소속직원(국고인력)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이 하로 연가 개인당 6회내에서 지급가능
 -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 이상을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기관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강사 1인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장시간의 강의·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도 강사수당은 1회를 기준으로 산출함

〈원고료 지급 기준 및 대상〉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A4 15장	•기준면수 초과 시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A4 1면 7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상향조정하여 지급 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하여 집행하고, 사업수행책임자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구분	회의참석수당 자문수당		평가수당	
내용	회의 참석 외부 자문		심사 및 평가	
지급 기준	최초 2시간 15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1시간 5만원	기본 1개 과제 15만원 추가 과제당 3만원	
서면	10만원	10만원	기본 1개 과제 7만원	
진행		을 동일 일에 요청할 경우 추가 지급	추가 과제당 1만원	
지급 상한	20만원/1일	20만원	30만원 (서면은 15만원)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기준 및 대상〉

-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부득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경우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함 ※ 예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
-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음(단, 해당 교통비는 여비에서 처리함)
- 국가에이즈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질병관리청), 회의주관단체
 소속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사업운영팀의 자체회의 시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서면평가 후 공개평가 시 동일 건으로 동일 수령인에 대하여 이중지급 할수 없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액이 과세최소액 이상인 경우 원천 징수 ※ 125천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8%. 주민세 0.8% 공제

다. 증빙서류

-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등
 - 계좌이체내역, 보조사업 참여 인원의 현황표,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타인건비) 지출요청서, 관련 공문(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첨부), 회의록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방명록, 원고자료 등

2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

가. 적용범위

1) 사무용품 구입비

- ◎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용지, 사무용품 등 소요되는 비용 등
 -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자료, 회의자료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자료(소책자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 인쇄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명함 등의 인쇄비용
 -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의 경우
 - 사업내용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배포하는 자료는 공동개발하고 일괄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각 기관별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자료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집행할 수 있음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사업안내 및 행사 홍보물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간판, 기념품,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품 물품 구입비

- ◎ 사업수행을 위해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품 구입 비용
 - ※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며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에 소용되는 비용

6) 비품수선비

- ◎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무용품 수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가전제품수리비, 정수기필터교체,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품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및 물품 운반 시 소요되는 비용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시설유지관리비 사용료
 -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집행, 정산내용 등에 대한 전문회계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된 회의, 자문, 평가 등 업무위탁대가에 소요되는 비용
 - 속기, 원고측량, 전산입력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기타인건비 참조)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행사지원비

● 야유회, 영화관람 등 문화여가활동비와 심리상담 등 감염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 설문 인세티브 등

11) 국내교육비

◎ 에이즈 관련 학회 및 워크샵 등 참석에 따른 등록비, 참석비 등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타인건비 지급기준 참조
- (행사지원비) 프로그램 진행비는 해당 전문가의 자격검증,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빈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

다. 증빙서류

- ◎ (공통)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
 -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평가 함
- ◎ (인쇄비 및 유인비) 견적서, 물품사양서 등
-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견적서 등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내용 등 포함), 방명록(붙임2) 등
- (행사지원비) 설문인센티브를 위해 구입한 상품권 증빙은 감염인 비밀보장을 위해 해당 영수증으로 가능
- ◎ (국내교육비) 학회 및 워크샵 등 등록비(참가비) 증빙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

3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가. 적용범위

- ◎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 이동전화사용료의 경우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감염인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한함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 납기 내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 ◎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이중청구 불가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납부청구서(영수증) 등
 - ※ 이동전화 기기값은 전화료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하며, 해당 이동전화는 유형자산으로 관리함

4 운영비-피복비 (210-03)

가. 적용범위

◎ 의료기관감염인상담 및 검진, 간병시 착용하는 가운 등에 대한 구입비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견적서, 관련 문서 등

운영비-급량비 (210-04)

가. 적용범위

- ◎ 식비 : 쉼터 체류자의 주식 및 부식 등 식재료 구입비
- 주방잡비 등: 세제, 주방도구, 침구 및 청소도구 등 식비를 제외한 식생활 관련 잡비 일체

나. 지급기준

- ◎ 쉼터 체류자 식비 및 주방잡비 1인당 1식 3,500원
 - ※ 가급적 외식이나 배달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지양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감염인을 위한 균형 있는 식사(영양식 등)를 제공할 것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관련 문서 등

6 운영비-특근매식비 (210-05)

가. 적용범위

◎ 검진상담소 검진시 특근하는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매식비

나. 지급기준

- ◎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지급기준: 1인당 7,000원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방명록, 관련 문서 등

7 운영비-임차료 (210-07)

가. 적용범위

- ◎ 교육 및 행사 진행시 소요되는 장소 및 장비 대여비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임차계약서, 관련 문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8 운영비-유류비 (210-08)

가. 적용범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관련 문서 등

9

운영비-시설장비 유지비 (210-09)

가. 적용범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관련 문서 등
- 구매 등 관련 2개 이상 견적서, 물품사양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등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 항목이므로 상기 비목으로는 집행 불가

10 운영비-차량비 (210-10)

가. 적용범위

- ◎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 재가복지사업, 감염인 쉼터 사업 시 이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금은 본 기금사업비에서 지급 불가함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견적서, 관련 문서 등
- ◎ 차량 운행일지(유류 주유 일시 및 운행 거리 등 포함(붙임 4))

11 운영비-복리후생비 (210-12)

가.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금)
 - ※ 단, 내부 규정으로 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에서 집행 가능

나. 지급기준

◎ 은행 계좌 입금을 워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인건비 지급 관련 문서 등

12 운영비-일반용역비 (210-14)

가. 적용범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외부에 의뢰하는 정도관리비 및 검사비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견적서, 관련 문서 등

13 운영비-관리용역비 (210-15)

가. 적용범위

◎ 전산운영 위탁 및 장비유지관리 용역비 등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견적서, 관련 문서 등

14 운영비-기타운영비 (210-16)

가. 적용범위

1) 주거지워비

- ◎ 노숙 감염인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 적정 대상자를 선정(사업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선정기준 참조)

2) 감염인지원비

- ◎ 물품지원비: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 대한 지원물품 구입비
 -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물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감염인/환자 지원비: 의료보장권 외에 있는 외국인 감염인 중 진료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지원비, 건강보험료 등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이외의 발생분
 - 건강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입국 후 지불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정해진 한도(안)에서 지원)
- ◎ 장기요양시설 입원과 관련된 간병비 및 감염관리비 등
 - 장기요양시설 입원 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게는 간병비 일부를 지원

3) 의약품,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 의약품: 시업수행 상 필요하거나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응급상비약품 등 구입비용 ※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 의약품만을 구비함
- ◎ 의료소모품 : 보험 비급여분 물품 중 알코올, 솜 등 일회성 의약품
- ◎ 의료기구 : 혈압계, 치과치료 등 기본의료기구 구입비용
- 진단용품 및 도구:검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검사키트, safe mat 등 검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용
- ◎ 검진상담소 운영 시 사용된 의료소모품 등 폐기물 처리비용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주거지원비인 쪽방촌, 고시원 등의 최초 월납금을 대리 수납하되 계좌입금을 워칙으로 함
- ◎ 간병비 및 감염관리비 지급 기준
 - 간병비: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매월 일정금액
 - 감염관리비: 환자 입원 시 장기요양시설에 매월 일정금액※ 사업주관부서와 혐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정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 명세서, 관련 문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대상자 선정근거) 등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 ◎ (주거지원비) 수령증 등
- ◎ (감염인지원비) 진료비수납 영수증, 수령증 등
- ◎ (의약품,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물품사양서, 견적서 등

15 여비 (220)

가. 적용범위

-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 단, 자체 여비규정이 마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출하되 「공무원 여비규정」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 (220-01, 국내여비) 국내출장의 경우, 이에 대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공무워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하여야 함
 - 서울·수도권(지하철 연계지역)외의 국내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의함

-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의 경우, 이에 대한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하여야 함
 -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국내여비-근무지내
 - 출장시간(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함
 - 위 지급액 외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하여야 함
 - 출장여비 대신 교통비를 지급 하는 경우 출장 일시, 장소(사업기관 기준으로 출장지까지 거리), 출장목적, 소요금액 등을 명시한 시내출장비 (교통비)사용대장(붙임 3) 또는 근무상황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 단, 교통비는 최대 2만원을 넘지 않아야 됨
- ◎ 국내여비-근무지외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총장,이사장 이상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총장,이사장 미만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한함	20,000

- 관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하고,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함
- 운임비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를 기준(택시, 전철, 시내버스 지급 불가)으로 함 ※ 단, 일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일비범위 안에서 택시, 전철, 시내버스 영수증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

- 부득이 하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함
 - 단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제주도 지역 이외 운임을 항공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 공무형편상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료비, 통행료를 지급 할 수 있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
- 기타 위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행할 경우 총장, 이사장 이상 결재를 득하는 경우
- ·· 통행료: 실비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지급)
- · · 자동차연료비: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 하여 자동차 연료비를 지급

〈연료비 지급기준〉 출장거리×유가÷연비 구분 출장거리 유가 연비(km/l) 산출식 휘발유 13.30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유가 출장거리×유가÷ 14.30 경유 거리계산 방법 활용 (opinet.co.kr) 연비 9.77 LPG

-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음
- 은임과 숙박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법인카드를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음(관련 영수증 첨부)
- 근무지외 출장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일자에 다른 목적으로 근무지내 출장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근무지외 출장여비만 지급함

-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여비에 준하는 수당)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함
 - ※ 해당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를 수 있으나, 위 내용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여비

- 국제학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 시 참석비나 등록비 납부를 요할 경우
 공무국외 여행계획서에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하여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함
 -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이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단순정보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일 경우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이용하고 최대한 국외출장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함
- 국외출장 중 발생되는 국내외 통신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으며, 일비에서 지급(충당) 사용함
- 출장 명령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조기 귀국 또는 지연출국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 차액을 반납하여야 함
- 국외 출장 일정에 포함된 국내 운임 여비는 지급할 수 없음
- 국외 출장 여비 중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일비 및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함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기준표 참고
-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공무여행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제출 보고함
 - ※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 참고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관련 문서(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등
- (국내여비) 유류비사용대장(붙임 4),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붙임 5), 시내출장비 (교통비)사용대장(붙임 3), 운임비·숙박비 등 영수증(붙임 6), 자가차량 사유서, 근무지-출장지 운임거리, 유가기준자료(자가 이용시) 등
- (국외여비)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운임비·숙박비 영수증, 외환은행 환율조회 출력물(출장계획서 보고일 현금살 때 기준) 등

16 업무추진비 (240)

가. 적용범위

- ◎ (240-01 사업추진비)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워크숍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회의경비: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교육경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내담자 접대시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워크숍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숙박비, 식비)
 - ※ 행사진행 관련 사업주체 인력에 대한 숙박비, 식비는 여비에서 집행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회의 및 교육 등 경비의 집행 기준

[자문회의]	소 계	원
경비(다과비, 소모품비 등)	3,000원×인×회=	원
경비(식비)	20,000원×인×회=	원
[자체회의 및 일반교육]	소 계	원
경비(다과비, 소모품비 등)	3,000원×인×회=	원

※ 장소사용 등의 문제로 식비, 다과비가 초과될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와 협의 후 상향 가능하거나 식비와 다과비를 통합(23,000원)하여 식비로 사용 가능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무,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견적서, 방명록, 관련 문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17 연구개발비 (260)

가. 적용범위

● (260-01, 연구개발비)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비용

나. 지급기준

- ◎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의 집행에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집행의 근거 및 지침에 준하여야 함
 - 연구수행 집행경비 중 미집행 금액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관련 문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18 유형자산 (430)

가. 적용범위

- (430-01, 자산취득비)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하며,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집 기비품비 일체
 - ※ 건강증진기금으로 집기 및 비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감염인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이동전화기 구입시 기기값은 집기비품비 또는 요금제에 포함하여 분할납부 가능함
 - ※ 건강증진기금으로 구입·지원받은 물품에 대해서 폐기 및 반납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 과와 협의 후 처리함

나. 지급기준

◎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관련 공문, 지출요청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견적서, 물품사양서, 관련 문서(구매계획서) 등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5 \ 사업 인력 관련 사항

가. 인력의 관리

- ◎ 본 사업의 인력은 사업기관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상근직에 해당되는 인력은 업무수행 및 근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업 및 겸직을 금함
- 사업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관리하며, 예상되는 문제발생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나. 급여의 지급

- ◎ 사업비 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만을 지급하도록 함
- ◎ 급여는 사업인력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근거를 보관함

다. 퇴직금

- 퇴직금은 해당사업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반드시 사업종료시(매년)정산하여 개인퇴직연금을 운영하여야 함
- 1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업기관에서 보관했다 집행※ 차기년도 사업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시 해당 퇴직금은 재정산을 통해 국가에 반납

라. 인력의 교육

- 비밀유지의 의무를 설명하고(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보관함)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에 관한 노력 등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에이즈관련 정보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 1. 목 적
- 2. 시스템 명칭 및 주소
- 3. 기관별 기능
- 4. 사용자 매뉴얼

2022 HIV/AIDS 관리지침

1 목 적

가. 에이즈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신속성 향상

- ◎ 검사의 의뢰에서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 역학조사 지시 후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나. 감염인 지원업무 및 검사업무의 효율 향상

다.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 산출

◎ 전산화된 통계분석 시스템을 통한 에이즈 관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 산출 용이

라. 에이즈 관련 정보의 보안성 향상

◎ 완벽한 보안체계 구축을 통한 에이즈 관련 정보의 보안성 향상

2 시스템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HASNet(하스넷, HIV/AIDS Supporting Network System)

나. 주소: http://is.kdca.go.kr/

3 기관별 기능

가, 의료기관, 병무청, 혈액원

- 1) HIV 감염인 발견 신고
- 확인검사기관으로부터 '양성' 판정받은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 HASNet을 통해 신고

나. 보건소

- 1) HIV 확인검사 의뢰(권한: 검사관리)
- ◎ 선별검사 양성반응인 사람에 대한 확인검사 의뢰
- ◎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건에 대한 HIV 확인검사 의뢰(추적검사)
- 2) 감염인 지원(권한 : 환자관리)
- HIV 감염인 발견 신고·보고
- AIDS 환자 보고
- ◎ 익명관리 및 실명전환 보고
- ◎ 역학조사 결과 보고
- 감염인 상담 일지 기록·유지
- 감염인 전입·전출 보고
- ◎ 감염인 진료비 지급내역 보고
- ◎ 사망자 보고

다. 보건환경연구원

- ◎ 확인검사 의뢰 접수
- ◎ 확인검사 결과 통보
 - ※ 음성인 항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등록
- ◎ 질병관리청에 확인검사 의뢰 : 자체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인 검체에 한함

라. 시·도

- ◎ 보건소에서 감염인 지원을 통해 발생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
 - 역학조사
 - 실명전환 신청
 - 감염인 전입·전출
 - 감염인 진료비 지급내역
 - 사망자 보고
- 진료비를 시·도 보건(위생, 정책, 한방)과에서 지급하는 경우, HASNet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지급요청 건을 승인 후 지급

마.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

- ◎ 확인검사 결과 통보
- 확인검사 결과 값 등록·관리

바.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 확인검사 결과 양성 건에 대해 감염인 번호 부여
- ◎ 역학조사 지시 및 결과 관리
- ◎ 진료비 집행 내역 관리
-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
 - HIV 감염인 발견 신고·보고
 - AIDS 화자 보고
 - 실명전환 신청
 - 감염인 전입·전출
 - 사망자 보고

4 사용자 매뉴얼

- ※ 별지 부록 참고
- ※ 매뉴얼 내려받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HASNet > 자료실

IX

부록ㅣ

- 1. 별표 서식(1~9)
- 2. 참고 서식
- 청렴서약서
-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실적보고서
- 서약서
- 성과물 활용 신청서
- 3. 붙임 서식(1~8)

〈별표 1-1〉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의뢰기관명

수신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목 HIV 확인검사 의뢰

아래의 검체는 본원의 HIV 항체 시험에서 양성반응^①을 보여 확인시험을 의뢰하오니 검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체번호 ^②	채혈일 ^③	최초검사 의뢰기관 ^④	검사동기 ^⑤	검사시약 ⑥	의뢰기관의 검사결과 ^⑦	채혈 횟차 [®]	성별	비고
12-01- 중구01-02	2012 1. 3	중구 보건소	임상증상 (구체적으로)	AIDSIA Fujirebio Cambridge	ELISA 0,3/0,1 WB - p24, gp120	2차		

별 첨: 기타 사항^⑨

의뢰기관장

〈별표 1-2〉

공 문 작성 요 령

1. 시험의뢰서의 기재내용 (위 공문의 예시에 대한)

① 의뢰사유: 양성반응, 미결정 등을 기재

② 지역별 번호(기존번호 동일)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경기	07	강원	08
충북	09	충남	10	전북	11	전남	12
경북	13	경남	14	제주	15	경기북부	16
울산	17	세종	18				

〈검체번호 표시의 예〉

보건소 : 연도 - 지역번호 - 보건소 월별 - 보건소검체번호

병 원 : 연도 - 지역번호 - 병원 월별 - 환자등록번호

12 - 01 - 중구 01 - 02

-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HIV 검체는 질병관리청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보건소에서 부여한 검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뢰
- ③ 채혈일: 의뢰 검체의 채혈일을 기입
- ④ 최초검사 의뢰기관: 보건소, 검역소, 혈액검사센터, 개인의원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을 기재
- ⑤ 검사 동기: 일반진료(산부인과 일반검사 외), 산전검사(임신관련), 입원·수술 전 검사, 헌혈,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건강검진(종합검진, 직장검진, 채용신체검사), 자발적검사(검사희망), 익명검사, 외국인 체류심사(비자, 난민신청 등), 교정시설 입소자 검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검진(특수업태부, 유흥, 다방, 안마), 양성자 접촉검사(감염인가족, 배우자 등), 기타
- ⑥ 검사시약:시약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 ⑦ 의뢰기관의 검사결과: ELISA 검체의 OD 값/ Cut off값

WB - Band pattern 표시

- ⑧ 채혈 횟차: 검체 채혈 횟차
- ⑨ 별 첨: 기타 특이사항(기저질환 등)

〈별표 2-1〉 질병관리청 성적서(예시)

시 험 성 적 서					
1. 의뢰 기관					
2. 시험 항목					
3. 접수 일자					
4. 검체 번호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습	나다.			
민관 번호	판 정	비고			

- 1. 이 성적는 의뢰인이 제공한 검체에 대한 시험결과이며, 감염병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수 없습니다.
- 2. 이 성적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므로 의뢰인이 환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할수 없습니다.
-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 Tel: 043-719-8213

※ 각 기관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HIV 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한다.

〈별표 2-2〉

HIV 확인검사 양성판정 기준

1. 양성: 웨스턴블롯검사 또는 p24항원 중화검사 또는 유전자검출검사에서 양성일 때

2. 음성

- (1) 선별검사용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이지만 p24항원검사에서 음성반응이고, 웨스턴블롯검사에서 밴드가 없을 때
- (2) 선별검사용 항체검사, p24항원검사에서 모두 음성반응일 때

선별검사용 항체검사	p24항원 검사	웨스턴블롯검사	판정
+	-	밴드없음	음성
-	-	미실시	음성

3. **미결정**: 웨스턴블롯검사, p24항원검사, p24항원중화검사에서 양성 또는 음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검사법	검사 결과	판정
웨스턴블롯검사	사기 때 스키리크게 브랜리리	_l =l =l
p24항원검사	양성 또는 음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미결정 (질병관리청으로 의뢰)
p24항원중화검사	(이 보 기기	

〈별표 3-1〉

HIV 월별 검사 실적 송부 양식

의뢰기관명

수신자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장 (경유)

제 목 HIV 확인검사 실적 제출(0000년 0월)

본원에서 수행된 HIV 확인검사 실적(양성 잔여검체 포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아 래 -

월	양성(건수)	미결정(건수)	음성(건수)	비고
0월				
계				

붙임 1. HIV 확인검사 검사결과양식(〈별표 3-2〉) 1부

2. 양성 잔여 검체(별도 송부)

의뢰기관장

HIV 확인진단검사 결과양식

표 더 - 성 - 전 山 天 GP 36 GP 36 90 **p17 p17** P24 P24 33 P31 ₽ 4 ₽ 4 WB P51 P55 HIV Ab 994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9 LLA HIV1 MP VIDAS HIV DUO Ultra DO CO € H 0.0 전체 A A B **器** 8 p24 중화 ※ 보 % HIV Ag VIDAS p24 검세 0.D 陸 丸 🛢 전교 서누 DM 등 급 🗸 급 古女多万 최초의뢰기관 검사결과 1を丸には・4.4 五0 孤川 写 南 単 豆 拿 건 기 章 명

〈增丑 3-2

〈별표 4-1〉

미결정판정자 최종확인검사 의뢰 양식

의뢰기관명

수신자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장 (경유)

제 목 HIV 미결정판정자 최종확인검사 의뢰

본원의 HIV 확인검사에서 미결정으로 판명된 검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최종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일자	의뢰기관	최초의뢰기관	검체번호	비고

별첨 1. 검체.

2. HIV 확인검사결과양식 1부 끝.

의뢰기관장

〈별표 4-2〉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1. 미결정판정자 정의

HIV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나 HIV확인검사의 양성기준에 미흡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후 재검사가 요망되는 자

2. 미결정판정자가 발생하는 경우

- 가. 항체미형성기에 속하는 초기 HIV 감염인과 AIDS 말기환자
- 나. HIV 감염된 엄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 다. 자가 항체나 HIV와 무관한 타 항원에 대하여 교차반응을 보이는 환자

3. 미결정판정자 추가검사의 필요성

- 가. HIV 감염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효율적인 HIV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적검사가 필요
- 나. HIV 검사 의뢰자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4.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관리

- 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HIV 선별검사기관(보건소, 병의원, 병무청 등)에 미결정 결과 통보 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시: 해당 기관에서 미결정자에 대하여 재채혈^{*}하여 〈별표 8〉양식과 함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의뢰
 - * 검체부족 등 필요 시
 - 질병보건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별표 41〉의뢰서와 미결정 검사 결과〈별표 3-2〉 양식을 붙임으로 발송
- 나. 검체는 EDTA 항응고제 처리된 전혈 10㎡을 〈별표 8〉양식과 함께 질병관리청 으로 직접 또는 수탁기관 통해 즉시 질병관리청 검체접수실 (043-719-8173)로 송부 (필요시, 바이러스부석과로 문의: 043-719-8213)

〈별표 5-1〉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에 대한 추적검사 안내

1.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 정의

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하의 유아

2. 필요성

- 가. 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유아는 모체의 HIV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후 18개월 이전에 HIV 감염확인을 위하여 추적검사가 필요
- 나. 신생아, 유아에 대한 HIV 감염확인은 신생아, 유아의 치료지속여부나 효율적인 치료결정에 유용
- 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신생아/유아의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3.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의 추적검사

- 가.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를 관리하는 병원의사나 담당자는 유아 샘플 송부 전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와 사전협의
- 나. HIV 감염확진을 위하여 출생 직후, 생후 4주, 4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로 신생아/ 유아 검체를 송부(채혈하기 어려운 경우 : 4주, 6개월 이상, 18개월(총 3회) 간격으로 채혈)
- 다. 신생아/유아 검체의 유아의 생년월일을 기록하여, HIV에 감염된 모체의 검체를 함께 송부(채혈과 라벨시 주의)
- 라. 유아검체는 EDTA 처리된 1개 튜브에 최소 3ml 이상의 전혈 송부
 - ※ 송부된 전혈에서 혈장을 분리하여 유전자검출검사에 800ul,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웨스턴블롯법 등)에 각 500ul를 사용

〈별표 6-1〉

성인용 HIV/AIDS 역학조사서

1.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

감염인 번호	0000000				설문일		년 월	일
보건소명	시(도	_시(도)보건		소	담당자 연락처	()	_	_
 성별	□ 남자 □	여자			근목시	()		
생년월일	년 월 일							
내/외국인	ㅁ 내국인 ㅁ	외국인(국적	덕:)		입국일1)		체류자	격
현재결혼 및 동거상태	□ 미혼 □	결혼	ㅁ 동거		□ 사별	□ 이혼		□ 별거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주요 사망원인 (진단명)	사망과 :		후천성면역결	[집증과의 관	련성	ㅁ유ㅁ무	
사망관련2)		선행사인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	사인	중간사인						
776)		최종사인						
	사망일		'일)		년 월 일			
보건소	주민등	록상주소지	보건소		시(도)보건		_보건소	
보신소	실기	데거주지 보	 건소		시(도)보건소		_보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취업금지	대상업종 (押 一	□ 해당함(근	- 무처 :) 🗆	〕해당안 [*]	함

- 1) 외국인의 경우에만 작성
- 2) 신고서식 참조하여 작성

2. 검사사항

최종확진일	년 월	일			최종확진기관	
검사이유	□ 1.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가 실시한 검사 □ 2. 수술이나 입원시에 실시한 정례검사(routine test) □ 3. 건강검진을 통한 발견 3-1. □ 종합검진 □ 직장검진 □ 산전검사 □ 교정시설 □ 입영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 기타() □ 4. 본인이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한 검사 4-1. □ 보건소 □ 병의원 □ 에이즈관련민단단체 □ 기타() □ 5. 헌혈 □ 6.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 대상자에게 실시되는 HIV검사 □ 7. 감염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한 검진 □ 8. 기타()					
			검사일	년 월 일	외국인의 경우	□ 입국전 □ 입국후
		□ 양성	실명/익명	□ 실명 □ 익명		
			검사기관	□ 보건소 □ 병의	원 🗆 에이즈관련	!민간단체 □ 기타
과거	ㅁ 유		확진검사여부	□ 선별검사만 하였음	음 🗆 확인검사까	지 하였음
검사경험※		- 01	검사일	년 월 일	외국인의 경우	□ 입국전 □ 입국후
		□ 음성	실명/익명	□ 실명 □ 익명		
			검사기관	□ 보건소 □ 병의	원 🗆 에이즈관련	민간단체 n 기타
	ㅁ 무					

[※] 현재 확진받은 건을 제외한 과거검사 경험 중 가장최근에 한 검사 결과를 기입하되, 최근의 검사결과가 음성, 양성 모두 있을 경우에는 각각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를 모두 작성함.

3. 발견당시 상태

최초검사	□ 면역기능(CD4+ T 세포 수): (/ළl)	검사일시	년	월	일
최소심시	ㅁ 바이러스 양(Viral load):(copies/ml)	검사일시	년	월	일
AIDS 정의질환유무※	ㅁ유ㅁ무				

[※] 작성방법에 'AIDS 정의질환' 참고, 작성시 감염인 진료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4.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진

의심되는 감염경로	□ 성 접촉	□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 기타()
74 1 1 74 7 1	검사여부	□ 실시 □ 미실시(사유:)
검사결과 	결 과	□ 양성 (감염인번호:) □ 음성

[※]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 검진 결과 입력 가능

5. 감염경로에 대한 사항

성접촉	남성과의 성겸험	ㅁ 유 ㅁ 무 ㅁ 응답거부			
(3년 독	여성과의 성경험	ㅁ 유 ㅁ 무 ㅁ 응답거부			
마약(주사용)사용력	ㅁ유ㅁ무ㅁ응답거부				
人청거청	□ 유(□ 전혈 □ 혈소판 □ 적혈구 □ 혈장) □ 무 □ 응답거부				
수혈경험 	(시기: 년 월 일 의료기관:)				
청애미테니오거청♡	ㅁ유ㅁ무ㅁ응답거부				
혈액제제사용경험※	(시기: 년 월 일 의료기관:)				

[※]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말함.

☞ 감염인 본인이 추정하는 감염경로

추정감염장소	ㅁ 국내	ㅁ 국외
추정감염경로	□ 이성간성접촉 □ 수혈 □ 혈액제제주사 □ 기타()	□ 동성간성접촉 □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 수직감염

6. 기타

현재임신여부※	🗆 임신중아님 🗆 임신 중(개월)(출산예정일: 년 월 일)								
			자녀1		Έ	1	월	일	
자 녀 유 무†	ㅁ유ㅁ무	생년월일	자녀2		Έ	<u> </u>	월	일	
			자녀3		Έ	1	월	일	
기타사항									

[※] 여성의 경우만 작성요망

[†] 자녀 추가 입력 가능

〈별표 6-2〉

소아용 HIV/AIDS 역학조사서(만 15세 이하)

1.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

감염인 번호	0000	10000	설문일	년 월 일		
니기시대	11/17	니기시	담당자			
보건소명	^(노 <i>)</i>	보건소	연락처	()		
성별	ㅁ 남자 ㅁ 여자	ŀ				
생년월일	년 ⁻	월 일	연령(만)	세 개월		
111/01701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국적:)		외국인일 경우	부:()		
네/외국인			l wa [모:()		
보호자	ㅁ 친부모 ㅁ 조	친부모 ㅁ 조부모 ㅁ 친척 ㅁ 기타()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u></u>				
	주요 사망원인 (진단명)		사망과 후천성	면역결핍증과의 관련성	ㅁ유ㅁ무	
사망관련1)		선행사인				
(사망한 경우에만 작성)	사인	중간사인				
, 0,		최종사인				
	사망일	일(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성	상주소지 보건소		시(도)보		
보건소	실제거	주지 보건소		시(도)	보건소	

2. 검사사항

최종확진일	년 월 일	최종확진기관	
검사이유	□ 감염인 부모 □ 수술 전 검사(수술명:) □ 질병의 원인검사 □ 기타()	□ 건강검진 □ 에이즈 관련 임싱 □ 자발적 검사	さ

3. 발견당시 상태

최초검사	□ 면역기능(CD4+ T 세포 수):(/ළ()	검사일시	년	월	일
	ㅁ 바이러스 양(Viral load) : (copies/ml)	검사일시	년	월	일
AIDS 정의질환유무※	ㅁ유ㅁ무				

[※] 작성방법에 'AIDS 정의질환' 참고, 작성시 감염인 진료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¹⁾ 신고서식 참조하여 작성

4. 가족의 검진여부

구분	검사유무	감염여부			
부	□ 검사함 □ 검사안함	□ 감염(감염인번호:) □ 비감염			
모	□ 검사함 □ 검사안함	□ 감염(감염인번호:) □ 비감염			
			형제1	만()세	
형제	ㅁ유ㅁ무	연령	형제2	만()세	
			형제3	만()세	

5. 감염경로에 대한 사항

수직감염	□ 해당	□ 해당안됨	□ 응답거부
수혈경험	□ 유	ㅁ 무	□ 응답거부
혈액제제사용경험※	□ 유	ㅁ무	□ 응답거부

6. 수직감염관련

분만방법	□ 정상분만 □ 제왕절개	임신기간	()주
감염사실 인지시기 (출산과 관련하여)	□ 임신전 □ 임신중(주) □ 분만직전 □ 분만후 □ 기타 ()	어머니의 임신 시 투약여부	□ 투약안함 □ 투약함 약제: 기간:
신생아 투약 여부	□ 투약안함 □ 투약함 약제: 기간:		
수유방법	ㅁ 모유 ㅁ 분유 ㅁ 기타	기타 임신 시 둔	

7. 수혈 및 혈액제제관련

소청 조금 미 미기	□ 유(□ 전혈 □ 혈소판 □ 적혈구 □ 혈장) □ 무 □ 응답거부
수혈 종류 및 시기	(시기: 년 월 일 의료기관:)
혈액제제사용 및 시기	□ 유 □ 무 □ 응답거부
	(시기 : 년 월 일 의료기관 :)

8.	기타			

[※]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말함. 추정 감염경로가 성관계 또는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인 경우는 성인용 역학조사서 사용

〈별표 6-3〉

역학조사서 작성방법

역학조사 결과는 국가 에이즈예방사업의 계획·수립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감염인이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개인의 역학조사결과는 비밀이 보장됨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서 선택: '성인용 역학조사서'와 '소아용역학조사서(만15세 이하)'가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역학조사서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성인용/소아용 각각 해당 되는 양식에 작성함. 단, 만15세 이하인 경우도 감염경로가 성접촉 혹은 마약 사용일 경우에는 '성인용 역학조사서'를 사용함
 - ※ 본 역학조사서는 2020.1.1. 이후 확진된 감염인부터 적용
- 역학조사 결과 보고: 보건소담당자는 감염인 통보(HASNet)후 역학조사 서식을 모두 기입한 결과를 가급적 3개월 이내 완료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함
- 1)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 작성
 - ① 감염인번호: 내국인일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부여받은 감염인번호를 기입함
 - ② 현재결혼 및 동거상태: 과거의 혼인상태는 상관없이, 현재상태만 기록함 (예를 들어 이혼 후 동거 중이라면, 동거에만 체크함)
 - ③ 사망여부: 생존, 사망 중 해당사항에 체크. 생존의 경우에는 사망정보에는 공란으로 두시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은 필수로 기입하되 세부사인 중 선행사인, 중간 사인, 최종사인은 확인된 경우에만 작성함
- 2) 검사사항
 - ① 검사이유: 현재 양성 판정 받은 건에 관한 검사이유이며, 1~8번 항목까지 해당되는 번호 1개만 체크함. 3번이나 4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3-1 혹은 4-1에도 체크함
 - ② 과거검사경험: 현재 양성 판정 받은 건을 제외한 과거 검사 경험 중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를 기입함. 단, 최근의 검사 결과가 음성, 양성 둘 다 있을 경우에는 각각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를 모두 작성함
- 3) 발견당시상태
 - ① 최초검사 : 감염 발견 이후(치료 시작 전) 가장 처음 실시한 면역기능과 바이러스양 검사 결과를 기입함
 - ② AIDS 정의 질환: 다음의 AIDS 정의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염인 연계의료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 후 기입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 기관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에이즈 정의 질환

- 식도,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의 칸디다 감염증
- 침습성 자궁경부암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폐외 크립토콕쿠스병
- 1개월 이상의 설사를 동반한 크립토스포리디움병
-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간, 비장, 림프절은 제외)
- 단순포진 감염: 1개월 이상의 만성 궤양 또는 기관지염, 폐렴, 식도염
- 파종성 또는 폐외 히스토플라스마증
- 1개월 이상의 설사를 동반한 아이소스포라증
- 카포시 육종
- 원발성 뇌 림프종
- 결핵균 감염(폐결핵 또는 폐외 결핵)
-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파종성 또는 폐외 감염)
- 노카르디아증
- 폐포자충 폐렴
- 재발성 세균성 폐렴(1년에 2회 이상)
- 진행성 다초점점백색질뇌증
- 재발하는 살모넬라 패혈증
- 내부 장기의 톡소포자충증
- 장외 분선충증
- HIV 뇌병증
- 전신성 소모 증후군 : 이유 없이 기준치의 10% 이상의 체중감소와 하루 2회 이상의 만성 설사가 30 일 이상 있는 경우 또는 만성 쇠약감과 30일 이상 원인불명의 발열이 있는 경우

4)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해당하는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포함) 및 성접촉자,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자 등 감염경로에 노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 HIV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입함.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 검진 결과입력 가능함

5) 감염경로에 대한 사항

성 접촉, 마약사용, 수혈 및 혈액제제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모두 체크함. 특히 성접촉의 경우 남성과의 성경험, 여성과의 성경험 모두 해당될 때에는 둘 다 '유'에 체크하시고, 본인이 답을 원치 않을 경우 응답거부에 체크함. 감염인 본인이 추정하는 감염경로는 해당되는 장소 및 추정전파경로를 각 1개씩만 선택함

6) 기타

임신 및 자녀유무는 여성 HIV 감염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며, 추가사항은 기타 란에 작성함 < Attached Form 6-4 > 성인용 HIV/AIDS 역학조사서(영어)

Adult HIV/AIDS Epidemiological Survey Form

1. Personal Details and Basic Information

Patient No.		100000	Date of survey	YYYY/MM/DD		M/DD		
Health Center		Si(do)	Supervisor					
Name	Health Center		Contact details	() _				
Sex		□ Female						
Date of Birth	YYYY/MM	YYYY/MM/DD						
Citizen/Foreigner	□ Citizen □ Foreigner	Citizen Date of Entry Foreigner (nationality:) Date of Entry 1)						
Marital Status	□ Single □ Married □ De Facto □ Widowed □ Divorced □ Separated							
Deceased Status	□ Alive □ Deceased							
	Main Cause of Death (Name of Diagnosis)	Relat	Relation of AIDS to Death					
Death Related ² (Only if the		Initial cause of death:						
patient is dead)	Cause of Death	Intermediary cause(s) of death:						
		Final cause of death:						
	Date of Death		YYYY/MM/DD					
Health Center	Health Center Related to Address on Patient's Resident Registration		Center si (do)					
Treatm Center	Health Center Related to Actual Address of the Patient		si (do) Ho			Health		
Applicability of work type that is legally forbidden by law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Applicable (Workplace: □ N/A						

- 1) Only for foreigners
- 2) Fill out with reference to the report format

2. Details of the Diagnosis

Date of Final Confirmed Diagnosis		Y	YYYY/MM/DD			ion of Final d Diagnosis	
Reasons for Examinations	□ 2. □ 3. □ 4. □ 5. □ 6.	1. Examination ordered by doctor for cause of the disease 2. Routine test upon hospitalization or surgery 3. Infection found by physical examination 3-1. Comprehensive health examination Coccupational health examination Prenatal health examination Correctional facility 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Other (
		Positive Ves	Date of Examination	YYYY	//MM/DD	For Foreigners	□ Before entering the country □ After entering the country
			Identified/ Anonymous		□ Identified □ Anonymous		
			Testing Organization	□ Hospi	Health Center Hospital or Clinic AIDS-related Settlement Organization Other		
Past	□ Yes		Final Confirmed Diagnosis		Screening examination only Up to confirmation examination		
Examination *			Date of Birth	•	//MM/DD	For foreigners	□ Before entering the country □ After entering the country
		□ Negative	Identified/ Anonymous	□ Identi	□ Identified □ Anonymous		
			☐ Health Center ☐ Hospital or Clinic ☐ AIDS-related Settlement Organization ☐ Others			ization	
	□ No						

^{*} Fill in the most recent test results of past examination experiences except for the currently confirmed cases, but if recent test results a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write the most recent test results for each.

3. Status upon Diagnosis

Initial Test	☐ Immunity (CD4+ T cell	count): (/µl)	Date of Test	YYYY/MM/DD
Illitiai Test	□ Viral load:	(copies/ml)	Date of Test	YYYY/MM/DD
AIDS-defining Diseases*	□ Yes □ No			

^{*} Refer to "AIDS-defining diseases" for preparation method, and request assistance from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of the patient while filling out this section.

4. Examination conducted on suspicion of infection

Suspected transmission route	☐ Sexual contact ☐ Sharing syringe for drug injection ☐ Other (
Examination results	Examination Status	□ Yes □ No (reason:)			
	Results	□ Positive (Patient No.:) Negative			

5. Details on Infection Route

Sexual contact	With male	□ Yes □ No □ Decline to answer			
Sexual contact	With female	□ Yes □ No □ Decline to answer			
History of drug use (injection)	□ Yes □ No □ Decline to answer				
Experience of blood	□ Yes (□ Whole blood □ Platelets □ Red blood cells □ Plasma) □ No □ Decline to answer				
transfusion	(Time: YYYY/MM/DD Medical organization:				
Experience of using blood	□ Yes □ No □ Decline to answer				
products*	(Time: YYYY/MM/DD Medical organization:				

^{*} Blood products refers to medical products under Article 2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are manufactured from blood.

Assumed Transmission Route by the Patient

Assumed Location of Transmission	□ Domestic □ Overseas
Assumed Transmission Route	□ Sexual Contact with Partner of Opposite Sex □ Sexual Contact with Partner of Same Sex □ Blood Transfusion □ Sharing of Syringe for Drug Injection □ Injection of Blood Products □ Vertical Infection □ Others ()

^{*} Each examination result can be entered if there are several people suspected of infection.

6. Others

Current Status of Pregnancy*	□ Not pregnant □ Currently pregnant (_months)(Due date: YYYY/MM/DD)				
		Date of Birth	Child 1	YYYY/MM/DD	
Children †	□ Yes □ No		Child 2	YYYY/MM/DD	
			Child 3	YYYY/MM/DD	
Other matters					

^{*} Only to be filled out for female patients

[†] More children can be added

< Attached Form 6-5 > 소아용 HIV/AIDS 역학조사서(영어)

Child HIV/AIDS Epidemiological Research Form (For Patients below 15 Years of Age)

1. Personal Details and Basic Information

Patient No. (Temporary Foreigner No.)	(Facacaca)		Date of Survey			
H. M. C. A. N.	si (do)		Supervisor			
Health Center Name		Health Center	Contact Details	()		
Sex	□ M □ F					
Date of Birth			Age	Years: Months:		
	□ Citiz		For foreigners,	Father :		
Citizen/Foreigner	□ Foreigner (Nationality:)		nationality of parents	Mother :		
Guardian	 Parents Grandparents Relative Other () 					
	Death		□ Alive □ Dead			
	Cause of Death:					
Death (Only if the	Cause	Initial cause of death	ı:			
patient is dead)	of	Intermediary cause o	f death:			
	Death	Final cause of death	:			
	Date of	f Death (YY/MM/DD)				
Health Center	Health Center Related to the Address on the Patient's Resident Registration		si	(do) Health Center		
	Health Center Related to the Actual Address of the Patient		si	(do) Health Center		

2. Details of the Diagnosis

Date of Final Confirmed Diagnosis		Organization of Final Confirmed Diagnosis	
Reason for Diagnosis	☐ Infected Parents ☐ Pre-surgical test (Su) ☐ Test for Cause of Disease ☐ Other ()	□ Health Diaş □ AIDS-relate □ Voluntary	d Clinical Symptoms

3. State upon Detection of Disease

	□ Immunity (CD4+ T Cell Count): (_/µl)	Date Tested	
Initial Test	□ Viral load : (copies/ml)	Date Tested	
AIDS-define d Diseases*	□ Y □ N		

4. Testing of the Family

Category	Test	Infection				
E-41	□ Tested	□ Infected (Patient No.:)				
Father	□ Not Tested	□ Not Infected				
Mal	□ Tested	□ Infected (Patient No.:)				
Mother	□ Not Tested	□ Not Infected				
	□ Y		Sibling 1	Age:		
Siblings	N T	Age	Sibling 2	Age:		
	□ N		Sibling 3	Age:		

5. Details on the Infection Route

Vertical Infection	□ Applicable □ N/A □ Refuse to Answer
Experience with Blood Transfusions	□ Y □ N □ Refuse to Answer
Experience with the Use of Blood Products*	□ Y □ N □ Refuse to Answer

^{*} Refer to 'AIDS-defined diseases,'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of the patient.

^{*} Blood products refer to the medical products manufactured with blood as the raw material, based on Article 2 of the Pharmacy Law. If the assumed infection route is sexual intercourse or shared use of a drug-administering syringe, use the adult epidemiological research form.

6 Vertical Infection Relation

Method of Delivery	□ Natural birth □ C-section	Term of Pregnancy	weeks		
Detection of Infection (Related to Birth)	□ Before pregnancy □ During pregnancy (weeks) □ Immediately before birth □ After birth □ Other ()	Drug Administration to the Mother during Pregnancy	□ Not administered □ Administered drugs: Term:		
Drug Administration to the Newborn	□ Not administered □ Administered drugs: Term:				
Method of Nursing	□ Breast-feeding □ Bottle feeding □ Other	ther complications du	rring pregnancy:		
7. Blood Transfusions and Blood Product Relation					
	- V				

Blood Transfusion Type and Term	□ Y □ Whole blood □ Platelets □ Red blood cells □ Plasma □ N □ Refuse to Answer Term: Medical Organization:
Use of Blood Products and Term	□ Y □ N □ Refuse to Answer Term: Medical Organization:

8. Other

< Attached Form 6-6 > 역학조사서 작성방법(영어)

Composition Method of the Epidemiological Research Form

The results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 are very important data that will be used as supporting documents in the planning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IDS prevention project. Accordingly, you mus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to the patient regarding the need for the epidemiological survey and that non-disclosure of individual epidemiological survey results is guaranteed so that the patient can cooperate with the epidemiological survey.

- Selection of Epidemiological Survey Form
 Epidemiological survey forms are divided into the adult epidemiological survey form and
 the child epidemiological survey form (for patients below 15 years of age). Foreigners
 may fill out the applicable form for adults or children in the same manner as local
 patients, without using separate forms. Patients under 15 years of age, however, who
 have been infected through sexual intercourse or drug use must use the adult
 - * This epidemiological survey form takes effect for diagnosed patients as of July 1, 2011.
- Reporting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 Results
 The supervisor of the health center completes the results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 form after notifying the infected individual (HASNet) within 3 months, and reports the results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uberculosis and AIDS management department) via HASNet.
 - 1) Preparation of Personal Details and Basic Information
 - ① Patient No.: Enter the patient number issu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② Current Marital or De Facto Status: Record only the current marital status, regardless of any past marital status. (For example, if divorced and currently in a de facto relationship, check De Facto only.)
 - ③ Deceased status: Check applicable box, "Alive" or "Deceased". If you checked "alive", leave the details blank; if "Deceased", the cause of death shall be entered, but the initial, intermediary, and final cause of death can be filled out only after confirmation of the detailed cause of death.

2) Details of Examination

epidemiological survey form.

- ① Reasons for Examination: This is the reason for the test in the event of a positive diagnosis, and only one number corresponding to items 1 to 8 is to be checked. If it corresponds to items 3 or 4, also check 3-1 or 4-1.
- 2 Past test experience: Enter the most recent test result from past tests except for a case that is currently positive. However, if recent test results a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enter each of the most recent test results.

3) Status upon Detection of Disease

- ① Initial test: Record the results of the first immunization and viral load tests since the infection was detected (before beginning treatment).
- ② AIDS-defining diseases: Record the details after confirming with the patient's medical treatment facility as to whether the patient's condition corresponds with the following AIDS-defining diseases.
- *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Medical personnel and the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prescrib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that perform the affairs of the surveillance of outbreak,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 Aids-defined Diseases

- Candida infection of the esophagus, bronchus, bronchiole, or lungs
- Invasive cervical cancer
- Disseminated or pulmonary coccidioidomycosis
- Pulmonary cryptococcus
- Cryptosporidiosis accompanying diarrhea for more than 1 month
- Giant cell viral disease (excluding disease of the liver, spleen, or lymph nodes)
- Herpes simplex infection: Chronic ulcer or bronchitis, pneumonia, or esophagitis for more than 1 month
- Disseminated or pulmonary histoplasmosis
- Isosporiasis accompanying diarrhea for more than 1 month
- Kaposi's sarcoma
- Protopathic brain lymphoma
- Infection of the tubercle bacillus (pulmonary tuberculosis or extrapulmonary tuberculosis)
- Atypical mycobacterium infection (Disseminative or extrapulmonary infection)
- Nocardiosis
-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 Recurrent bacterial pneumonia (more than twice a year)
-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 Recurrent salmonella sepsis
- Toxoplasmosis of internal organs
- Extraintestinal strongyloidiasis
- HIV encephalopathy
- Systemic wasting syndrome: Weight loss of more than 10% of the standard weight and chronic diarrhea more than twice a day for more than 30 days, or chronic weakness for more than 30 days for no determinable reason

4) Examination conducted on suspicion of infection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been exposed to a path of infection, such as via a spouse (including common-law marriages), sexual contact, or shared use of a narcotic syringe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DS", conduct an HIV test and fill out the result. Individual examination results can be entered if there are several people suspected of infection.

5) Details on the Path of Infection

Check all that apply if you have experience in sexual contact, drug use, blood transfusion, or use of blood produ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sexual contact, check "Yes" if the sexual experience is with both sexes, and check "decline to answer" if the person does not prefer to answer. For the path of infection estimated by the infected person, select only one location and the estimated path of propagation.

6) Other

Questions on pregnancy and parental status are questions applicable to women with HIV, and additional details can be recorded in the "Others" column.

〈별표 7〉

HIV 감염 확인서 (HIV 항체양성자 등록 확인서)

HIV확진년월일 : 성 명 : 생 년 월 일 : 감염인번호:

상기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HIV 항체 양성자로 최종 판정 받아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발 급 일 :

확인기관명: (인)

〈별표 8〉

시험의뢰서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검치	처리기간 「질병관리청 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ł.	
	의료기관명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의뢰기관	1— 120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 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1차 또는	구분 2차)					
담당의사소	견서					
			담당의시	:	(서명 또는	- 인)
「질병	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시 제4조에 미	따라 위와 같이 시	험을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u> </u>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	리청장 귀하					
※ 첨부자료1. 검사대2. 그 밖이		-				
		Ç T	우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작	성 🛨 접수	→ 시호	험・검사 →	결재 →	성적서 빌	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사	1)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표 9〉

면역검사 관련 용어 설명

1. CD4+ T 세포

- CD4+ T 세포란 T 림프구 중 CD4 분자 표면수용체를 갖는 세포를 말하며 HIV의 표적세포이다. 이 세포는 면역기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세포성 면역의 정도를 나타내며 보통 혈액 ₩ 내의 수치로 표현한다. CD4+ T 세포 수는 정상인의 경우 약 600~1,500/₩ 정도이며 500/₩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하고, 200/₩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심한 면역계의 손상으로 기회감염 가능성이 높다. 현재 CD4 세포 수와 무관하게 모든 HIV 감염인 대상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CD8+ T 세포

- CD8+ T 세포란 T 림프구 중 CD8 분자 표면수용체를 갖는 세포를 말한다. CD8+ T 세포는 T 세포가 인식하는 항원을 지닌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포독성 T 세포 또는 킬러 T 세포로 불린다. 즉, HIV에 감염된 세포의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하여 그 세포를 죽인다. CD8+ T 세포 수는 정상인의 경우 약 200∼1,000/ℓℓℓ 정도이다.

3. T4 백분율

- 총 림프구(Lymphocyte) 중 T4 세포(CD4+ T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T4 백분율은 CD4+ T 세포의 절대수치와 함께 면역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이다. 간혹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시에는 CD4+ T 세포수의 절대값보다 변화가 적은 T4 백분율이 의미 있는 수치로 여겨진다. 정상인의 T4 백분율은 30∼60% 정도이며 참고로 정상인의 T8 백분율은 15∼40%이다.

4. T 세포 비율 (CD4+ T/CD8+ T)

- CD4+ T 세포 수를 CD8+ T 세포 수로 나는 값을 말한다. 정상인의 경우 0.9~3.0 정도이거나 그 이상이다. HIV에 감염되어 질병이 진전될수록 CD4+ T 세포 수가 감소하고 CD8+ T 세포 수가 증가하므로 T 세포비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참고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직, 공정,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2.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겠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참고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 사업명:		
□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 변경사유 가.		
□ 변경사형 가. 사업니	- 용 및 예산 내역	(단위: 원)

구분		변경 전 프로그램	변경 등 파크그래	변경 사유 및
비목	세목	현경 전 프로그램	변경 후 프로그램	검토 의견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 천원, %)

비목-세목		변	경 전	변경 후		~ 7L0#
		금액	구성바(%)	금액	구성비(%)	증감액
인건비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피복비					
단증비	암류					
	복리후생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총계						

○ 변경 후 산출근거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110) 인건비		
(110-01) 상용 임금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3) 피복비		
(210-07) 임차료		
(210-12) 복리후생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240) 업무추진비		
(240-01) 사업추진비		

※ 사업내용 등에 따라 양식 편집 가능

참고

2022년 ○월 에이즈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22년 ○월 에이즈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기관:	>

- □ 사업명:
-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_

□ 예산집행현황

(단위: 원)

항 목		예산액 (당초)	예산 현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 률 (B/A, %)
	총 계						
인건비	보수						
인신미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운영비	공공 요금 및 제세						
포잉미	피복비						
	임차료						
HI	국내여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000	000						

※ 예산액(당초): 최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

※ 예산현액: 변경된 예산액※ 교부액: 교부받은 금액

※ 집행액: 월말 기준으로 누계액 작성

□ 향후계획
•
-
□ 기타
○ 애로사항 및 향후대책
-
○ 사업인력변동, 행사, 기타 특이사항
_

참고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 중 <u>감염인의 개인정보 등 관련 사항과</u> <u>주무부서에서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모든 사항</u>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 2. 비밀엄수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 본인은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비밀누설금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하였음

비밀누설 관련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및 제26조

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참고 성과물 활용 신청서							
 성과물 활용 [□승인/□심의] 신청서							
과제정보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성과물 활용	용 정보			
성과물 유형			-문(SCI, 비SCI 타{특허출원·등· 원체유전정보)	록, 연구자원		생물자원,	
		발표	제목:				
성과물 활용용도	Ē	*	학술지명, 학술대회	희명 및 기퇴	' <i>활용처(보도지</i>	[†] 료, 저술 등) 기재	
성과물 활용자		* .	저자, 발표자 또는	· 등록자 정 <u>·</u>	보 <i>기술</i>		
활용 예정일/게기	대 승인일	* 1	논문 게재승인일	및 게재 예정	병일, 학술대회	발표일	
주요 내용		- 1	연구배경, 연구대성 초록 별지 첨부	상 및 방법,	연구결과, 결론	!	
			87조 및 「연구개 · 활용을 신청합니		지침」및「연구	가개발과제 등의 성과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서)	명)	
주요 걷	토 사항(※	· 소속	쿠서장 또는 발	주부서장 ?	작성)		
사회적 영향력(☑표시) 높음 □ 보통 □ 낮음 □						<u></u>	
정책부서협의 필요여부(☑표시) 필요 □ 해당사항 없음 □ (정책부서명:)							
※ 논문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 - 논문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 정책적인 검토 또는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대국민홍보가 필요한 경우						l나 필요한 경우	

붙임 1 카드 현금 사용 영수증 양식

예시)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회의명:회의일시:회의장소:참석인원:사용경비총액:	원
	※ 관련 영수증 첨부란

방명록

[회의명]

일시: 년 월 일(), 00:00~,

장소:

no	소속	직위(직급)	이름	서명

수당 지급 명세서

미일 시:

미 자문/회의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쌲음	
지급금액	
은행명 및 계좌	
식위 또는 식료	
주민등록번호	
삭 사	
짱	
धा मा	

1) 소득세법 제164조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2)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계증빙서류 보관기한까지임.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년 월분

날짜	시간	목 적	목적지	소요금액	사용자
		총계			

년 월 일

책임자: (서명)

차량운행 일지 (유류비사용대장)

유류비사용대장

년 월분

날짜	시간	목 적	주류량(L)	출발지	목적지	소요거리(km)	사용자

년 월 일

책임자: (서명)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

출장자운임산출내역 관련

□ 출장자 운임산출내역

작성항목	작성협조사항
출장자	 출장자 전원이 동일기간, 동일지역으로 출장할 경우 선임자 성명과 인원수 기재 (예시: 연세대산학협력단 홍길동외 ○명) 출장자별 출장기간 및 지역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출장일자	○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단의 예시참조)
도착지	○ 출장기간 중 당일 숙박하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
종별	○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기재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에서 정한 이용운송수단 및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작성공통사항	○ 출장기간 지역이 동일할 경우 선임자 외 출장자 일괄작성 - 예시참조 ○ 출장기간 및 지역이 각각 다른 경우 개별작성 - 예시참조

<출장기관과 지역이 동일한 경우>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예시)

	ज्ञ	00		5,000	000		8	00		νV	t († II
7준)	지급액(원)	29,200		5,0	87,600		21,100	24,000			166,900×4	166,900
산출금액(1인기준)	7	29,200		5,000	87,600		21,100	24,000			0	166,900
수	F7-	23,700 5,500						6,500			1	수
	l⊒ lo	새마을보통(서울-대구) 시외버스(대구-포항)		시외버스(포항-부산)	<u>할인요금적용(10%)</u>		<u>할인요금적용(10%)</u>	시외버스(부산-통영) 고속버스(통영-서울)				
Ŧ	5N 10	<u>철도</u> 자동차		자동차	항공기		항공기	자동차				
I H	사	H 아		썀	재주		샵	서울				
1404	7年70	대구	체류	#0 #0		체류		副0 副0				
FHK	1	사울		받	卡		쌅	부산				
THOME	돌이돌신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출장자	전 전	홍길동외3명										
·K M	먃	책임연구원										

35,700

23,200

(출장기관 및 지역이 다른 경우)

26,000×3 =78,000원 58,900×2 117,800원 226,200원 지급액(원) 산출금액(1인기준) 35,700 23,200 58,900 15,200 15,200 5,000 26,000 30,400 18,000 3,000 감 9,700 10,200 산게 총계 수게 고속버스(목포-광주) 새마을특실(광주-서울) ЦП ЦΟ 새마을특실 새마을보통 새마을보통 고설바스 시외바스 고속버스 고속버스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예시) 7동차 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쩎 濟 쩎 20分型 도착지 썆 울산 썆 뀲 썆 높 核 경유지 챍 쌂 北 출발지 썆 썆 왕산 쩋 뀲 쨚 놤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출장일자 00'00'00, 00'00'00 00'00'00, 홍길동212명 홍길동왜명 김복순 四0 ₹0 출장자 보건사무관 선임연구원 이사관 湿

15,200 15,200 30,400 5,000

3,000

18,000

붙임 6 운임비·숙박비 등 영수증 증빙서류

예시) 출장경비 사용 영수증	
○ 출장명○ 출장일시 :○ 출장장소 :○ 출장자 :○ 사용경비총액 :	원
× ₹	난련 영수증 첨부란

강사카드

강 사 카 드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사무실 휴대폰
이 메 일	
주 소	
소속 ㆍ 직위	
계 좌 번 호	
주 요 경 력 및 학 력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물관리 관련 양식

재물목록표

비 고(기금/비기금)				
部				
취득단가				
취득수량				
취득일자				
사용장소 및 목적				
西の田				
떠				

물품취득 및 처분계획

물품취득(50만원 이상)

200						
다 (위기원/기원)		다 (위기원/비기명)			비교 (기금/비기금)	
야 각		야 각			야 각	
사용장소 (지역/장소)		사용장소 (지역/장소)			사용장소 (지역/장소)	
구매시기		구매시기			구매시기	
마		际即			하	
단 가		단 가			단 가	
상		상			心	
田 田	물품취득(50만원 미만)	阳		라	阳	
다		떲		□ 물품처분	다	



부록 Ⅱ

- 1. HIV/AIDS 관리정책 주요 변천과정
- 2. HIV/AIDS 개요
- 3. HIV/AIDS 진단 및 치료
- 4. HIV 항체 양성자에게 주는 조언
- 5.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 6. 관련 기관
- 7. 관련 법령

2022 HIV/AIDS 관리지침

1 HIV/AIDS 관리정책 주요 변천과정

일 자	내 용		
1985년 12월	내국인 첫 HIV 감염인 발견		
1987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구성		
1987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정(법률 제3943호)		
1987년 11월	전 헌혈액 및 혈액제제의 의무 HIV 검사 시행		
1989년 10월	감염인 진료비 지급 개시, 익명검사제도 실시		
1993년 11월	에이즈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설립		
1994년 5월	에이즈민간단체(대한에이즈예방협회)설립		
1995년 1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1999년 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법률 제5840호) - 전문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 쉼터설치, 익명검사근거 마련		
2000년 1월	제3군 법정전염병(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으로 변경		
2002년	콘돔배포사업 예산 편성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개편, 에이즈 결핵관리과 신설		
2003년 12월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소(50 → 20%)		
2005년	에이즈 감염취약집단 동성애자 및 일반인 대상 검진상담소(VCT) 설치 운영(외국인 검진상담소 2006)		
2005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운영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예산 편성		
2005년 4~5월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4개) 구성 - 에이즈 예방홍보 분과, 에이즈 감염인 조사관리 분과, 에이즈 진단 및 정도관리 분과, 에이즈관련 법제도 분과		
2006년~2008년	에이즈 조기확진검사체계 도입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에이즈감염 확진기관으로 확대(2006년 7개 기관, 2007년 9개 기관, 2008년 1개 기관)		
2006년	감염인 지원센터 및 외국인 에이즈예방지원센터 설치 운영		
2007년 8월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출범		

일 자	내 용	
2007년 11월	에이즈 환자 요양·호스피스 센터 운영	
2008년 3월	제7차「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2008.9.22 시행) -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소 보완 및 삭제 - 감염인의 보호 지원 강화 - 익명검사제도 명문화 등	
2009년 10월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소(20 → 10%)	
2009년 12월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폐지	
2010년 3월	정신질환자 감염인 지원사업 실시	
2010년 4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8개소→12개소)	
2011년 3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12개소→14개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구성 에이즈 상담지원센터 출범(일반인 상담소 8개 통합 운영) 정신질환자 감염인 지원사업 확대(30병상 → 72병상)	
2012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14개소→16개소)	
2013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16개소→18개소)	
2013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2기 구성	
2014년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18개소→19개소) 외국인 검진상담소 확대 운영(2개소→3개소)	
2015년 1월	AIDS 환자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건강보험 수가 인정) 보건소 신속검사 확대(서울시 전체 포함)	
2015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3기 구성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19개소→20개소) 본인확인검사 폐지	
2015년 12월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요양병원 입원 제한 대상 명확화) 개정·공포	
2017년 1월	HIV 미결정 판정자 진료비 지원	
2017년 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기 구성	
2017년 7월	HIV 감염인 진료비 선별급여 지원	
2018년 4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시업 확대운영(20개소→25개소)	
2018년 12월	동성애자(2개소→3개소) 및 외국인 검진상담소(3개소→4개소) 확대	
2019년 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5기 구성	
2019년 4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확대운영(25개소→26개소)	

일 자	내 용		
2019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19-2023)' 수립		
2020년 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2020.1.1. 시행) - HIV/AIDS 발견 신고 시기 변경 (즉시→24시간 이내)		
2020년 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개정(2020.1.1.시행) - 신고방법에 전자문서 포함 - 신고시기(24시간 이내) 서식에 반영 - 의사 또는 의료기관 신고 서식에 국적, 주소지(읍면동) 기재란 추가		
2020년 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개정(2020.1.29.시행) - 에이즈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민감정보 처리 사무 범위에 진단,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		
2020년 6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자문단(4개 분야) 구성 - 예방 및 역학, 진단 및 진료, 인권 및 홍보, 연구개발		
2020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신설		
2020년 12월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보급		
2021년 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제6기 구성 - 의학, 보건, 홍보, 법학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자문단 제2기 구성 - 예방 및 역학, 진단 및 진료, 인권 및 홍보, 연구개발		
2021년 5월	HIV/AIDS 법인 종합감사 실시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제6조에 따라 '21년 법인 종합감사 실시 - 총 4개 법인(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예방재단, 한국 가톨릭레드리본)		
2021년 7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을 종업원으로 확대 - 「안마시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을 종업원으로 확대		

2 \ HIV/AIDS 개요

※ 발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HIV/AIDS의 기초', 질병관리청, 2011

가. HIV와 에이즈의 역사, 정의, 원인체

1) 에이즈 발견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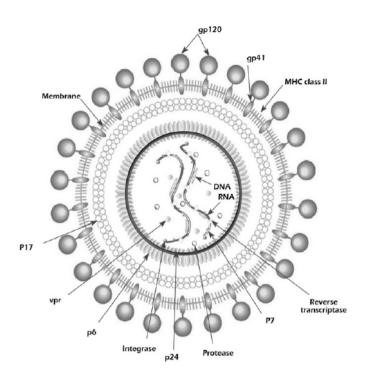
-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에이즈)는 1981년 미국 질병 통제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동성애자 집단에서 폐포자충폐렴과 카포시 육종과 같은 질환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에서 확인된 첫 번째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1975년부터 1981년 사이 발견된 면역저하 환자들은 모두 이성애 여성이었다.
-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고는 1982년 10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1년에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보고된 사례들과 이를 인용한 미국 일간지의 기사로 인해 에이즈는 동성애자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초기에 에이즈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 특히 많은 성상대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면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체가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수혈을 받은 혈우병 환자와 주사용 마약 사용자 (injection drug users, IDUs)에게서 에이즈 사례가 보고되면서 혈액이나 정액과 같은 체액을 통해 에이즈의 원인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주사용 마약 사용자의 여성 성상대자에게서 에이즈 발생 사례가 2건 보고되면서 에이즈의 원인체가 남성에서 남성뿐 아니라 남성에서 여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983년 중앙아프리카에서 보고된 대다수의 에이즈 사례도 이성애자에서 발생한 사례였다.
- 에이즈의 정확한 원인체가 규명되기 전 에이즈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과 루머가 존재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가 원인일 것이라는 학설, poppers라 불리는 환각제와 관련이 있다는 학설, 남성의 장 내에 정액이 노출될 때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학설, 그리고 동성애나 매매춘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이야기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1984년 Montagnier 등이 환자의 림프절에서 레트로바이러스를 분리함으로써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국제바이러스분류학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라고 명명되었다.

2) HIV vs. 에이즈

- 에이즈는 우리말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며 HIV 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HIV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기능 중 세포성 면역에 관계되는 CD4+ T 림프구가 주로 파괴된다.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후 인체 방어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 등에 의해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 흔히 HIV 감염과 에이즈를 혼동하는데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넓게는 병원체 보유자, 양성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져 기회 감염 또는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한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나 증상이 없는 HIV 감염인 모두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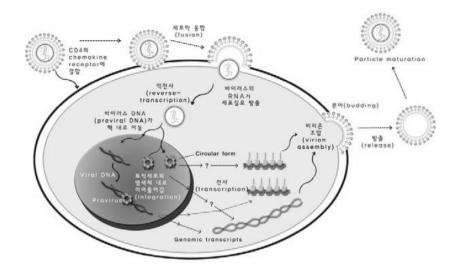
3) HIV의 형태, 유형 및 증식과정

- HIV는 인간레트로바이러스과(Retroviridae)의 렌티바이러스아과(Lentivirus)에 속한다. HIV는 single-stranded, positive sense, enveloped RNA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 입자는 외피 단백질인 gp120 과 gp41 로 구성된 외부돌기들을 표면에 갖고 있는 20면체 모양이다. 바이러스 외피의 안쪽은 기질단백인 p17로 덮여 있고 더 안쪽은 p24가 핵심 단백질로 뉴클레오캡시드(nucleocapsid) 를 형성하고 있다. 뉴클레오캡시드로 둘러싸인 바이러스입자의 핵심부에는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 통합효소(integrase), 단백분해효소(protease) 등 바이러스 효소들이 바이러스 유전체와 연합되어 있다〈그림 4〉.
- HIV는 HIV-1과 HIV-2의 두 가지가 있다. HIV-1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주된 바이러스이며 M(major) 그룹, O(outlier) 그룹, N 그룹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M그룹이 주로 발견되는 그룹이며 env유전자의 염기서열에 따라 9 개의 아형(A, B, C, D, F, G, H, J, K) 로 나누어진다. 국내에서는 B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V-2는 서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HIV-1과 약 40% 정도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보이며 HIV-1 의 vpu 대신 vpx 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HIV-2는 HIV-1과 동일한 증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HIV-1에 비해 느리게 전파되고 진행 또한 느리다.



〈그림 4〉 HIV의 구조

● HIV의 증식과정은 〈그림 5〉과 같다. ① HIV가 표적세포에 결합하고 바이러스의 막과 표적세포의 막이 서로 융합(fusion) 한다. 현재 사용 중인 HIV 항바이러스제 중 융합 억제제(fusion inhibitor) 는 이 단계를 차단한다. ② HIV가 세포 내로 침입하면서 바이러스의 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③ 바이러스의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 tase)가 바이러스 RNA를 주형으로 DNA를 만든다. 현재 사용 중인 HIV 항바이러스제 중 역전사효소 억제제(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는 이 단계를 치단한다. ④ 바이러스 DNA(proviral DNA)는 표적세포의 핵 내로 들어 가서 통합효소(integrase) 염색체 DNA에 끼어들어간다. ⑤ 표적세포의 염색체에 끼어들어간 바이러스 DNA는 세포가 활성화되면 RNA 중합효소(R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mRNA로 전사(transcription) 되고 바이러스의 단백으로 번역(translation) 된다. ⑥ 생산된 바이러스 단백은 단백분해효소(protease)에 의해 절단되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이 된다. 현재 사용 중인 HIV 항바이러스제 중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protease inhibitor)는 이 단계를 차단한다. ⑦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RNA와 바이러스 단백은 함께 모여 표적세포막을 탈출하면서 숙주세포를 파괴한다.



〈그림 5〉 HIV의 증식과정

4) HIV 감염 분류 체계

● HIV 감염의 분류 및 에이즈 정의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199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국 CDC의 분류체계이다.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HIV에 감염된 청소년과 성인을 CD4+ T 림프구의 수와 임상양상에 따라 각각 3가지 범주로나누어 총 9가지 상태로 표시하고 있다⟨표 6⟩.

	임상 분류		
CD4+ T 림프구 수	A 무증상, 지속적 전신 림프절병, 또는 급성 HIV감염증	B A 또는 C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	C '에이즈 정의질환'에 합당한 상태
1) ≥500/μl 2) 200-499/μl 3) ⟨200/μl	A1 A2 A3*	B1 B2 B3*	ದ* ಜ* ಜ*

〈표 6〉미국 CDC의 HIV 감염 분류체계

● 미국 CDC의 HIV 감염 분류체계에 의하면 HIV 감염인에서 증상에 관계없이 CD4+ T 림프구 수가 200/ℓℓ 미만이거나 또는 '에이즈 정의질환'에 합당한 상태인 경우를 에이즈 환자로 분류한다. 즉, 〈표 6〉의 A3, B3, C1~3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이즈 환자로 분류된다. 에이즈 정의 질환(에이즈 Surveillance Case Definition)은 〈표 7〉에 열거한 질환들이 해당된다.

^{*} 굵은표시가 에이즈 환자에 해당됨

^{**} 임상 분류 중 B에 해당되는 임상양상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A로 재분류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C에서 B로 재분류될 수도 없다.

〈표 7〉에이즈 정의질환

- 식도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의 칸디다 감염증
- 침습성 자궁경부암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폐외 크립토콕쿠스병
- 1개월 이상의 설사를 동반한 크립토스포리디움병
-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간 비장 림프절은 제외)
- 단순포진 감염: 1개월 이상의 만성 궤양 또는 기관지염, 폐렴, 식도염
- 파종성 또는 폐외 히스토플라스마증
- 1개월 이상의 설사를 동반한 아이소스포라증
- 카포시 육종
- 원발성 뇌 림프종
- 결핵균 감염(폐결핵 또는 폐외 결핵)
-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파종성 또는 폐외 감염)
- 노카르디아증
- 폐포자충 폐렴
- 재발성 세균성 폐렴(1년에 2회 이상)
- 진행성 다초점점백색질뇌증
- 재발하는 살모넬라 패혈증
- 내부 장기의 톡소포자충증
- 장외 분선충증
- HIV 뇌병증
- 전신성 소모 증후군: 이유 없이 기준치의 10% 이상의 체중감소와 하루 2회 이상의 만성 설사가 30 일 이상 있는 경우 또는 만성 쇠약감과 30일 이상 원인불명의 발열이 있는 경우

나. HIV 감염 경로

HIV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HIV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 흉수나 뇌척수액에는 적은 양이지만 HIV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눈물, 땀, 침, 소변, 토시물 같은 다른 종류의 체액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바이러스가들어 있지 않다. 둘째, HIV가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HIV가 질이나 직장의 점막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거나 주사비늘을 통해 혈관 속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으로 인해 벗겨진 피부의 틈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 등을 통해 혈관에 침입해야만 감염이 이루어진다.

HIV의 주된 감염 경로에는 감염자와의 성 접촉,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모자간의 수직감염 등이 있으며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 사용 및 의료인의 직업적인 노출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1) 성 관계를 통한 감염

- HIV 감염인과의 성 접촉에 의한 경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파 방식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간의 성 접촉이 주를 이루나 유럽, 미국 등에서는 동성간의 성 접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HIV는 감염된 사람의 정액, 질분비물, 혈액 등에 존재하며 이와 같은 체액이 성관계 중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감염이 일어난다.
- 성별로 볼 때, 적절하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남자에서 여자로 전파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HIV 감염인과 성 관계를 갖는 경우 보통 1회 성 관계 시 HIV가 전파될 확률은 0.04~1.38%이며 폭력에 의한 성 관계 시 확률은 1%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 HIV에 오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 받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또한 감염인의 혈액을 원료로 생산된 혈청이나 혈액제제를 투여 받는 경우 역시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헌혈된 모든 혈액에 대해서 사전에 HIV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을 통한 HIV 감염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만 HIV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 받는 경우 감염될 확률은 90-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 감마글로불린,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혈장 추출 B형 간염백신 등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수직감염

- 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직감염이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및 소아의 HIV 감염 경로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직감염은 임신 중이나 분만 중에도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전파되는 비율은 25-30% 정도이다. 수직감염의 약 92%는 임신 후반 2개월 동안과 출산 시에 일어나고 그 중 약 65%는 출산 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분만 후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된 산모는 모유수유를 금해야 한다. 수직감염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모체에게 에이즈 증상이 있는 경우, CD4+ T 림프구 수가 적은 경우,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경우, 조기양막 파열, 융모양막염이 있는 경우, 질식분만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임신한 상태에서 HIV에 감염되는 경우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임신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태아로 감염되기 더 쉽다.

4)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 HIV에 오염된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오염된 주사기를 1회 같이 사용하였을 때 감염될 확률은 0.5-1% 이다.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면서 감염인에게 시술하였던 바늘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비감염인 에게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도 감염이 유발될 수 있다.
- 의료인이나 HIV를 연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HIV에 오염된 바늘에 한 번 찔리는 경우 감염되는 비율은 0.3%이며, 오염된 혈액이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는 비율은 0.09% 정도이다. 오염된 바늘에 찔리는 경우 감염될 위험성은 노출된 혈액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특히 찔린 바늘이 감염인의 혈관 내에 들어 있던 경우, 바늘에 묻어 있는 혈액양이 눈에 보이는 정도인 경우, 찔린 상처가 깊을 경우, 환자가 진행된 에이즈 상태일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드물기는 하나 HIV에 감염된 의료인으로부터 환자에게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5) 기 타

● HIV 감염인과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하여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HIV 감염인이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을 한다고 하여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모기나 벌레를 매개로 하여 감염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

〈표 8〉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 몸을 가까이 대고 앉는 경우
-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 가벼운 키스
- 머리빗, 침대 시트, 수건,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
-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목욕이나 샤워를 같이 하는 경우
-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 HV 감염인을 육체적으로 돌본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주의만을 한다면 돌보는 사람이 감염 될 위험은 별로 없다.

다. HIV 예방

1) 성 관계에 의한 감염 예방

- 성 관계를 통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HIV 전파의 위험이 높은 고 위험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HIV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성 전파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한 콘돔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콘돔 사용을 장려하여 HIV 유병률 및 다른 성 전파 질환의 발생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콘돔 사용 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하며 특히 사정 전에 분비되는 분비물도 HIV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 관계 시작 시 발기된 상태에서부터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콘돔 착용 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셀린이나 식용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라텍스 콘돔을 부식시킬 수 있다. 또한 성 관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매번 콘돔을 새로 착용해야 하며 콘돔을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콘돔의 사용이 HIV 감염을 100% 예방해 줄 수는 없다. 대부분의 콘돔 사용 시 실패는 콘돔의 파손 또는 잠시 동안이라도 성교 동안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등 콘돔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 또한 콘돔을 불규칙하게 사용하거나 HIV 감염자의 상태가 진행된 상태였던 경우, 비감염자의 생식기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HIV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 HIV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우 노출 후 예방적 화학요법을 이용하여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노출 후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선 노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조시하고 HIV 검사 및 다른 성 전파 질환의 동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노출원이 HIV 감염자인 경우 가능한 빨리, 72 시간 내에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적 화학요법은 고위험행위 후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유되지 않으며 HIV 감염의고위험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하지 않는다. 예방적 화학요법의치료 약제에는 zidovudine, lamivudine 등을 이용한 병합요법이 이용되며 경우에따라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병용이 필요할 수 있다.

2) 수혈 및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예방

● 수혈로 인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공여 받은 혈액에 대한 HIV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항체미형성기의 경우 실제 HIV에 오염되어도 검사 결과 음성의 결과를 보일 수 있어 2005년부터 항원 검출을 위한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HIV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진단 목적으로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혈자에게 HIV 검사 결과를 알려주던 제도는 1997년도에 폐지되었다. 이는 헌혈을 손쉬운 HIV 검사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HIV 감염 여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직감염의 예방

- 부부 중 누구라도 HIV에 감염된 상태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 우선 전문의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항바이러스제의 투약, 임신 가능성, 그리고 적절한 임신 시기 등에 대해 상담 받도록 해야 한다. 임신 중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모체의 낮은 바이러스 농도와 높은 면역세포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수직감염 예방에 중요하다.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임신 14주부터 시작하여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임신 전에 이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신 1기의 기형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신 14주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복용을 계속할 지, 중단할 지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HIV 감염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38주 경에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여 감염 가능성을 낮춰주어야 한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로 임신부의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측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연분만이 고려될 수도 있다. 출산 시 진통이 시작된 후 정맥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신생아는 6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야 한다. 또한 모유 수유도 감염경로 중 하나이므로,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경우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어머니로부터 받은 항체로 인해 HIV 항체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사라지고 아기의 면역시스템이 활동을 하여 스스로의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생후 18개월까지는 HIV 감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4) 직업적인 노출의 예방

- 직업에 의한 HIV 감염의 대다수는 주사비늘에 의한 사고로 HIV에 오염된 비늘이 피부를 관통하는 상처를 유발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주사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HIV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CDC에서는 HIV를 포함하여 혈액매개 미생물로부터 의료종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의지침을 준수하면 혈액 및 체액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HIV에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여도 HIV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HIV에 노출된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HIV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상처가 깊은 경우 깨끗하게 씻은 후 봉합해야 하며 상처 부위를 절개하거나 도려낼 필요는 없다. 이후 노출의 정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 받아야 한다. 노출원이 HIV 양성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면 예방적 화학요법이 필요하다. 노출 후 시행하는 예방적 화학요법은 가능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4주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약제의 선택은 노출의 정도, 노출원의 바이러스 감수성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전문 의료인에게 자문하여 결정해야 한다. HIV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출 직후, 노출된 날로부터 6주, 3개월, 6개월에 항체 추적 검사를 실시하여 양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HIV와 HCV에 동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6개월 이후까지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라. HIV 감염의 자연사

HIV 감염의 임상 경과는 대개 서서히 진행된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성인의 경우 HIV 에 감염된 후 에이즈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병의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일부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CD4+ T 림프구 수가 200/4ℓ 미만까지 빠르게 감소되기도 하고 다른

일부 환자들은 감염 후 8년 이상 적절한 치료 없이 CD4+ T 림프구 수가 500/ 세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도 한다. 치료를 받지 않은 HIV 감염인의 자연 경과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급성 감염기, 임상적 잠복기, 증상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별로 특징적인 증상 및 증후를 알아두면 HIV 감염인의 발견이나 치료, 예후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급성 감염기 (급성 HIV 증후군)

● HIV 감염 직후 나타나는 급성 감염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그러나 처음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50-70%는 감염 후 약 3~4주 이내에 발열,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메스꺼움, 설사, 복통 및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표 9⟩.

전 신	신경계	피 부
신경계	수막염/뇌염	홍반성 반구진성 발진
피부	말초신경염	점막 피부궤양
발열	안면마비	
인두통	인지장애	
림프절종대	척수병증	
두통 / 안와후부 통증		
관절통/근육통		
무력감/권태감		
식욕부진/체중감소		
구역 / 구토 / 설사		

〈표 9〉HIV 감염 후 급성 감염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임상양상

● 그러나 이러한 급성감염의 증상은 모든 HIV 감염인이 반드시 겪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병에 걸리더라도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들 증상을 근거로 HIV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대개의 급성기 감염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약 4주 후에 자연히 호전된다. 따라서 초기 HIV 감염인은 단순히 몸살 감기에 걸렸다가 좋아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2) 무증상기

● HIV 감염인은 급성 감염기의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평균적으로 약 8~10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정상 생활을 하게 된다. 일부 HIV 감염인은 특별한 원인 없이 림프절이 커진 상태가 지속되는 지속성 전신 림프절병증을 경험하기도

- 한다. 그러나 림프절 비대는 대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 임상적 잠복기 동안 느끼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HIV 는 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증식하기 때문에 몸 안의 면역체계는 서서히 파괴되어 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 특히 HIV 감염인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은 더욱 커진다. HIV 감염 후병이 진행되는 속도는 혈액 내 HIV 농도에 비례한다. 즉, 혈액 내 HIV 농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증상기로 진행된다. HIV 감염인의 CD4+ T 림프구는 매년 평균 50/mm³ 정도씩 감소하며 HIV 농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르게 감소된다.

3) 증상기

- HIV 감염인은 수년 간의 무증상기 후 에이즈로 이행되기 전에 몇 가지 전구 증상을 느끼는데 이 시기를 초기 증상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 식은 땀, 피로, 두통, 체중감소, 식욕부진, 불면증,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좀 더 병이 진행하면 면역력이 더욱 떨어져 아구창, 구강 백반, 칸디다질염, 골반감염, 그리고 다양한 피부병들이 나타난다. 이후 HIV 감염인은 CD4+ T 림프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기회감염 또는 악성 종양의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 특히 CD4+ T 림프구의 수가 200/ℓℓ 미만으로 감소하면 면역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합병증 (기회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감염의 원인균으로 정상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각종 세균, 결핵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및 원충이 문제가 된다. 또한 카포시 육종, 악성 림프종과 같은 악성 종양 (암)도 생길 수 있다. HIV 감염이 진행되면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 그러나 최근 HIV에 대한 강력한 항바이러스제 병합치료와 기회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요법이 시행되면서 기회감염 등 합병증의 빈도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의 수명도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잘 받게되는 경우 정상적인 수명 연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3 │ HIV/AIDS 진단 및 치료

※ 발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HIV/AIDS의 기초', 질병관리청, 2011 '국내 HIV 감염인의 HIV/AIDS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 권고안', 질병관리청, 2014

가. HIV 진단 검사의 종류 및 방법

- 에이즈 검사, 즉, HIV 진단 검사는 체내에 HIV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외모나 증상으로는 HIV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HIV 진단 검사를 반드시 해 보아야 한다. HIV 진단 검사에는 체내 HIV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직접 검사법과 HIV 감염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HIV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HIV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에는 항원검사법, 유전자검출검사법, 바이러스 배양과 같은 방법이 있다. HIV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에는 효소면역시험법(Enzyme Immunoassay, EIA), 웨스턴블롯(Western Blot, WB)과 같은 방법이 있다.
- HIV 감염의 진단은 한 번의 검사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선별검사와 확인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효소면역시험법(EIA)을 1차 선별검사로 사용하며 선별검사 상 양성반응인 경우에 한해 웨스턴블롯을 이용한 확인검사를 시행하다

1) HIV 항체 검사법

1-1) 효소면역시험법(EIA 또는 ELISA)

● 효소면역시험법(EIA 또는 ELISA)은 혈액 내 HIV 항체에 효소를 결합시켜 항원-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효소면역시험법은 비교적 검사방법이 쉽고 많은 양의 검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으며 다른 검사법에 비해 비교적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검사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현재는 EIA 기반의 검사방법 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진단시약에 적용되고 있다. 효소면역시험법을 이용하는 검사법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근에 사용되는 효소면역시험법은 99%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간이검사법(신속검사법, Rapid test)

● 효소면역시험법은 비교적 쉽고 높은 민감도를 보이기는 하나 숙련된 기술과 검사장비를 필요로 하며 검사 결과를 얻는 데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욱 쉽고 빠른 검사법의 개발이 요구되었고 면역크로마토그라피와 같은 간이 검사법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 검체로는 혈액이나 구강점막액을 이용한다. 간이 검사법은 20분 정도의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고 특수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이검사법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시행하여 최종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이 검사법은 응급실이나 HIV 노출 후 2시간 이내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다.

1-3) 웨스턴블롯(Western blot, WB)

- HIV 검사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확인검사이다. HIV 항원을 전기영동기술을 이용해 분리하여 그 크기(분자량)에 따라 배열한 후 피험자의 혈액을 반응시켜 각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HIV 항원은 p24, gp41, gp120/160 등이 이용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으로는 이들 중 최소 2개 이상의 항원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양성 판정시 선별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비감염인의혈청임에도 한 개 이상의 항원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웨스턴블롯은결과에 따라 '양성', '음성', 그리고 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하지 못하는 '미결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2주∼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아야 한다.
- 웨스턴블롯은 특이도는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대량의 검체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웨스턴블롯은 다른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을 위한 최종검사법으로만 사용된다.

2) 직접적인 HIV 검사법

2-1) HIV 항원 검사법

● HIV 항원 검사법은 HIV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대개 p24 항원을 검사한다. 그러나 p24 항원은 HIV에 감염된 후 약 45일 정도까지만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독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감염 취약군에서 감염 초기(항체미형성기)에 항체검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결과가음성일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부가적인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2-2) 유전자검출검사법

- 유전자검출검사법은 HIV 유전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다. 이 검사 방법은 아주 적은 양의 유전물질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는 매우 높으나, 검사 중 실험실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위양성이 있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유전자검출검사법은 HIV 항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웨스턴블롯 결과가 '미결정'인 검체의 추가 검사, 신생아 감염의 진단, HIV 감염 초기에 진단,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변이 확인 등에 이용된다. 또한 PCR을 이용하여 혈액 내 HIV 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HIV 감염인의 치료 효과 판정 및 감시에 이용한다.

2-3) HIV 배양

● HIV를 혈액이나 일부 체액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배양할 수도 있다.

나. HIV/AIDS 치료의 원칙

권고의 강도 및 근거 수준

- 권고의 강도
- A: 권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 B: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할 정도의 근거는 있다.
- C: 권장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
- 근거 수준
 - 1: 하나 이상의 무작위 대조연구의 근거가 있다.
 - Ⅱ: 무작위 연구는 아니지만 잘 고안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가 있다.
 - Ⅲ: 임상 경험이나 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한 권위자들의 견해가 있다.
- CD4+ T 세포수와 무관하게 모든 HIV 감염인에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는가?
 - 1) CD4+ T 세포수와 무관하게 모든 HIV 감염인에서 사망률과 질병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A-I).
 - 2)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은 HIV 감염인에서 타인으로의 HIV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고된다(A-I).

- HIV 감염인이 초기 방문하였을 때 시행해야 할 실험실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는?
 - CD4+ T 세포 수와 백분율, 혈장 HI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한다(A-I). 치료를 요하는 기회감염에 감염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급성기 치료 후 안정화되면 CD4+ T 세포 수, 혈장 HIV RNA 정량검사를 반복한다(A-II).
 - 백혈구 백분율(differential count)을 포함한 일반혈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CBC)와 혈당, 지질, 간기능, 신장기능, 칼슘, 인 등을 포함한 일반화학 검사를 시행한다(A-III).
 - A형 간염(B-III), B형 간염(A-III), C형 간염(A-III)에 대한 혈청학적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 매독(A-II)과 톡소포자충(B-III)에 대한 선별검사를 한다.
 - 결핵을 선별하기 위해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또는 interfereon (IFN)-g release assay를 시행하거나(A-I),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한다(A-III). 진행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서는 TST가 음성이더라도 CD4+ T 세포 수가 200/교 이상으로 회복된 후 재검을 권장한다(A-III).
 - 임질, 클라미디아 등 기타 성매개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고려한다(B-II).
 - 초기 내원 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해 유전형 약제내성검사 (genotypic test)를 시행해 전파내성을 평가해야 한다(A-III).
- 초기 평가 후에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관찰중인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서 질병진행 상태 및 기회감염과 관련된 실험실 검사의 시행주기는?
 -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을 시행 받지 않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서 CD4+ T세포 수와 혈장 HIV RNA 정량검사는 치료 시작시점 결정을위해서 12-24주 간격으로 추적 조사해야 한다(A-I). 또한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은 24-4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 매독, 결핵 피부반응 검사, 톡소포자충 항체, 거대세포바이러스항체, 바이러스성 간염(A, B, C형) 검사는 초기 방문 시에 음성이라면 48주 간격으로 추적 조사해야 한다(A-III).
 - 백혈구백분율을 포함한 일반혈액검사는 12-24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초기 내원 시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면 일반화학검사와 간기능검사는 24-48주 간격, 공복혈당과 공복지질검사는 28-48주 간격으로 추적 조사한다.

4 \ HIV 항체 양성자에게 주는 조언

가. HIV 항체 양성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HIV 항체 검사상 양성이라는 것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HIV 감염인(즉, HIV 항체양성자)과 에이즈 환자는 같은 말이 아니며, HIV 감염인 중 일부가 에이즈환자로 발전한다. HIV의 학명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로서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인이나 에이즈 항체양성자, HIV 항체양성자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HV 항체 양성자 중 대부분은 적어도 수년 내에는 에이즈 환자로 발전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지 5년이 지나면 100명 중 10~30명 정도가에이즈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HIV에 감염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에이즈로 발전되지 않을 확률이 70~90%나 된다. 그러나 건강하고에이즈로 발전되지 않았어도 항상 남에게 HIV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다

나. 남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파시키지 않으려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3가지 뿐이다. 첫째는 성 접촉인데 이는 질 성교 및 구강, 항문성교 등이 포함된다. 단 가벼운 키스나 포옹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혈액을 통한 전파로 감염인의 혈액이 상처를 통하여 들어 가거나, 직접 감염인의 피를 수혈받은 경우, 감염인의 피가 묻어 있는 주사기로 주사를 맞았을 때 등이다. 세 번째는 감염된 여성이 출산했을 때 어머니가 아기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이때 예방적 화학요법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확률이 30% 정도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즉 성생활, 혈액이 노출되는 경우, 임신 등에 있어 주의하면 된다.

다. 앞으로 에이즈로 진전될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가?

사람마다 에이즈로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기적으로 CD4+ T 림프구 수를 검사하면 대략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3~6개월마다 검사하고 있다.

진행 속도에 관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으로 바이러스 양이 높을수록 빨리 진행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사람은 치료를 더 빨리 받는 것이 좋다.

라, 에이즈가 발병하면 모두 사망하는가? 치료약은 없는가?

아직 완치약은 없지만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약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은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현재는 완치약이 없지만 혈압 조절이나 당뇨 조절을 잘하면 후유증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에이즈라고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말기 암으로 사망하는 것에 비하면 에이즈는 현재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치료를 충실히 받는다면 에이즈로 사망하는 일은 없다.

마. 앞으로 계속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유흥접객업소 등)에는 종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직업에 취업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본인 스스로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바. 감염인을 격리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격리 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격리보호 근거 법령 조항도 '99. 2. 8. 삭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격리조치는 없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격리시설 자체도 없다.

다만, 감염인 중 생활이 어렵거나 단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없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가?

앞으로는 보건소 에이즈담당자를 통해 상담 및 교육, 검사, 진료기관 연계, 에이즈와 관련된 진료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소이전이나, 이민 시에는 보건소에 연락 해야 한다.

아. HIV 감염인으로서의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궈리로서

- 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3조제4항).
- ii) 감염인에 대한 신상비밀 관련자 즉, 감염인 보호·지원 업무종사자, 진단· 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법 제7조).

◎ 의무로서

- i)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법 제3조제3항).
- ii) 감염경로와 성 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10조).
- iii)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법 제19조).
- iv)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법 제18조).

자. 외국여행이나 이민에 제한은 없는가?

장기여행 및 이민의 경우 국가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 이민 대상국의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앞으로 성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 생활시 중요한 원칙은 항상 정확하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언제나 성행위시 시작부터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성생활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접촉으로 HIV가 전파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수술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감염인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1. 길라잡이 개요

1. 개요와 목적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면역결핍증후군)가 처음 발견되었던 1980년대에는 해당 질병을 죽음의 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HIV/AIDS는 의과학의 발전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현재는 진단과 치료법이 발전하여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HIV 감염인이 조기에 진단되어 항레트로바이러스제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을 유지하여 비감염인들과 같은 여명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는 전파시킬 위험이 현저히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착화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HIV 감염인은여전히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변에 질병을 알리지도 못하고,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며,병을 키운 상태로 늦게 서야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7년 19개 국가에서 시행된 UNAIDS 낙인조사에 의하면조사에 응한 HIV 감염인의 25%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였으며,높은수준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HIV 감염인의 경우 비감염인에 비해 치료가 늦어지는경우가 2.4배 더 많았습니다.1) 결과적으로 HIV 감염인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고,타인에게도 HIV 전파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본 길라잡이는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과 이에 따른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들이 차별 없이 진료 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HIV와 관련된 그릇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 가는데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eople Living With HIV Stigma Index (http://www.stigmaindex.org/).
 Gesesew HA et al.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HIV related stigma and late presentation for HIV/AIDS care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12(3): e0173928.(2017)

2. 국내·외 HIV 발생현황(매년 1,000명 정도의 신규 감염인이 신고 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2020년 3천7백만 명의 HIV 감염인이 생존하고 있고, 신규감염은 1백5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 해 1,016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는데 이중 818명(80.5%)이 내국인이었고, 198명(19.5%)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000명 정도가 신고 되고 있으며, 이중 남성이 95.2%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의 경우는 남성이 72.9%였으며 20~30대가 3/4을 차지하였습니다. 내국인 생존 감염인 수는 2020년 기준 14,538명(10만 명당 28.0명)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감염인의 46.9%로 노년층의 HIV 감염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HIV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서 더 이상 급성 합병증 없이 만성질환으로 관리하여 비감염인과 비슷한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면역세포수(CD4+ T 세포) 200/μℓ 미만의 낮은 면역 상태로 처음 발견되는 감염인이 11%에 달하고 있어, 검사를 받거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상담받기 어려운 사회적, 보건 의료적 장벽이 존재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연도별 신규 HIV 감염인 수, 1985~2020

3. 길라잡이 활용범위

본 길라잡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보건소 공무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요양시설의 돌봄 제공자 및 기타 관련 종사자(이하 의료 제공자: health-care provider)들이 HIV 감염인 등을 상담 또는 진료 시 활용하기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4. 용어설명

Ⅱ 표준주의

- 환자의 감염 의심 또는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감염관리원칙입니다. 표준주의 원칙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부터 의료진의 손상된 피부 및 점막접촉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구성요소: 손 위생, 노출 우려 시의 적절한 장갑/ 가운/ 마스크 착용, 호흡기/ 기침예절, 찔림/베임 사고 예방, 안전한 주사 실무, 의료 기구의 소독과 멸균, 환경의 청소와 오염제거, 린넨 관리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 감염성 질환의 검사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불가능하며, 환자 진료 당시 결과가 음성이라도 위음성 가능성(예: window period)이 있으므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주의하는 것보다는 모든 검체가 오염되었다는 전제하에 진료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에 더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위입니다.

② 혈액매개감염

●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질환으로 HIV,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혈액 및 체액 취급 시 표준주의 원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HIV 감염인과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면역결핍증후군) 환자

- HIV 감염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²)에 감염 되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
- AIDS(후천면역결핍증후군)환자: HIV 감염인 중 CD4+ T 세포의 수치가 200/μl
 미만으로 감소되었거나 기회감염증 등 AIDS 관련 증상이 나타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로, 후천성면역결핍 증후군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으로 사용되나 본 길라잡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상의 명칭을 이용하였음. 또한 법령상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감염인이라 부르나 본 길라잡이에서는 HIV 감염인으로 통일함.

※ HIV감염인과 AIDS환자는 공통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강상태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최근 조기발견과 치료 약제의 개선으로 대다수의 HIV 감염인이 AIDS로 진단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전히 10명 중 1명은 CD4+ T 세포의 수치가 200/씨 미만의 낮은 면역 상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AIDS로 늦게 진단되어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HIV 관련 차별

● HIV 감염인, 취약군(동성 또는 양성애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정맥약물 사용자, 건강진단대상자³),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하여 개인에 대하여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⁴입니다.

II. 모든 의료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HIV 상식

1. HIV란 무엇이며 어떻게 전파되나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HIV의 특성〉

- ① 피막바이러스로 인체 밖으로 나오면 바로 비활성화 되거나 사멸함
- ② 체액에 존재하더라도 마르면 사멸함
- ③ 염소계소독제에 취약하여 수돗물의 염소농도에서 비활성화 되고, 희석되면 감염력을 상실함

³⁾ 건강진단대상자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개정 2021.7.19.>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게 되는 다음 대상군을 포함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⁴⁾ HIV 관련 낙인이란 HIV 감염인과 그들의 가족, 취약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감정, 태도에 의해 꼬리표를 붙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주어 결과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상실하거나 차별 당하게 하는 사회적 현상

2. 치료현황(HIV질환이 죽음의 병에서 만성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변했음)

HIV 감염은 인류가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시기에는 조기발견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예방방법이 없어 결국 AIDS로 진행하고 사망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과학의 발전으로 적절한 때에 진단되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HIV 감염인은 AIDS로 진행되지 않고, 비감염인들과 같은 수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이 확진되면 면역 상태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외래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 시작후 수개월 만에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미검출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는 HIV 감염인의 진료는 심각한 면역저하로 인한 AIDS와 관련된 감염성 기회 질환, 암 발생, 또는 HIV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점차 HIV 질환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고, 비감염인들과 같은 수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만성 동반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일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받는 경우가 더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3. 전파(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음)

U=U (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혈중미검출인 경우 전파불가)5)

2017년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연구(HPTN 052 trial, PARTNER 1, 2 study, Opposites Attract study)결과, 혈액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성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혈액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과 그들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 접촉시 감염사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엔에이즈기구(UNAIDS)에서는 약을 잘 복용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인은 성 접촉을 통한 감염력이 없다고 선언하였고, (U=U: Undetectable= Untransmittable, 미검출=전파불가, 의역) 미국과 영국 등 모든 국가에서 해당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HIV 감염인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⁵⁾ U=U taking off in 2017. Lancet HIV. 2017 Nov;4(11):e475. https://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featurestories/2018/july/undetectable-untransmittable

Ⅲ,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정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⁶⁾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3.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 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5.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6.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 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시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 해야 합니다.
-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6) 「}의사윤리지침」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 ◎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1.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ww.kdca.go.kr
 - 2. 대한에이즈학회 홈페이지 www.kosaids.or.kr
 - 3.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홈페이지 www.koshic.org

길라잡이 해설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적 배경, 성정체성,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근거)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조 2항, 보건의료기본법 10조(건강권)
- (설명)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2조 2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 10조(건강권) 부분에서"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⁶⁾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 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5조(보건의료인의 책임),「의료법」제15조 제1항(진료거부금지등),「장애인차별금지법」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의사윤리지침」제5조(공정한 의료의 제공), 제14조(진료거부금지 등), 미국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title II, anti-disability act (ADA)⁷⁾, 미국의사협회 Code of Medical Ethics Opinion 1.1.2.영국 equality act 2010

- (설명)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정한 2017년 「의사윤리지침」 제5조에서는 공정한 의료의 제공, 제14조에서 진료거부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8)
 - 대부분의 HIV 감염인이 HIV 질환 자체에 대해서는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지만 그 외 에는 일반 진료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므로이에 대하여 다른 환자의 진료와 똑같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외래 진료과정(예. 위장질환이나 근골격계 통증과 같은 이유로일반 병원에 방문한 건강한 HIV 감염인)에서 진료순서를 미루거나 별도의 진료장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CT나 MRI 등의 일반적 검사의 경우에도 순서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HIV 감염인의 입원 시에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합니다. 입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개인의 질병을 입원 시나 입원 중 다른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 혈액매개병원체(HBV, HCV, HIV 등) 보유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혈액매개병원체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한 수술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병원에서의 감염관리절차에 따라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가장 나중에 수술 또는 시술 처치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 시술 시간 또는 순서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IV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령 결핵 등)를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활동성 폐결핵, 수두와 같이 공기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면 해당 주의 지침을 따라 마스크 착용, 음압 격리실 입원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⁷⁾ HIV/AIDS, blindness or low vision, cancer, deafness, diabetes, heart diseas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mental illness가 section 504의 범주에 포함됨.

^{8) 「}의사윤리지침」제5조(공정한 의료제공) ①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 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3.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 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설명) 검사, 검진을 통하여 HIV 감염인이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치료로 이어지면서 예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IV는 아직까지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존재 하므로, HIV 선별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온 경우 위양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확진상태가 아니며,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검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노출로부터 6주까지 위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며 재검이 필요함과, 확인검사결과 HIV로 진단된 경우 조기 치료가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 예방 모두에 효과적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자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자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¹⁰⁾,「보건의료기본법」제13조(비밀 보장)¹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비밀누설금지)¹²⁾,「의사윤리지침」제17조(환자 비밀의 보호), 미국의사협회 Code of Medical Ethics Opinion 3.1.1

⁹⁾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¹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¹¹⁾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¹²⁾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③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 (설명) 「형법」,「의사윤리지침」 등에서 환자의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고,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심하여 특히, HIV/AIDS는 진단명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해 혈액매개 감염원, 접촉주의, 공기주의의 경우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알 수 있는 표식을 통하여 감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매개질환에 대하여 공통적인 약자 (예, S: standard precaution)를 채혈용 바코드나 EMR상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 등 병원 내부직원간의 공유방식을 정하고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HIV 감염의 경우 비감염인이 알아보거나 의심할 수 있는 형태의 표식을 침상이나 차트에 붙이게 되면 환자의 질병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HIV 감염인의 경우 접촉주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회용식기를 사용하거나
 식판에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개인용 식판을 따로 사용하거나, 비닐로 싸서
 내놓거나 별도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환자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근거) 「의사윤리지침」 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 (설명) 본 항목은 「의사윤리지침」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진료 시 감염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성행동이나 성적 지향 등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HIV 감염인들이 HIV 감염 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 타인에게 노출된 뒤 심각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해오고 있으므로 의료인들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동반된 성병 관리와 환자의 성적 지향 파악은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성적 지향과 성생활에 대해서 문진을 시행할 때에는 의사나 상담자는 의학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의 목표를 가지고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진해야 하며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6.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시와 다르게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수술 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거)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표준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생물학적유해인자 관리
- (설명) 임상현장에서 모든 환자의 혈액매개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검사시점에 반드시 양성검체가 확인되어 감염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1996년 미국의 감염관리 실무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 advisory committee, HICPAC)에서는 모든 환자의 진료에서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보호, 주사침 자상예방, 세척과 소독, 적절한 폐기물 관리, 주사안전 실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표준주의지침(Standard precaution)을 지키도록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중인 HIV 감염인은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미검출 상태로 주사침 자상노출 등으로 타인에 대한 감염 확률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감염여부를 모르는 초기에 바이러스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의 혈액을 오염원으로 간주하고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의료 환경에 충분히 안전하고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특별한 설명 없이 HIV와 같은 혈액매개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별도의 장갑이나 비닐가운 등을 착용하면 환자는 차별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와 동등하게 일상적인 진료절차로 HIV 감염인을 진료 해주시면 됩니다.
 -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시 날카로운 수술 도구로 인한 감염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HBV, HCV, HIV에 대하여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 공통 주의지침을 따라 찔림, 노출사고를 예방합니다. 만약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경피적 노출, 점막 노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을 위해 4주간의 노출 후 예방 약제를 투약 하여 의료진을 보호합니다. 국내에는 1985년 처음 환자가 신고 된 이후 의료 행위 중 HIV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근거) 「의사윤리지침」 제24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제26조(인권 보호 의무)
- (설명) HIV의 치료법이 발전하였고 만성질환화 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심하여 조기발견과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현장에서의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의료단체에서는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HIV 감염에 대한 이해,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의 낙인과 차별 감소를 위해 국가기관, 감염인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 1997)
- (설명) 국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자원을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책무를 가집니다.

Ⅳ.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1.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의 준수

모든 의료 환경에서 <u>환자의 감염상태와 상관없이</u>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의원에서 모든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종사자와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주의 원칙의 항목은

1)손 위생, 2)혈액이나 체액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마스크)의 착용, 3)기침예절, 4)자상사고 예방, 5)안전한 주사행위, 6)기구의 소독 멸균, 7)환경표면의 청소와 오염제거 8)린넨관리 등을 포함

1 손 위생

- ① 모든 환자의 접촉 전후에는 장갑의 착용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손 위생을 시행한다.
- ② 환자의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혈액이나 체액 접촉이 예측되는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그 외의 환자의 진찰, 돌봄 제공시에 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다.
- ③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즉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닦는다.

② 채혈 시의 장갑의 착용

- ① 모든 환자의 채혈 시 손위생과 장갑의 착용을 권고한다.
- ② 일상적으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혈자의 손에 베이거나 긁힌 상처, 피부염이 있으나 방수드레싱으로 덮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불안정하여 찔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 ③ 학생이나 숙련되지 않은 채혈자의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숙련이 될 때까지는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채혈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환자의 혈액, 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호가운, 마스크, 눈 보호를 위한 고글을 사용한다.
- ① 치과진료실, 수술실, 분만실, 내시경검사실, 응급실, 혈액 투석실에 비치하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한다.

4 주사침 자상사고의 예방

- ① 의식이 없거나 행동제어가 어려운 환자의 채혈 시 혼자서 채혈하지 않는다.
- ② 주사바늘은 분리하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용 후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바로 넣어 부리한다.
- ③ 주사바늘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할 경우는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기를 트레이에 놓고 한 손으로 주사기를 잡고 뚜껑에 넣는 scoop기법을 이용한다.
- ④ 손상성 폐기물 박스는 2/3 이상 채우지 않는다.
- ⑤ 찔림 가능성을 개선한 공학적으로 설계된 안전바늘(safety needle)의 사용을 권장한다.

5 환경의 관리

- 혈액이나 체액이 쏟아진 환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A 등록 소독제나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를 체액의 농도에 따라 1:10, 1:100 희석 농도를 사용하다.
- ① 소량(10mL미만)의 혈액이나 체액이 쏟아진 환경에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HBV, HIV 사멸력이 있음)를 이용하여 혈액이나 체액을 완전히 닦는다. 치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을 사용할 경우 염소계열 소독제를 1:100(소독제 원액 5% 기준. 유효염소 농도 0.05% 또는 500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② 다량 (10mL이상)이 쏟아진 경우는 먼저 흡수성이 있는 티슈나 일회용 타올 등으로 혈액이나 체액을 흡수시키고, 방수비닐에 넣어 폐기하여, 그 부위는 중간 수준 소독제(결핵 사멸력이 있는 소독제를 말하며, 소독제 제품 시험성적서 확인)를 이용해 혈액이나 체액을 완전히 닦도록 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염소계열 소독제를 1:10 (소독제 원액 5% 기준. 유효염소 농도0.5% 또는 5,000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혈액매개감염원 보유환자의 수술 시 찔림 노출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 시에는 환자측 보다는 의료진 측의 찔림 노출방지를 위해 혈액매개질환의 감염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지킵니다. 혈액이나 오염된 체액을 통해 전파가능 한 질환으로서 HBV, HCV, HIV뿐 아니라 말라리아, SFTS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의료행위 중 전파가 가능하여 이에 대하여 혈액매개감염원 (blood borne pathogen) 예방지침을 공통적으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산업안전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며 특히, 수술실에서 다음의 예방조치들을 숙지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13)

- ① 핸드프리 방법을 통해 날카로운 기구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 ② 트레이나 kidney basin(emesis basin) 등을 이용하여 중립구역(neutral zone)을 두어 날카로운 바늘이나 기구를 전달하도록 하고, 전달할 때는 이를 명확히 알려 안전하게 전달한다.
- ③ 스칼펠, 수술용 칼 등 날카로운 바늘이 수술 영역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수술자나 보조자에 의해 중립구역에 놓으면 스크립 간호사가 항상 즉시 견고한 용기(손상성 폐기물통)를 이용하여 폐기한다.
- ④ 봉합하는 동안 잡거나 수술 부위를 견인할 때 손을 사용하지 말고 기구를 이용한다.
- ⑤ 바늘을 다루거나 스칼펠을 제거할 때 기구를 이용한다.
- ⑥ 날카로운 바늘이나 기구는 반대쪽 손이나 보조자의 손에서 멀리 놓도록 한다.
- ① 날카로운 바늘은 봉합 타이 직전에 제거한다. 봉합 부위의 타이는 손가락이 아닌 기구를 이용한다.
- ⑧ 가능하다면 덜 침습적인 수술방법을 이용하고, 대안적 기구나 절차 즉, 전기소작, blunt-tipped needle(안전바늘),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가능한 불필요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의 사용을 없앴다.

¹³⁾ 영국 UK Health Departments 에서는 AIDS학회와 간염학회에서 공동으로 혈액매개질환의 의료 환경에서 전파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uidance for Clinical Health Care Workers: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with Blood-borne Viruses: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 Advisory Group on AIDS and the Advisory Group on Hepatitis)

- ⑨ 이중 장갑 사용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지 않지만, 글로브 안쪽으로 구멍이 생기는 경우를 6배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혹시 상처가 생겼을 때 전파를 매개하는 혈액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
- ⑩ 혈액과 피부접촉 위험 줄이기 위해 장갑의 천공이 의심되거나 인지할 경우 가능하다면 새로 스크럽을 하고 다시 장갑을 착용한다.
- ⑪ 장시간의 수술과정이라면 장갑이 천공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장갑을 교체한다.
- ② 출혈양이 많고 혈액 노출이 예측될 때는 방수 가운 또는 방수 커프, 슬리브가 있는 수술가운, 플라스틱 앞치마를 착용한다.
- ③ 발·다리가 오염될 수 있을시 (산과, 결석제거술 자세를 하는 경우) 방수되는 가운, 앞치마를 사용하여 다리를 가리고 방수 신발을 신도록 한다.
- ④ 웰링턴부츠나 종아리까지 오는 장화가 선호된다. Catch-basin (받이)가 있는 수술용 드랩이 발이나 다리의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⑤ 개인 보호구를 쓰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남성 의료종사자는 면도한 볼과 목의 보호를 위해 캡보다는 후드를 쓰는 것이 낫다.
- ⑥ 수술 후 수술실을 이탈하기 전 환자의 피부의 혈액은 모두 닦아낸다.
- ① 장화를 포함하여 보호구는 오염공간을 나오기 전에 모두 제거하고 나온다. 모든 오염된 재사용 보호복, 장화는 세척과 오염제거, 또는 멸균의 대상이다. 시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주의지침을 지켜야 한다. 신발은 충분히 오염이 제거되어야 한다.
- ® 눈의 점막 노출을 막기 위해 보안경을 사용한다. 옆에서 체액이 튀는 것을 포함하여 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안면보호구는 에어로졸과 다른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는 혈액이 튈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

3. HIV 노출 후 예방법

HIV 감염인으로부터 의료진에게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주사침 찔림 등 노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안전 보호를 위해 노출 후 예방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노출의 정도나 HIV 감염인의 바이러스 수치 등 따라 HIV 예방약제를 구분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 지침을 개정하여 4주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의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①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렸을 때 즉시 상처 부위 혈액을 충분히 배출시키고 물로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한다.
- ② 눈에 혈액 또는 체액이 튄 경우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충분히 씻는다.
- ③ 해당 의료진은 노출된 사실을 병의원의 담당 관리자 또는 감염관리실에 보고하고, 기관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예방적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연계 체계를 갖춘다.(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외래, 휴일이나 야간에는 응급실)
- ④ 노출 직후 빨리, 가급적 수 시간 이내 (늦어도 72시간 이내)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외래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여 4주간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노출예방약제를 받도록 한다. 혈액검사는 노출 당시, 6주, 3개월, 6개월에 HIV혈청검사를 추적한다.

V. 질문과 답변

1 본 길라잡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UNAIDS는 2030년까지 AIDS 대유행을 종식하는 것은 목표이나,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당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HIV 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리고, 표준주의 원칙 공유 등을 통해 두려움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 길라잡이의 제정을 통해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함께 HIV 감염인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요원 등 업무 수행 중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 처리방법은?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상처가 깊은 경우 깨끗하게 씻은 후 봉합해야 하며, 상처 부위를 절개하거나 도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눈·점막의 경우 식염수나 수돗물로 철저히 씻습니다.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되었거나, HIV 감염인 진료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기구 등에 찔리는 손상을 받았을 경우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 가능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시작하여, 4주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 감염사례 보고가 없으며, 미국은 '99년 이후 감염사례 보고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사례발생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요청 공문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진료비가 지원됩니다.

2

3 혈액이나 체액 노출로 인한 전파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나요?

HIV는 일상적인 접촉과 간호, 간병과정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①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 타액, 소변, 대변, 구토물, 눈물, 땀 접촉, 터치, 목욕시키기, 옷 입혀주는 것, 식사 같이 하기, 식기의 공동 사용, 화장실의 사용, CPR(인공호흡)
- ② 전파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혈액이 눈 점막에 튀는 경우 전파 가능성은 0.09%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주의 원칙상 모든 경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튈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안경, face shield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노출 시 흐르는 물, 생리식염수에 눈을 씻고 감염원에 따라 노출 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노출된 혈액이 HIV인 경우 예방약제의 투약을 통해 감염을 추가로 예방합니다.
- ③ 주의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의 진료 중 사용한 주사침에 찔리게 되는 경우바이러스가 잘 조절되지 않던 초기 연구 자료에서 주사침 자상에 따른 HIV의 전파가능성은 1,000명 중 3명의 위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을위해 노출 시 가급적 수 시간 이내 (적어도 72시간 이내) 노출 후 예방요법을시작하여 4주간 유지합니다.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 또는 응급실 진료를 통해약제를 투여 받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환자들이 치료를 받아 혈중 바이러스가 미검출로 조절되는 상태로 이 경우 전파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의료진 노출을 통한 감염사례는 1990년대 이후 없으며 국내에서도 1985년 첫 환자가 신고 된 이후 현재까지 한건도의료진에 전파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주사침 찔림 사고로 인한 혈액매개감염병의 감염 확률은 한 번의 주사침 자상사고 발생 시 B형감염은 6~30%, C형간염은 1.8%, HIV는 0.3%입니다. B형간염과 HIV는 노출 후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이즈환자는 역격리병실의 사용에 대하여 보험이 인정됩니다. 에이즈는 역 격리, HIV는 표준주의 원칙 아닌가요?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4

WHO(국제보건기구)는 정의상 AIDS를 CD4+ T 세포 200/ℓℓ 미만이거나, AIDS 정의 동반질환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HIV 감염인은 면역이 호전되어도 초기

진단 시 갖게 된 동반질환(예, 다발성 다초점백질연화증)이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면역이 증가하게 되면 역격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자가 간호가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CD4+ T 세포 200/세 미만으로 면역이 극히 낮아 역격리가 필요한 경우, 활동성 결핵과 같이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1인실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에이즈 환자 간병인이 주의해야 할 필수사항은 무엇인가요?

- 환자 간병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식기는 세제로 씻고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 수건과 속옷은 비누로 빨아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 · 혈액에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접촉 전·후 장갑 착용)
- ·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닐봉지에 싼 후 쓰레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 혈액이 섞인 배변이나 각혈, 체액 등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 이불이나 옷에 핏자국이 있을 경우 손에 묻히지 말고 고무장갑을 끼도록 하며, 혈액을 씻어낸 다음 비누로 세탁합니다.

6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을 구할 수 있나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동료간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료간병 지원 사업은 건강한 감염인을 교육하여 HIV 감염인을 위한 간병인으로 파견함으로써 환자에게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지불능력이 없는 HIV 감염인의 경우, 일부 비용을 협회가 지불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7 HIV 감염인의 혈액이 묻은 세탁물의 세탁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탁물은 뜨거운 물과 일반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외의 특별한 소독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액이나 혈액으로 오염된 부위는 세제와 수돗물을 이용하여 먼저 세탁하여 오염을 제거한 후,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여도 됩니다. 단, 오염된 세탁물을 다룰 때는 다루는 사람의 피부나 의복, 주변 환경에 세탁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진료실에서 동성애나 성적지향에 대하여 물어보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문진함에 있어 HIV검사와 관련하여 성 접촉력이나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지향, 파트너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감염인과 취약군을 면담할 때에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의료인이 검사를 통해 환자의 HIV상태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본인이 HIV 감염인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치료과정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그것을 밝힐 필요가 없고, 수년이 지난 일이며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현재 치료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면 이를 의료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HIV 감염인이 낙인과 차별을 경험해 왔으므로 그들의 감염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고, 감염사실을 밝히는 것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9 이전 진료거부 사례에 대한 판단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등 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사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①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인이 고관절전치환술 수술을 요청하였으나, 환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 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고 전원을 권유한 사례입니다. HIV 감염인 수술시 별도의 특수 장갑이 필요 없어, 합리적이유가 없는 병력을 근거로 한 차별로 판단하였습니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에는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고수술이 필요하여 준비하던 중 면담하는 자리에서 뼈에 염증이 있어서 이를 긁어내면 혈액이 튀는데, 이를 가릴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설명하며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③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6년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HIV 감염인을 스케일링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진료용 의자를 과도하게 비닐로 싸고, 주변 칸막이를 비닐을 덮어 보호조치를 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술 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감염관리조치를 행한 것이 인격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서울 시립병원들은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공지, 부착하고 있습니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에도 한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인에게 식판의 구별,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청진기)의 별도사용, HIV 감염인에게 표식 스티커(주사기 그림 아래에 혈액주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 이름표 옆에 부착한 건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관리는 특정 질병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감염위험에 주의를 하는 표준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며, 의료인들 간에 특정 질병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까지 해당 질환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붙이거나 의료기기를 개별지급하거나, 혹은 식판의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구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식판 색깔의 구분, 의료기기 개별지급, 혈액주의 등의 특별한 표식을 침상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HIV 감염인을 구별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0 건강검진에서 HIV와 관련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HIV 검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에서도 HIV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단,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조치 필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도 감염원 노출 위험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HIV 감염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감염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검사시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에 대한 HIV 검사 실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검사결과는 본인에게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 또는 검체 취급기관에서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HIV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HIV 결과란에 음성과 양성을 구분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재하여 감염사실을 고용주에게 노출시키거나 동료들의 의심으로 감염인 스스로 퇴사하거나, 검체 취급기관에서 근무자들의 감염여부를 신규채용 및 매년 주기적 조사하여 관리자가 그 결과를 보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HIV 음성은 '이상 없음', 양성은 '본인이 아니고는 통보 불가'라고 표현하여 양성자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여 고용주에 보고

이 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인 외에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보하거나, 사업주가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 또는 사용인(중간관리자) 등이 검사자(의사, 임상병리사 등) 에게 근로자의 검진결과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사자가 근로자의 검사결과를 자진보고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약물복용으로 감염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임에도 여전히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HIV 감염자들이 근로관계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나 검체 취급하는 기관에서 근로자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라 할지라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의2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주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방안1) A병원은 노사합의하에 원내 직원 대상 건강검진 항목으로 HIV 검사를 시행하나 외부병원 의료진이 출장 검사시행하며, 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상사 또는 법인대표 등에 보고하지 않음. 또한 검사결과를 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비밀보호 엄수 등 내규를 강화·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에 검사를 받는 직원들에 HIV 검사 관련 법률의 권리 등을 설명하는 등 HIV 감염자에 대한 비밀보호에 대해 병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지.

(방안2) 검체를 관리하는 B기관은 근로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근무 중 무의식적인 감염을 발견하고자 입사 전 외부기관을 통한 검사권유(근무기관에 미제출) 및 연1회 검사 실시(외부기관 의뢰)하여 본인에게만 그 결과 통지하도록 안내. 만약 이 과정에서 감염됨을 확인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사고로 인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사 전 음성이나 입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감염된 경우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와 의무(예방요법시행, 추적관리, 치료지원 등)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절차 충분히 설명, 안내.

VI. 참고 문헌

- 1. 질병관리청. HIV/AIDS신고현황연보, 2021년
- 2. 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2016년
- 3. KNP+. 한국 HIV 낙인조사연구, 2017년
- 4. 의료관련감염학회.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in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제5판, 2017년
- 5.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2017년
- 6. 대한의사협회정책연구소.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2019년
- 7. UNAIDS. Agenda for Zero discrimination in health care, 2016
- 8, UNAIDS,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 2006.
- 9. PHR. Ensuring Equality: A Guide to Addressing and Eliminat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e Health Sector. 2011
- 10. Bruce GL. Jo C. Ph. Conceptualization stigma Annu. Rev. Sociol. 2001. 27:363-85
- 11. Carr et al. Acheiving a Stigma-free Health Facility and HIV Services 2015
- 12. Feyissa GT et al. Reducing HIV-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healthcare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of guidelines, tools, standards of practice, best practices, consensus statements and systematic reviews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2018:405-416
- 13. Health Canada. Preventing transmission of bloodborne pathogens in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settings.
- 14. British HIV association. Standards of Care for People Living with HIV. 2018

- 15. National AIDS trust, UK. HIV: A guide for care provider. 2015
- 16. Kuhar et al. Updated US Public Health Serv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Exposures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d Recommendations for Postexposure Prophylaxis.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13;34(9):875-892
- 17. https://www.cdc.gov/niosh/topics/bbp/default.html
- 18. https://www.cdc.gov/sharpssafety/pdf/sharpsworkbook_2008.pdf

6 \ 관련 기관

가. 질병관리청

- 주소: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 ◎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
 - 전화번호: 043-719-7331, 7917, 7919, 7335
 - 팩스: 043-719-7339
- ◎ 감염병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
 - 전화번호: 043-719-8195, 8213
 - 팩스: 043-719-8219
- ◎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바이러스연구과(연구개발)
 - 전화번호: 043-719-8426
 - 팩스: 043-719-8459
- ◎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코호트)
 - 전화번호: 043-913-4814

나. 시·도 에이즈 담당자 연락처

시 도	부서명	전 화	Fax
서울	감염병관리과	02)2133-7684	02)2133-0727
부산	시민방역추진단	051)888-3324	051)888-3339
대구	감염병관리과	053)803-6111	053)803-6089
인천	감염병관리과	032)440-7857	032)440-8666
광주	감염병관리과	062)613-1176	062)613-1169
대전	감염병관리과	042)270-4024	042)270-4009
울산	감염병관리과	052)229-8324	052)229-3519
세종	감염병관리과	044)301-2041	044)300-5119
경기	질병정책과	031)8008-5409	031)8008-4179
강원	방역대응과	033)249-2966	033)249-4099
충북	감염병관리과	043)220-4575	043)220-3119
충남	감염병관리과	041)635-4368	041)635-3062
전북	감염병관리과	063)280-2432	063)280-2429
전남	감염병관리과	061)286-5384	061)286-4779
경북	감염병관리과	054)880-3872	053)880-3829
경남	감염병관리과	055)221-4890	055)211-4969
제주	방역총괄과	064)710-4079	064)710-2919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 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서 울	질병연구부 면역진단팀	02)570-3490, 3453	02)570-3456
부 산	감염병연구부 감염병조사팀	051)309-2808	051)309-2819
대 구	질병연구부 감염병조사과	053)760-1453	053)760-1459
인 천	질병조사과	032)440-7984	032)440-8505
광 주	감염병연구부 감염병조사과	062)613-7632, 7634	062)613-7507
대 전	감염병연구부 감염병검사과	042)270-6705	042)270-6749
울 산	보건연구부 감염병검사과	052)229-7693, 7696	052)229-7699
세종	감염병연구과	044)301-4525	044)301-4519
경 기	감염병연구부 신종감염병팀	031)250-2553	031)250-5008
경기북부	감염병조사팀	031)8030-5768	031)8030-5789
강 원	감염역학과	033)248-6493	033)248-6501
충북	질병조사과	043)220-8603	043)220-8609
충 남	보건연구부 감염병검사팀	041)635-6826	041)635-7941
전 북	보건연구부 감염병진단과	063)290-5334	063)290-5229
전 남	미생물과	061)240-5212	061)240-5220
경 북	보건연구부 신종감염병과	054)339-8242	054)339-8249
경 남	감염병연구부 감염병진단팀	055)254-2244	055)254-2249
제 주	감염병검사과	064)710-7511	064)710-7519

7 관련 법령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제1장 총칙 <개정 2013.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 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조 삭제 <2009. 12. 29.>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 4. 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8. 11.>
-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4. 5.]

제6조 삭제 <2008. 3. 21.>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4. 5.]

제3장 검진 <개정 2013. 4. 5.>

-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 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 정하는 사람
-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1.>
-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 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9조(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11.>
 -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직의 이식
 - 2. 정액의 제공
 -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

의 사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4. 5.]
- 제11조(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12조(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개정 2008. 3. 21.>

-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14조(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 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 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이

[전문개정 2013. 4. 5.]

제14조의2 삭제 <1999. 2. 8.>

-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7조 삭제 <1999. 2. 8.>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4. 5.]

-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 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장 보칙 <개정 2013. 4. 5.>

-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 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21조(협조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 [전문개정 2013. 4. 5.]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 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4. 5.]

제24조 삭제 <2008. 3. 21.>

제6장 벌칙 <개정 2013. 4. 5.>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 4. 5.]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 4. 5.]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 4, 5.]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4. 5.]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 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웹까지 생략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부터 ③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

제2조(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3조 삭제 <2020. 1. 29.>

제4조 삭제 <2020. 1. 29.>

제5조 삭제 <2020. 1. 29.>

제6조 삭제 <2020. 1. 29.>

제7조 삭제 <2020. 1. 29.>

제8조 삭제 <2020. 1. 29.>

제9조 삭제 <2020. 1. 29.>

제10조(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 1. 29.>

-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

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 **제11조(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 9. 3.]
- 제12조(검진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16.,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한다. <개정 2008. 9. 3.>
 - ②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의료법」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
-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 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 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본조신설 2020. 1. 29.]

제15조 삭제 <2008. 9. 3.>

제16조 삭제 <1999. 6. 16.>

제17조 삭제 <1999. 6. 16.>

제17조의2 삭제 <1999. 6. 16.>

제18조 삭제 <1999. 6. 16.>

제19조 삭제 <1999. 6. 16.>

제20조 삭제 <1999. 6. 16.>

제21조 삭제 <1999. 6. 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0. 9. 11.>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 삭제 <2008. 9. 3.>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 6. 16., 2002. 3. 25., 2008. 9. 3.>

-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20. 9. 11.>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 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2020. 9. 11.> [전문개정 2002. 3. 25.]
-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9. 11.>
 -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부칙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② 까지 생략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043-719-7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8.>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19. 12. 31.>

-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 3. 검사물번호
-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9. 11.>
-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 ④ 삭제 <2019. 12. 31.>

[전문개정 2008. 9. 5.]

제3조 삭제 <2008. 9. 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9, 5.]

제5조 삭제 <2008. 9. 5.>

제6조(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

- 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9.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 ②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19. 9. 27., 2020. 9. 11.>
 - 1. 질병관리청장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9. 9. 27., 2019. 12. 31.>
 - 1. 감염인의 성별
 - 2. 확인진단일
 - 3. 검사물번호
 -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0. 3. 19., 2020. 9. 11.> [제목개정 2008. 9. 5.]
-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2013. 3. 23.>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0.,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 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 8. 10., 2008. 9. 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 5.>
[본조신설 1999. 8. 10.]

제12조 삭제 <1999. 8. 10.>

제13조 삭제 <1999. 8. 10.>

제14조 삭제 <1999. 8. 10.>

부칙 <제749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 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생략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9.5>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가. 시설: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화장실 및 욕실 등 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
2.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	가. 시설: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에 필요한 시설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나. 인력: 상근관리자 1명 이상, 상담·운영요원 1명 이상, 자원봉사자 2명 이상 다. 기타: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1 이상의 프로그램 마련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11.〉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 팩스() -									
	주소		/ 전화	() -	/ 팩스() –				
(^① 부서명)	([®] 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체면역결핍	바이러스	: 감염인	•후천성면역결핍	입증환자 발견(/	사망) 신고·보고	<u>1</u>			
신고 구분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	[] 후천성면역	결핍증환자				
V 1 H-4	[]남	³ 국적		411148101	14 81 01	^④ 검사물번호				
성별 	[]여	~ 국석		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주소지				
최초진단일		년	월 일	확인검사	[]()보건환경연구	원			
확인진단일		년	월 일	기관	[]질병관리	청(국립보건연	구원)			
검사소견	[] 면역기능(CD4+ T 세포 수) [] 바이러스 양(Viral load) [] 검사 안 함				추 정 감염경로	[] 이성과의 성접촉 [] 동성과의 성접촉 []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 수혈 [] 수직감염 [] 모름				
사망여부	[]사망	[]생	존	사망자 이름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요사망원인 (진단명)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과 후천	성면역결핍증괴	의 관련성 [] 유 [] 무			
후천성면역 결핍증환자 관련 임상증상 (사망전 주요 증상 포함)	[] 폐외 [] 만성(1 [] 간, 비([] 거대서 [] 인체면 [] 단순 : 이상) [] 파종성	칸디다증 성(외부 전 성) 또는 폐 크립토코 ⁻ 개월 이상당, 림프절 포 바이터 병역결핍비 포진 바이 궤양,기관 비개월 이상	염성) 자 외 콕시다 쿠스증(cr) 장 크립 이외의 거다 러스 망막 이러스(H 러스 감염, 폐 외 히스트	궁경부암 J오이데스진균증 yptococcosis) 토스포로디움증 세포 바이러스 김염	[] 미코박테리 (<i>Mycobac</i> 폐 또는 I [] 그 밖에 증 폐외 감 [] 주폐포자 [] 반복되는 월 [] 진행성 [] 반복성 [] 뇌 톡소	또는 폐외 결핵 리움 아비움 복합체, terium avium compl 폐외 감염증 균종의 미코박테라 염증 사총 폐렴 는 폐렴 다발성 백질뇌증 살모넬라 패혈증 플라즈마증				
[®] 요양기관	관 지정번호	<u>.</u> :								
^⑦ 진단의시	나 이름:			면허번호:		([®] 서명 또는 날인)				

(뒤쪽)

작성요령

- ① 부서명,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③ 국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기록합니다.
- ④ 검사물번호: "연도 지역번호 보건소(병원)월별 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20년, 서울, 중구 보건소 1월, 검체번호 1번"인 경우 "20-01-중구01-01"로 기록)
- ⑤ 주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및 읍·면· 동까지 기록합니다.
- ⑥ 요양기관 지정번호, ⑦ 진단의사 이름: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⑧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로 진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기 관 명)	
우 - 주소 (¹⁾ 부서명)	/ 전화() - / 팩스() -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신고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³ 검사물번호	
연구 또는 검사일	년	월	일	급시킬단호	
확인진단 방법				확인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확인진단일	년	월	일	기관	[]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연구자 또는 검사자의 소속기관:

^⑤연구자 또는 검사자 이름:

(^⑥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① 부서명,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③ 검사물번호: "연도 지역번호 보건소(병원)월별 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20년, 서울, 중구 보건소 1월, 검체번호 1번"인 경우 "20-01-중구01-01"로 기록)
- ④ 연구자 또는 검사자의 소속기관, ⑤ 연구자 또는 검사자 이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⑥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11.〉

		검전	인통지시	Ч	
일련번호	<u>5</u>	호			
검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검진	사유				
검진	일시				
검진	기관명				
검진기	관 소재지				
]증 예방법」 제8조에 [기관에 나오셔서 후천성 년	면역결핍		
		닌	끌	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인 장

190mm × 268mm[인쇄용지(2급) 60g/m²]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11.〉

			검진독촉통	통지서		
일련번호		호				
검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당초 검진지시 일시			년	월	일	
검진 (연기사유					
검진 일시			년	월	일	
검진	기관명					
검진기	관 소재지					
	검진할 것을			2 법 시행령 제1/ 검진기관에 나오시 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1)

190mm × 268mm[인쇄용지(2급) 60g/m²]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27.〉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기관명:

7125			인적사항 검사완료 (의뢰) 확인검사										
일련 번호	검진일자 (채혈일)	검진 목적 ^①	성명	검사물 번호 ^②	주소	전화 번호	일 자	결 과	떠 버 데	의 뢰 일	회 보 일	결과	비고

작성요령: ① 검진목적에 정기검진대상자인 경우는 "1", 수시검진대상자인 경우 "2"로 구분하며, 수시검진대상자 중 배우자 및 성접촉자(사실혼 포함) "2-1"로, 외국인인 경우 "2-2"로, 기타는 "2-3"으로, 자발적인 검진인 경우 "3"으로 기록합니다.

② 검사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353mm × 250mm[인쇄용지(2급) 60g/m²]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27,〉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검진목적 기관명: 검사완료(의뢰) 확인검사 일련 검진일자 검사물번호 비고 번호 (채혈일) 일자 결과 회보일 의뢰일 회보일 결과

작성요령: ① 검사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353mm × 250mm[인쇄용지(2급) 60g/m²]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기 관 명)		
우 - ⁽ (^① 부서명)		/ 전화() - 직위 및 0		팩스() -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인 :	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	성면역결핍증환	자 발견 익명신고	1∙보고
성별	[]남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 검사물번호	
확인진단일	년	월 일	확인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 의료(검진 [©] 진단의사	년)기관 지정번호: 이름:	면허번호:		([®] 서명 또는 날(<u></u> 인)

작성요령

- ① 부서명,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③ 검사물번호: "연도 지역번호 보건소(병원)월별 검체번호" 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20년, 서울, 중구 보건소 1월, 검체번호 1번"인 경우 "20-01-중구01-01"로 기록)
- ④ 의료(검진)기관 지정번호, ⑤ 진단의사 이름: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⑥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익명으로 검진한 사람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11.〉

(앞쪽) 제 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 **⋖**— 20mm -선 30mm 적 색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년 월 일생 생년월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후천성면역결 핍증에 관한 예방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6mm × 8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 1. 이 증명을 소지한 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2. 이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지 못함.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9.5.〉

(앞쪽)

<u>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u> Certificate of HIV Test

검사 연월일

Date of HIV Test

성 명

Name in Full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or Passport No.

56mm \times 8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함(검사결과:)
This is to certify that a serological test has been conducted f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AIDS Prevention Law. (The result of HIV test is)
검사기관명 [인]
Republic of Korea

2022 HIV/AIDS 관리지침

인 쇄: 2022년 2월

발 행: 2021년 12월

발 행 처: 질병관리청

편 집 처: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

전 화: 043-719-7318 팩 스: 043-719-7339

주 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이 지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질병관리청에 귀속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